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Violent offending with unspecified motivation toward strangers

윤정숙·박지선·안성훈·김민정

■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심리학 박사

■ 박지선

경찰대학 행정학과 조교수

■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 박사

■ 김민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최근 별다른 원인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행, 살인 등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사건들이 등장하여 온 국민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묻지마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극심한 분노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누구도 범죄 피해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두려움을 생성시킵니다. 그러나 이렇듯 사회적 반향이 큰 묻지마 범죄에 대해 그동안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대응 방안은 미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묻지마 범죄의 개념 정립부터 필요한 범죄 사건의 통계치 산출을 비롯, 관련된 형사 정책적 방안의 수립까지 범죄 예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순조롭지 못하게 이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원에서는 2012년도에 발생한 모든 묻지마 범죄 사건을 분석하여 묻지마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묻지마 범죄의 기본 요소를 확립하고 기존 범죄와의 차별적 특성을 탐구하였으며, 국내외 묻지마 범죄의 사례 분석을 통해 그 현상의 실체에 다가가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세부 유형을 분류하여, 향후 묻지마 범죄의 예방을 위해 형사사법 단계 및 지역 사회내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사재판기록 조사 연구는 묻지마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는 최초의 기록 조사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2012년도에 발생한 모든 묻지마 범죄 사건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를 효시로 앞으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지속되어 그 결과가 축적된다면 향후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적 개선을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 도움을 주었던 대검찰청 관계자 및 각 검찰청의 실무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구를 책임지고 성심껏 수행해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윤정숙 부연구위원, 안성훈 부연구위원, 김민정 위촉연구원과 경찰대학교 박지선 교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4년 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CONTENTS

국문요약	11
제1장 서론(윤정숙)	19
제2장 묻지마 범죄의 개념 및 발생 실태(윤정숙·박지선·김민정)	25
제1절 묻지마 범죄의 개념	27
1. 묻지마 범죄 용어의 유래	27
2. 묻지마 범죄의 개념 및 다른 범죄와의 차별성	28
제2절 국내외 묻지마 범죄 사례 및 특성 분석	33
1. 국내 묻지마 범죄의 대표 사례 및 특성	33
2. 해외 묻지마 범죄의 대표 사례 및 특성	40
3. 국내 및 해외의 묻지마 범죄의 사례 비교 분석	49
제3장 묻지마 범죄의 특성(윤정숙·박지선·김민정)	51
제1절 조사방법 및 절차	53
1. 조사 개요	53
2. 조사대상 선정 및 제외	54
3.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56
제2절 묻지마 범죄의 특성	57
1.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특성	57
2. 묻지마 범죄 사건 특성	80
3. 묻지마 범죄 피해자 특성	84
4. 결과 요약	88
제3절 묻지마 범죄자의 세부 유형	91

1. 연구 방법	91
2. 문지마 범죄자 유형 분류	95
3.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차이점 분석	101
4. 결과 요약	117
제4장 문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윤정숙·안성훈)	123
제1절 결과 논의	125
제2절 현실 불만형(처지 비관형) 문지마 범죄자 대책	127
제3절 만성 분노형 문지마 범죄자 대책	131
1. 만성분노형 문지마 범죄자 관리체계 정비	131
2. 고위험군 수형자 관리체계 정비	134
제4절 정신장애형 문지마 범죄자 대책	137
1. 적절한 치료보호시설의 확보	139
2. 외래진료시스템의 확충 및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도입	140
3. 퇴소자의 사후관리체계의 마련	142
제5절 관련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통합적인 범죄자 관리	145
1. 관련기관의 협력체제 구축	146
2. 통합적 범죄자 관리 시스템 구축	152
제6절 결론	156
참고문헌	161
Abstract	165
부록: 문지마 범죄 수사재판기록 조사지	167

표 차례

〈표 2-1〉 대검찰청의 문지마 범죄 정의	31
〈표 2-2〉 문지마 범죄와 다른 폭력범죄의 비교†	32
〈표 3-1〉 문지마 범죄 가해자 연령	57
〈표 3-2〉 문지마 범죄 가해자 성별	58
〈표 3-3〉 문지마 범죄 가해자 주거 특성	58
〈표 3-4〉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범행당시 직업	59
〈표 3-5〉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월평균소득	60
〈표 3-6〉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최종학력	60
〈표 3-7〉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혼인상태	61
〈표 3-8〉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병역	62
〈표 3-9〉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전과	63
〈표 3-10〉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전과범죄명	63
〈표 3-11〉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대인범죄 전력	64
〈표 3-12〉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과거 문지마 범죄 전력	65
〈표 3-13〉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과거 문지마 범죄에 대한 처분내용	66
〈표 3-14〉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본 범죄명	67
〈표 3-15〉 문지마 범행 당시 음주/약물/본드 사용 여부	68
〈표 3-16〉 문지마 범죄 가해자 검거경위	68
〈표 3-17〉 문지마 범행 후 가해자 행동	69
〈표 3-18〉 문지마 범죄 가해자 혐의사실 인정 여부	69
〈표 3-19〉 문지마 범행 동기	71
〈표 3-20〉 문지마 범행 당시 기분	71
〈표 3-21〉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어린시절 가족환경	72
〈표 3-22〉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경험	74
〈표 3-23〉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정신과 진단명	74
〈표 3-24〉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정신과 진단명 대분류	75
〈표 3-25〉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하루일과	76
〈표 3-26〉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인지/사고 문제	77

〈표 3-27〉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자해/타인 위해 욕구	77
〈표 3-28〉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감정적 문제	78
〈표 3-29〉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평소 친구관계	79
〈표 3-30〉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대인관계 문제	80
〈표 3-31〉 문지마 범죄 사건 경합/병합 여부	81
〈표 3-32〉 문지마 범죄 사건 발생 계절/시간	81
〈표 3-33〉 문지마 범죄 발생 장소	82
〈표 3-34〉 문지마 범죄 흉기 및 도구	83
〈표 3-35〉 문지마 범죄 피해자 경(병)합 사건 비교분석	85
〈표 3-36〉 문지마 범죄 피해자 성별	85
〈표 3-37〉 문지마 범죄 피해자 나이	86
〈표 3-38〉 문지마 범죄 피해자 상처 특성	87
〈표 3-39〉 문지마 범죄자 유형 SSA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 (N=48)	93
〈표 3-40〉 문지마 범죄 유형별 특성 (N=48)	97
〈표 3-41〉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분포	102
〈표 3-42〉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최종학력	103
〈표 3-43〉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월수입(만원)	104
〈표 3-44〉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정신과 진단명(대분류)	104
〈표 3-45〉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정신과 진단명	105
〈표 3-46〉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전과 유무	106
〈표 3-47〉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대인 범죄 전력	106
〈표 3-48〉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폭력상해 전과유무	107
〈표 3-49〉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음주운전/무면허/도로교통법위반 전과유무	108
〈표 3-50〉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범죄명	108
〈표 3-51〉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검찰 구형	109
〈표 3-52〉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흉기 및 도구유형 - 신체사용	110
〈표 3-53〉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흉기 및 도구유형-칼 등 날카로운 것	111
〈표 3-54〉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111
〈표 3-55〉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평소 친구 관계	112
〈표 3-56〉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스트레스 대처 방식	113

〈표 3-57〉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타인을 해하려는 사고 욕구	113
〈표 3-58〉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피해자 나이	114
〈표 3-59〉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피해자 나이 평균	115
〈표 3-60〉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피해자 상처 유형	115
〈표 3-61〉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피해자 상처 부위	116
〈표 3-62〉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피해자 상해 진료	117
〈표 4-1〉 현행 문지마 범죄 관련 우범자관리체계와 개선된 체계의 비교	134

그림 차례

〈그림 3-1〉 묻지마 범죄자 특성 SSA 분석 결과	95
〈그림 3-2〉 묻지마 범죄자 유형 분류	96
〈그림 3-3〉 묻지마 범죄자 유형 분류	101
〈그림 3-4〉 묻지마 범죄자 유형 분포 (N=48)	102

1. 묻지마 범죄의 개념 및 대표사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폭력이 행해지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묻지마 범죄는 개념상 세 가지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첫째로 범죄의 동기가 알기 어렵거나 뚜렷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 범죄의 대상이 대립 관계에 있지 않았던 비면식의 피해자라는 점, 셋째로 그를 향한 폭력 행사이다.

묻지마 범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2012년 묻지마 범죄사건을 주된 범죄 동기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라 우선 두 가지, 즉 1)불만 및 분노형과 2)정신 장애형으로 분류하여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불만 및 분노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자기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특정한 자에 대한 불만을 모르는 이에게 표출하거나,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분류되었고, 정신 장애형은 정신장애, 음주, 약물 복용 및 본드 흡입 등으로 이성적 상태가 아닌 환상, 망상, 환각 등의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로 분류되었다. 2012년도에 발생한 47건의 묻지마 범죄 사건 기록 중수사 기록과 치료감호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세부 유형에 가장 적합한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와 유사한 양상의 해외 사례를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 역시 국내 사례와 마찬가지로 크게 불만 및 분노형과 정신 장애형으로 나누어 해당 사례를 소개하였다.

2. 묻지마 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보면 먼저, 평균 연령은 약 39세

였고 30대와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해자의 성별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자였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 주거지역으로는 서울/경기 등의 수도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거 및 거주 형태도 취약하여 고정된 주거가 없는 사람이 20%정도로 5명 중 1명을 차지하였고, 가해자의 절반은 동거인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직업 유무를 살펴보면 범행당시 직업이 없던 경우가 전체의 75%를 차지하였고, 직업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종사자들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소득이 전혀 없는 가해자가 7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득이 있는 경우도 모두 100만원 혹은 200만원 미만이었다. 묻지마 범죄자의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로는 미혼인 가해자가 75%로 대부분이었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범죄력 관련 특성을 보면, 먼저 전체의 75%가 전과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전과수는 6건이었고, 최대 전과수는 27건이었다. 전과 경력이 있는 가해자들(36명) 중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종류를 살펴보면, 33명(92%)이 폭력, 상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율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였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 중 35명(73%)은 대인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35명 중 판결기록이 포함되지 않았던 13명(37.1%)을 제외하고 15명(43%)은 과거에 묻지마 범죄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본 범 이외에 10건 이상의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4명으로, 각각 10건, 11건, 12건, 18건의 묻지마 범죄 전력을 지니고 있었다.

묻지마 범죄의 범행 특성을 보면, 살인과 상해가 전체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범행 당시 음주/약물/본드를 사용한 가해자는 전체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범행 동기는 복수응답을 전제로 할 때, 환각이나 망상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26.5%로 가장 많았으며, 재미나 자기과시, 이유없음 이 다음으로 25.0%, 분풀이 및 스트레스 해소가 23.5%, 사회 불만과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은 각각 8.8%를 차지하였다. 범행당시 기분을 보면, 분노의 감정을 느낀 가해자가 전체 48명 중 35명(72.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초조·불안이 9명(18.8%), 우울감이 6명(12.5%)이었으며, 기분이 양호했다는 사람은 8명

(16.7%)에 지나지 않았다.

문지마 범죄자의 발달사적 특성을 보면 어린 시절 부모의 존재는 자료상 부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14.6%), 부모가 둘 다 있었던 경우는 45.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어머니만 있었던 경우가 약 18.8%, 부모가 없었던 경우가 약 16.7%였고, 아버지만 있었던 경우도 약 4%를 차지하였다. 부모와의 관계는 자료상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18.8%), 부모와의 관계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해자가 24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하였다.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정신 질환 진단 및 치료 경험을 조사하였을 때, 과거 혹은 현재에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해자는 28명으로 58.3%를 차지하여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경험이 없는 가해자 16명(33.3%)을 훨씬 웃돌았으며, 과거 혹은 현재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가해자는 26명으로 54.2%를 차지하여, 치료 경험이 없는 가해자 37.5%보다 높았다. 정신과 진단을 받은 문지마 범죄 가해자 29명의 정신과 진단명을 보면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가해자가 11명(39.3%)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주요우울장애(14.3%), 알콜중독, 양극성장애, 인격장애 순이었다. 현실검증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가해자들의 진단명을 정신증과 비정신증으로 구분할 때, 정신증에 속하는 조현병, 망상장애, 기타 정신증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은 13명으로 27.1%에 해당하였고, 비정신증은 14명으로 29.2%에 해당하였다.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혼자서 밖을 나돌아 다니며 하루를 보낸다고 응답한 사례가 26건으로 전체 중 54.2%를 차지하였고, 술이나 마약에 탐닉하는 사례가 25건(52.1%), 하루 대부분 집안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14건(29.2%), 친구들과 나돌아 다니는 경우가 11건(22.9%), 게임 혹은 도박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8건(16.7%)이었고, 학교나 직장생활 등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응답한 가해자는 4건(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인지 및 사고 문제 역시 심각하여 망상과 와해된 사고, 환상, 환각 등 인지 및 사고영역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으며, 문제없음은 전체 중 15명(31.3%)에 불과하였다. 자해/타해 위해 욕구가 있었다고 보고한 사람은 30명(62.5%)으로 그러한 욕구가 없는 가해자 15명(31.3%)의 두 배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감정적 문제로는 충동성 조절에 문제가 있는 가해자는 40명(83.3%)으

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분노감, 감정조절능력의 결핍 등 역시 30명 이상이 보고할 정도로 비율이 높았다. 이 밖에도 우울감, 좌절감, 죄책감 결여의 문제나 무기력감, 공감능력의 부재도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다. 대인관계 문제에서는 친구가 없다고 파악되는 가해자가 50%정도로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가해자의 대인관계 성향으로는 타인에 대한 불신(의심)을 품고 있는 가해자가 31명(64.6%), 타인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는 가해자가 24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반사회적 공격적 스타일, 친밀감 결핍,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감, 사회에 대한 반감 등이 뒤를 이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해자는 3명(6.3%)에 불과하였다.

3. 문지마 범죄자의 세부 유형

본 연구에서는 이스라엘 히브루 대학의 HUDAP(Hebrew University Data Analysis Packag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최소 공간 분석(SS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지마 범죄자의 특성은 지리적 공간 상에서 크게 3가지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총 3가지의 문지마 범죄 유형(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으로 분류되었다.

우선 현실 불만형의 범죄자들의 경우, 주로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문지마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범행 당시 우울한 기분을 느끼며 평소에도 사회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주로 여름에 노상에서 문지마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경우가 많고, 부모 및 형제와의 관계가 양호하지 못하며, 평소 자신을 해하려는 사고나 환상이 있는 등 자살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두 번째로 정신 장애형의 범죄자들의 경우, 주로 조현병 등 정신 장애가 있거나 마약이나 본드 등의 환각 물질 흡입으로 인해 문지마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주로 신체 및 정신 병력이 있으며,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대인 관계 기능 수준으로 보면 친밀감이 결핍된 경우가 많고, 인지

및 지각, 사고 기능과 관련해서 망상이나 환상, 환각, 와해된 사고를 보이기도 한다. 범행 당시 신체 건강 상태도 양호하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하루 일과를 주로 TV를 시청하거나 자는 등 집에서 특정한 활동 없이 시간을 보낸다.

세 번째로 만성 분노형의 범죄자들은 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분풀이로,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재미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다. 또는, 범죄자가 주폭 혹은 상습 폭력범인 경우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들은 범행 당시 주취 상태이거나, 약물이나 본드 등 환각제를 사용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범행 당시에는 초조하거나 불안한 기분을 느끼며, 종종 묻지마 범죄와 함께 다른 범죄가 경합하여 나타난다. 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고, 평소 하루 일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주로 정해진 일과 없이 혼자서 쏘다니거나, 술이나 마약 등에 탐닉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총 48명의 묻지마 범죄자를 분류한 결과, 전체 48명 가운데 만성 분노형이 22명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 장애형이 18명으로 전체의 37.5%, 그리고 현실 불만형이 8명(16.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유형(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간 범죄자들의 차이점을 범죄자 특성 및 범행 특성, 대인관계 특성 및 피해자 특성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다른 유형의 묻지마 범죄자들에 비해 만성 분노형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수입 평균에 있어서는 만성 분노형 범죄자들이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신 장애형의 경우에는 만성 분노형 범죄자들의 평균에 십분의 일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월수입 평균이 낮았다.

한편, 만성 분노형의 범죄자들은 거의 모두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90.9%), 정신 장애형의 경우 약 3분의 2정도(66.7%)가 전과가 있었고, 현실 불만형의 경우는 반(50%)을 차지하였다. 더불어, 만성 분노형의 범죄자들은 거의 모두(90.9%) 대인 범죄 전력이 있는 반면, 정신 장애형의 경우 약 3분의 2정도(66.7%)가, 현실 불만형의 경우는 비교적 소수인 37.5%만이 대인 범죄 전력이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만성 분노형의 범죄자들은 역시 거의 모두 폭력/상해 전과가 있는 반면(86.4%), 정신 장애형의 경우 약 3분의 2정도(66.7%), 현실 불

만형의 경우는 소수(25.0%)의 범죄자들만이 폭력/상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범행 특성에 있어서 문지마 범죄 유형별 범죄자들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우선 기소 당시 범죄명을 살펴본 결과, 현실 불만형 범죄자들의 경우 살인 미수인 경우가 50%였으며, 정신 장애형의 경우 살인미수가 38.9%로 가장 많았고, 상해가 27.8%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만성 분노형의 경우 대다수(72.7%)가 상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검찰 구형의 정도와 비율을 살펴본 결과, 현실 불만형과 만성 분노형의 경우에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대다수(각각 71.4%, 70.6%)를 차지한 반면, 정신 장애형의 경우에는 약 과반수(55.6%)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이 징역형과 치료감호 청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실 불만형이나 정신 장애형의 범죄자들은 범행 당시 자신의 신체를 써서 공격했던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각각 0%, 11.1%), 만성 분노형의 경우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40.9%). 오히려, 현실 불만형이나 정신 장애형의 범죄자들은 범행 당시 칼 등 날카로운 것(예기)을 사용했던 경우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고(각각 75%, 72.2%), 만성 분노형의 경우는 36.4%에 그쳤다.

대인 관계 및 사고 특성 관련 유형별 범죄자들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정신 장애형 범죄자들의 경우 미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친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현실 불만형의 경우에는 게임 및 도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정신 장애형의 경우에는 음주 및 약물 복용이 가장 많았다. 반면, 만성 분노형의 경우에는 절대 다수의 범죄자가 음주 및 약물 복용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 장애형의 범죄자들은 절대 다수가 타인을 해하려는 사고나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현실 불만형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사고나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만성 분노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특성에 있어서의 유형별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정신 장애형의 경우 피해자 나이 평균이 약 45.6세로 가장 많았고, 만성 분노형의 경우 약 37.1세, 현실 불만형은 약 27.4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실 불만형은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여러 번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1개 부위에 상처를 입힌 경우가 각각 약 반 정도인 반면(각각 50.0%,

42.9%), 정신 장애형의 경우에는 1개 부위에 상처를 입힌 경우가 가장 많았고, 만성 분노형의 경우에는 상처를 입은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현실 불만형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57.1%), 정신 장애형과 만성 분노형의 경우 전치 2주 이상-6주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는 취업, 학력, 가정상황, 친구관계 등에서 혜택 받지 못하며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자가 많고 일반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범죄 위험을 가지고 있어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세부 유형별로 범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현실 불만형(처지 비관형) 묻지마 범죄자를 위해서는 직장내의 상담센터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등이 대인관계의 극단적 회피형인 ‘은둔형 외톨이’나, 극단적 불만형 사람들을 발굴하고 치료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만성분노형 묻지마 범죄자를 위해서는 고위험군 범죄자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영국의 MAPPA제도와 같이 지역사회내의 고위험군 대상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관련기관간의 정보공유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형 묻지마 범죄자를 위해서는 구금치료시설의 확대와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도입 및 퇴소자의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묻지마 범죄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병리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관련기관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그 치료와 보호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장 서론

윤 정 숙

최근 별다른 원인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행, 살인 등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 사건들이 등장하여 온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여의도 칼부림 사건¹⁾이나, 의정부역 칼부림 사건²⁾, 수원 술집 여주인 살해 사건³⁾, 인천 부평시장 사건⁴⁾ 등 지나가던 행인이나 주변에 있던 모르는 사람을 흉기로 공격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동 범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이들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은 치정이나 원한관계 등을 가지고 특정인을 상대로 보복형 범죄를 저지른 전통적 사건과 달리 특정인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제한되지 않고, 평소 가지고 있던 사회나 현실에 대한 불만감, 혐오감 등으로 확대되어 과잉 분노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윤정숙, 김민지, 2012). 이렇듯

-
- 1) 여의도 국회 앞 거리에서 김모씨가 전 직장 동료들 칼로 찌르고 달아나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치자 흉기를 마구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 신용평가회사에 다녔던 김씨는 실적이 오르지 않으면서 회사 동료들의 협담을 듣게 되고, 퇴직 후 무직 상태로 지내다가 전 직장 동료들에게 복수를 결심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 2) 범인 A씨가 수원역 전철에 탑승한 뒤 바닥에 침을 뱉었고 이 때 승객 B군이 ‘왜 침을 뱉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사과를 요구하자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A군과 함께 있던 일행 및 승강장과 전철 내 다른 승객들에게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사건
 - 3) 범인 A씨가 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여주인과 술값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곧 흉기로 주인과 술집에 온 손님을 찌르고 또 인근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찌른 사건
 - 4) 인천 부평시장 골목에서 범인 A씨가 쇠파이프로 행인을 폭행한 사건

묻지마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극심한 분노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 누구도 범죄 피해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두려움을 생성시킨다.

그러나 이렇듯 사회적 반향이 큰 묻지마 범죄에 대해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특성 탐구를 비롯한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대응 방안이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묻지마 범죄는 그 특질상 가해자의 특이한 사고 방식과 복잡한 환경 요인을 배경으로 하는 등 개별적인(idiosyncratic)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건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적 분석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었다. 통상 특정 범죄에 대한 이론은 다수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복수의 경험적 연구 결과물이 축적되어 연구자간 합의된 방식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에 대한 어떠한 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사례를 대상으로 사건을 분석한 경험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였고 복수의 신뢰로운 연구 결과물에 근거하여 형사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12년도에 발생한 모든 묻지마 범죄 사건을 분석하여 묻지마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형사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묻지마 범죄의 기본 요소를 확립하고 기존 범죄와의 차별적 특성을 탐구하며, 국내외 묻지마 범죄의 사례 분석을 통해 그 현상의 실체에 다가가고자 하였다. 또한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특성을 분석하고 세부 유형별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와 더불어 향후 묻지마 범죄의 예방을 위해 형사사법 단계 및 지역 사회내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첫째, 묻지마 범죄에 대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여, 묻지마 범죄의 용어 유래나, 기존 범죄와의 차별성, 기본 구성 요소, 예방 방안 등을 탐구하였다. 둘째, 2012년도에 발생한 묻지마 범죄 사건의 수사재판기록 47건을 분석하여, 묻지마 범죄 가해자나, 사건 특성, 피해자의 특성, 가해자의 세부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전문가와 실무진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묻지마 범죄의 예방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하는 부분을 진단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수행한 수사재판기록 조사 연구는 묻지마 범죄자들을 대상

으로 국내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는 최초의 기록 조사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2012년도에 발생한 모든 묻지마 범죄 사건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효시로 앞으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지속되어 그 결과가 축적된다면 향후 동 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적 개선을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장

문지마 범죄의 개념 및 발생 실태

윤정숙 · 박지선 · 김민정

묻지마 범죄⁵⁾의 개념 및 발생 실태

제1절 묻지마 범죄의 개념

1. 묻지마 범죄 용어의 유래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학계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언론 매체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용어 사용의 정확한 출처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구축한 미디어 관련 전문자료 데이터베이스인 미디어 가온⁶⁾을 검색해 보면 본격적으로 ‘묻지마’라는 단어와 ‘범죄’를 연관시킨 기사는 2000년 4월 24일 한국일보의 “‘묻지마 살인’ 광풍”이라는 기사였다. 그 이후 2003년 2월 14일 국민일보의 “부산시민 ‘묻지마 범행’ 공포”라는 제목이 사용되었고 며칠 후인 19일자 한겨레신문에서 “불특정 다수 겨냥 ‘묻지마 범죄’ 늘어”라는 제목과 함께 기사 내용에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였다(윤정숙, 김민지, 2013). 이 기사를 기점으로 다음날부터 기사 제목이나 내용에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체

5) 본 연구에서는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범죄의 실질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대체 용어의 제안 없이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6) <http://www.kinds.or.kr/>

용어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분간 이 용어의 사용은 지속될 것이라 짐작된다.

2. 묻지마 범죄의 개념 및 다른 범죄와의 차별성

가. 묻지마 범죄의 개념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폭력이 행해지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묻지마 범죄는 개념상 세 가지 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첫째로 범죄의 동기가 알기 어렵거나 뚜렷하지 않다는 것과 둘째 범죄의 대상이 대립 관계에 있지 않았던 비면식의 피해자라는 점, 셋째로 그를 향한 폭력 행사이다. 이러한 개념은 일본의 묻지마 범죄에 해당되는 도리마 범죄(무차별 살상사건으로 간단히 칭하기도 함)가 ‘알기 어려운 동기에 의하여 그때까지 살의를 품는 것과 같은 대립·적대적 관계가 전혀 없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살의를 가지고 위해를 가한 사건’(2013, 법무종합연구소)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불특정인을 향한 동기 불분명의 묻지마 범죄가 이전에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간 범죄 연구에서 묻지마 범죄를 규정하고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다. 가령, 염건령(2006, 2012)은 묻지마 범죄를 특정한 범죄적 목적이나 동기 없이 자행된다고 하여 무동기 범죄(motiveless crime)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최규범(2006)은 묻지마 범죄는 무동기 범죄라는 용어보다는 범인과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관계이므로 불특정 대상범죄라고 칭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윤호(2006)는 묻지마 범죄뿐 아니라, 이상동기, 무동기 범죄 등은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며 엄격하게 무동기 범죄란 있을 수가 없고, 전통적인 범죄는 원한, 치정, 이욕 등의 동기에서 행해지는 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동기 없이 행해지는 묻지마 범죄는 학술적, 학문적으로는 증오 범죄(hate crime) 중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증오 범죄는 어떤 대상에 대해 극단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혐오감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인종이나 종교, 성적 취향, 계층 등에 따른 편견과 증오에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Nolan, Akiyama, & Berhanu, 2012) 묻지마 범죄의 양상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한 묻지마 범죄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차별(random) 범죄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박형민, 2012). 그러나, 박형민이 Best(1999)에서 인용한 무차별 폭력(random violence)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무차별보다는 폭력 행사의 대상 선정이 매우 무작위적이라는 의미에서 무작위 폭력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Best(1999)는 당시 미국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빈번히 사용한 무작위 폭력이라는 용어가 미국사회에서 1980년대에 새롭게 나타난 고속도로 총격사건⁷⁾, 스토킹, 차량강도, 연쇄 살인 등을 설명하기 위해 언론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죄와 무관한 행동 중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피해를 당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고 뚜렷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음을 부각시키려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Best(1999)는 ‘무작위 폭력’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범죄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마치 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유도한다고 비판하였다. 범죄가 무작위적(random)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확률이 동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범죄자가 될 확률이 동일하다는 뜻이나, 언론을 통해 가장 심각한 폭력 범죄 사례들이나 특이한 사건들만이 기사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일반적일 것이라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담론 형성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Felson & Boba(2010)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는데, 무작위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범죄는 특정 장소 및 시간, 나이, 성별,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무작위적”이라는 단어는 범죄는 예방할 수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였다. 정연

7)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대상으로 총을 난사하여 여러 명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사례들을 말한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2002년 10월 3주 동안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를 연결해주는 고속도로에서 John Allen Muhammad와 미성년자인 Lee Boyd Malvo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향해 총을 쏜 사건이다. 총 10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크게 다쳤으며 Muhammad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Malvo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http://en.wikipedia.org/wiki/Beltway_sniper_attacks 에서 찾을 수 있다.

대, 이운호(2013) 역시 문지마 범죄를 문지마 담론으로 규정하면서, 문지마 담론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위험성 판단에 근거하여 범죄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자극적 사례를 들어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까닭에 범죄가 속수무책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대중에게 전달한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문지마 범죄를 무차별 혹은 무작위 범죄로 이해하는 것도 적절해보이지 않는다.

최근 문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2012). 고선영(2012)은 문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 칭하면서 이상동기 범죄를 불명확한 범행동기를 지닌 범죄와 불특정한 피해자를 선택하는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문지마 범죄자의 범죄 동기가 비정상적이고 범죄자의 머릿 속에 존재하는 망상이나 과잉 일반화에서 기인한다는 특이점도 있지만, 현실 불만이나 자살 욕구, 교도소로의 도피 등이 범죄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상동기 범죄라 공통적으로 칭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문지마 범죄 이외에도 보통 분노 표출을 목적으로 하는 표출적 범죄(expressive crime)는 물질적 이득이나 성적 만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구적 범죄(instrumental crime)에 비해 명확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박형민, 2012). 따라서 구체적인 동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일반적인 범죄 동기와는 다르다는 취지의 ‘이상동기 범죄’라고 지칭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아 보인다.

결국 현재까지 연구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문지마 범죄는 어떠한 대체 용어를 성급히 제안하기보다 그 개념을 온전하게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문지마 범죄는 개념상 세 가지 정도의 구성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특정인 대상, 폭력 행사, 불분명한 동기. 물론 이러한 요건으로 문지마 범죄를 규정했을 때, 살인, 살인 미수, 상해, 폭력, 성폭력 등 많은 범죄 유형이 포함될 수 있으나,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만족’이라는 일차적 동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것으로 한다. 대검찰청(2013) 역시 문지마 범죄를 ‘가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특정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의 일방적 의사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손괴 등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즉, 살인, 상해, 폭행, 협박, 방화, 방화치사, 손괴 등’으로 규정하고, 금품 갈취, 성적 만족 등 폭력의 동기에 특정한 목적과 이득이 있는 강도죄, 강도살인죄, 강간죄 등은 문지마 범죄에서 제외시켰

다(표 2-1 참조).

표 2-1 대검찰청의 묻지마 범죄 정의

묻지마 범죄의 정의	· 범죄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형법 제 2편 제 24장 살인의 죄 중 형법 제 250조(살인) 및 제 254조(제 250조 살인죄의 미수범에 한함) -형법 제 2편 제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 257조(상해), 제 258조(중상해), 제 259조(상해치사), 제 260조(폭행), 제 261조(특수폭행), 제 263조(폭행치사상) -형법 제 2편 제 30장 협박의 죄 중 제 283조(협박), 제 284조(특수협박) -형법 제 2편 제 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형법 제 164조 제 2항(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등 치상, 치사), 제 172조 제 2항(폭발성물건파열 등 치상, 치사), 제 172조의 2 제 2항(가스·전기 등 방류 등 치상, 치사) -형법 제 2편 제 42장 손괴의 죄 중 제 366조(재물손괴 등), 제 268조(중손괴), 제369조(특수손괴), 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죄명 예시	-살인, 살인미수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폭행치사 -협박,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폭발성물건파열(치상, 치사)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협박, 재물손괴등, 상해))

*출처: 대검찰청(2013)

나. 기존 범죄 유형과의 개념적 비교

묻지마 범죄의 개념을 확립함에 있어 이를 기존의 범죄 유형과 비교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박형민(2012)은 묻지마 범죄를 다른 폭력범죄와 비교하여 그 특성을 추출하고자 하였다(표 2-4 참조). 묻지마 범죄와 일반 폭력 범죄를 구별하여 보면 두 범죄 유형 모두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표출적 범죄이나 묻지마 범죄는 특히 피해자와 비면식 관계에 있다는 점과 피해자 선택이 추상적이고 임의적이라는 점, 그리고 폭력의 범위가 특정한 개인이 아닌 추상적 개인 또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일반 폭력 범죄와 차이를 지적하였다. 묻지마 범죄를 증오 범죄와 비교하면 증오 범죄 역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표출적 범죄이며 피해자와 비면식 관계에 있으나, 피해자 대상이 혐오 대상으로 구체적이며 폭력의 범위 또한 구체적 개인 또는 집단에게 가해진다는 면에서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문지마 범죄는 가끔 다수에 대한 학살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테러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테러리즘의 목적이 대부분 정치적이고 범죄 유형이 도구적 범죄에 속한다는 것과 피해자를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사람 혹은 집단으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추상적 선택을 하는 문지마 범죄와 차별되며, 이외에 연쇄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과 비교할 때도 이들은 특정한 이득을 추구하는 도구적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피해자를 선택할 때도 이득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도구적으로 선택한다는 면에서 임의적 선택을 하는 문지마 범죄와 차별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표 2-2 문지마 범죄와 다른 폭력범죄의 비교 *

	문지마 범죄	일반폭력	중요범죄	테러리즘	연쇄살인	강도	성폭력
동기	감정 표출	감정 표출	감정 표출	정치적 목적달성	비가시적 이득추구	금전적 이득추구	성적 이득추구
범죄유형	표출적 범죄	표출적 범죄	표출적 범죄	도구적 범죄	도구적 범죄	도구적 범죄	도구적 범죄
피해자와의 관계	비면식 관계	면식 관계	비면식 관계	비면식 관계	비면식 관계	비면식 관계	면식/ 비면식
피해자 선택	임의적 대상 (추상적 선택)	분노의 대상 (구체적 선택)	혐오 대상 (구체적 선택)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대상 (도구적 선택)	쾌락 대상 (도구적 선택)	강취대상 (도구적 선택)	성적 대상 (도구적 선택)
폭력의 범위	추상적 개인 또는 집단	구체적 개인	구체적 개인 또는 집단	구체적 개인 또는 집단	구체적 개인	구체적 개인	구체적 개인

* 출처: 박형민(2012)

제2절 국내외 묻지마 범죄 사례 및 특성 분석

1. 국내 묻지마 범죄의 대표 사례 및 특성

묻지마 범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2012년 묻지마 범죄사건을 주된 범죄 동기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라 우선 두 가지, 즉 1)불만 및 분노형과 2)정신 장애형으로 분류하여 대표적 사례를 제시하기로 하겠다. 불만 및 분노형에 해당하는 사례는 자기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특정한 자에 대한 불만을 모르는 이에게 표출하거나,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분류되었고, 정신 장애형은 정신장애, 음주, 약물 복용 및 본드 흡입 등으로 이성적 상태가 아닌 환상, 망상, 환각 등의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로 분류되었다. 2012년도에 발생한 47건의 묻지마 범죄 사건 기록은 대검찰청이 제공하였으며, 전국 각 지청에서 보고된 묻지마 범죄 사건들의 수사기록과 치료감호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세부 유형에 가장 적합한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각 유형에 대한 사례 제시는 범행동기가 표출된 형태와 방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건 특성을 따로 구분하여 먼저 제시하였으며,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관련이 깊은 성장 환경과 심리 상태를 나중에 제시하여 묻지마 범죄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사례는 반드시 한 가지 유형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의 범행 동기가 두 가지 이상인 사례는 범죄 행동과 더 직접적 관련이 있는 유형에 포함하였다.

가. 불만 및 분노형

- 영등포 골목길 살인미수 사건: 자기 처지에 대한 불만

1) 범행 내용

2012년 8월 아침 7시, 가해자는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집에서 과도 1자루를 가방에 넣고 편의점으로 출근하였다. 일을 마친

후 편의점 점장과 술을 마시고 혼자 소주 반병을 더 마신 후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지나가던 40대 여성을 보고 문득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약 1분간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노상에서 피해자의 등을 2회 찌르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계속하여 양쪽다리 부위 등을 포함하여 온몸을 찔렀다. 범행 중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온몸을 수회 더 찔러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2)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가해자는 27세 남성이다. 권위적인 아버지와 어릴 적부터 관계가 좋지 못했고, 어머니와는 서먹한 관계이다. 평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소심하며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학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여 늘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였다. 사건 무렵, 가해자는 서울 ○○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대출금 1,200만원을 갚지 못해 평소 우울하였고, 여자 친구가 돈을 구해주지 않으면 유흥업소에서 일하겠다고 하여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여의도 칼부림 사건: 특정한 자에 대한 불만을 모르는 이에게 표출

1) 범행 내용

2012년 8월, 가해자는 전 직장동료 4명을 살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칼을 소지하고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소재한 여의도의 한 빌딩 1층에서 전 직장동료들을 기다렸다. 퇴근시간이 되자 피해자1(남, 32세)과 피해자2(여, 31세) 두 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가해자는 두 피해자의 얼굴과 목, 배, 등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나다, 국회의사당 부근의 길에서 마주친 행인 피해자3(여, 32세)과 피해자4(남, 31세)가 자신의 도주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마구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첫 피해자가 발생한지 15분 후, 가해자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시민들과 대치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2)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30세 남성인 가해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 군 생활을 하던 시절, 상관이 괴롭혀서 총을 겨누었는데 주위사람들의 만류로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가해자는 3년 전 다니던 신용정보 회사 직원들이 자신을 헐뜯고 따돌린다는 생각에 사직을 하였다. 이후, 건강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다른 직장에서도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빚이 4,000만원까지 늘었으며, 곰팡이가 핀 지하 단칸방에서 지내며 고립감과 우울감을 느껴왔다.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거나 만화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 우울할 때면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자신의 일생 중 가장 좋았던 때는 3년 전 신용정보회사에 다녔던 시절이라고 생각하며, 그 때 일을 그만두게 만든 전 직장동료들에 대해 증오감을 가지게 되었다.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것이란 생각에 칼을 사 모았으며, 우울감이 들 때마다 사 놓은 칼을 갈았다.

그의 직장 동료들은 가해자가 평소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하고 투덜거렸으며, 신입사원들에게 텃세를 부렸다고 기억하고 있다. 대인관계 성향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자신이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서운함을 느끼면 급격하게 그들을 평가절하 시키고, 증오 혹은 분노의 감정을 품는 경향이 있다.

- 반포 초등학교 흥기난동 사건: 자신의 처지 비판 및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불만

1) 범행 내용

2012년 8월 아침 가해자가 눈을 떠보니,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와 다툰 이후 어질러진 집을 뒤처리하고 일을 하러 나가고, 누나도 등록금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가해자는 자신의 유서를 작성한 다음, 그동안 생각해왔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야전삽과 장난감 권총을 숨기고 국회의사당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그러나 이동 도중, 국회의사당은 경비가 삼엄하고 소지품 검사도 할 것 같아서 상류층 자제들이 많이 다니는 신반포 지역의 한 초등학교로 목적지를 바꾸었다. 오전 11시 50분 경, 공사중이던 후문을

통해 초등학교 내로 잠입한 가해자는 교실 안으로 들어가, 학급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1(11세)의 얼굴을 야전삽으로 때리고, 담임인 피해자2(여, 40세)와 같은 학급 학생 7명을 포함한 총 9명의 피해자에게 야전삽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2)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18세 남성인 가해자는 어려운 가정형편과 가정폭력, 학업문제 등으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였다. 중학교 때 우울증 증상을 보여 칼로 손목을 긋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두 차례 더 자살을 시도하였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우들에게 무시당하고 외톨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자신이 이처럼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유는 국회의원들과 상류층들이 잘못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국회의원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후, 자신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살인을 통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 사회가 자신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종로2가 여성 상습 폭행 사건: 만성적 분노·불만에 의한 상습 폭행

1) 범행 내용

2012년 3월 오전 6시 30분 경 가해자는 종로 2가 금강제화 앞 횡단보도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는 피해자1(여, 42세)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져 대뜸 “이 씨발년야” 라고 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못이 박혀있는 대걸레 자루로 뒷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연이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2(여, 23세)가 자신을 가로막는다고 느껴져 같은 방법으로 얼굴을 내리쳤다. 가해자는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에 대한 상해만 인정하였고,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사람 냄새를 맡고 똥개처럼 따라오는 여자”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가해자의 과거 범죄내용 중 2011년에 기소된 사건만을 간략히 살펴보면, 가해자는 2011년 1월 ○○동 롯데백화점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3(여, 57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고, 이를 뒤 ○○동 노상에서 피해자4(여, 27세)가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녀의 얼굴과 다리를 수 회 때렸으며, 같은 해 4월 ○○동 노상에서 피해자5(남, 37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가격하였고, 11월 ○○역 부근에서 세상사는 것이 힘들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을 걸어가던 여자(피해자6)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침을 뱉었다. 같은 해 12월, 가해자는 인도를 걷던 피해자7을 아무 이유 없이 힘껏 밀어 차로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가해자는 48세 남자이며, 무직이다. 5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가해자와 가해자의 누나를 남겨두고 재가를 하였다. 초등학교 중퇴로 인해 군대는 면제되었고, 누나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대로의 지하상가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으며, 평소 소주 3-5병을 마시고, 기분이 우울한 날은 10병도 마신다. 가해자는 자신이 돈이 없어 자신과 살 여자들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다 싫다고 말하였다. 폭행, 상해,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14회이며, 재판 중인 사건이 6회이다. 이 중에서 폭행 및 상해 사건은 총 14건이고, 낯선 이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모두 11건이며,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피해자는 여자였다.

나. 정신 장애형

- 망우동 길거리 살인미수 사건: 환청으로 인한 폭행

1) 범행 내용

사건일 무렵, 가해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항일운동을 하는데, 너도

해야 한다. 일본놈들에게 협조하는 나쁜 앞잡이들을 죽여야 한다.”는 환청을 들어왔다. 이에, 환청이 지목하는 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 근처 슈퍼에서 과도 1개를 구입하였다.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남, 18세)를 발견한 가해자는 “저놈이 일본에 여자들을 밀수출하고, 너희 식구를 비방한다. 항일을 위해 칼로 찔러 죽여라.”는 환청이 들리자, 골목길에 따라 들어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2)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39세 남성인 가해자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하였다. 가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읽고 쓰지를 못하였지만, 매일 술을 마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의처증에 지친 어머니는 가해자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는 남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웃는다고 창문을 모두 막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20세에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약물의 부작용으로 두통이 심해 약 복용을 자의적으로 중단하였다. 약을 먹지 않으면 타인이나 자신에게 해를 입혀야 하는 내용의 환청이 심해져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다시 정신병동에 입원하였지만, 입원비와 약값을 충당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 치료와 약 부작용 경험, 약복용 중단, 증세 악화를 반복하며 가해자의 사고는 만성적으로 와해되었으며, 환청과 망상은 더 심각하게 고착되었다. 명령환청에 의해 손목을 긋는 방법으로 자살을 6-7회 시도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폭행한 전력이 2회 있다.

- 속초 고속버스터미널 살인미수 사건: 망상으로 인한 폭행

1) 범행 내용

2012년 4월 가해자는 자신의 성기가 작다는 소문을 피하기 위해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속초행 버스를 탔다. 속초 고속버스터미널 승강장 앞에서 같은 버스를 타고 속초에 도착한 피해자(남,

53세)가 동료기사와 웃으며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기가 작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가방에 들어있던 과도를 꺼내어 “이 새끼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살인 미수를 범하였다.

범행 후 가해자는 직접 112에 신고하여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다. 살인 미수로 수감생활 중 같은 방 수감자에게 “왜 나한테 침을 뱉느냐.”, “왜 고추가 작다고 무시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으며 수감자들이 자신을 모함한다는 말을 반복하여 정신감정을 요청받았다.

2)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가해자는 42세이며 5남 1녀 중 4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지역유지로 신망이 두터웠지만, 공부를 못하는 가해자를 구박하고 차별하였다. 가해자는 21세에 군에 입대한 후 야간훈련과 구타, 기합을 많이 받았고, 제대 직후부터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 2011년 셋째형이 사망하여 20년 만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해자는 웃으며, “형을 누가 패서 죽인 것이 아니냐. 소문이 나서 쫓겨 다니고 있다.”는 등 이상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어머니는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집에 오지 못하게 했다. 가해자는 5년 전 일용직으로 일할 당시 동료들이 같이 목욕을 가자고 했는데 이를 거절한 이후, 동료들이 “고추가 작다”며 자신을 놀리기 시작했고, 이후 전국적으로 자신의 성기가 작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 가해자는 고착된 망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기간이 오래되었지만, 본 범행으로 수감되기 이전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수감 후 구치소 내 문제행동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결과, 관계망상과 정동의 둔마, 사회적 위축이 심한 조현병으로 진단받았다.

- 진주 할머니 살인사건: 약물복용 후 환각상태에서의 폭행

1) 범행 내용

2012년 2월, 경남 진주시에 있는 철물점에서 공업용 본드 10개를 구입한

후, 주공아파트 지하보일러실에서 본드를 비닐봉지에 찢아 넣은 다음 밤새 흡입하였다. 아침 8시 경, 비상계단 입구에서 아침운동을 하고 있던 80대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그곳에 있던 시멘트 벽돌 조각으로 할머니의 머리를 가격하고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양쪽 발목 등을 수회 찢어 살인을 저질렀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 음부와 항문에 다수의 자상을 가하였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에 관한 여러 건의 조사에서 본드 흡입에 관련하여서는 모두 시인을 하고, 살인혐의에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하였다.

2)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가해자는 29세 남성으로 고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가끔 일용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가해자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과음으로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가출을 하였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고아원에서 2년간 생활하였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차별을 받고 자랐으며, 친척의 신체적 학대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일진에 가입했으며, 중학교 3학년 때 니스를 처음 흡입하였고, 그 이후 계속 본드를 흡입해왔다. 폭력, 절도, 약물 흡입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4회와 집행유예, 징역형 등 8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2. 국외 묻지마 범죄의 대표 사례 및 특성

이하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와 유사한 양상의 해외 사례를 제시하였다. 해외 사례는 범죄학 관련 서적들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해외 사례 역시 제공된 기록을 바탕으로 국내 사례와 같이 크게 불만 및 분노형과 정신장애형으로 나누어 사례를 소개하겠다.

가. 불만 및 분노형

- 미국 제임스 휴버티(James Huberty) 맥도날드 총기난사 사건: 자신의 처지 비관

1) 범행 내용

1984년 7월 18일 오후 3시 40분, 제임스 올리버 휴버티(41세, 남)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산 이시드로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77분간 총기를 난사하여 총 19명이 부상당하고 21명이 사망하였다. 범행의 동기로는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신체적 결함과 그로 인해 비롯된 실직, 부동산 거래 실패와 연이은 법정 싸움, 새로운 직장에서의 실직 등 연달아 발생한 스트레스 사건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아내는 현재 주거지로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부동산 거래 실패가 가장 주된 동기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가해자인 제임스 올리버 휴버티는 범행 당시 아내(Etna Huberty)와 두 딸(Zelia, Cassandra)과 함께 살고 있었다. 3세 때 소아마비에 걸린 탓으로, 그는 영구적인 보행 장애가 있었으며, 성격은 상당히 내성적이었다. 한 때 용접공으로 일하였으나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곧 오른쪽 팔의 경련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용접공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와 그의 아내 Etna는 모두 폭력 전과가 있으며, 남편이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아내가 신고한 적도 있을 정도로 가정폭력이 빈번했다.

그는 오하이오 캔턴에서 총 여섯 가구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건물주였는데, 부동산 회사가 중개 거래의 일부를 어겨 법정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1984년 1월, 그의 가족은 캔턴을 떠나 산 이시드로에 정착하였고, 그는 경호원으로 취직했으나 사건 발생 2주 전에 해고당하였다. 사건 발생 후, 그의 아내는 오하이오의 부동산 거래 실패로 인한 분노와 실망을 그의 범행에 대한 주된 동기로 꼽았다.

- 미국 찰스 로버츠(Charles Roberts) 학교 총기난사 사건: 자신의 처지 비판

1) 범행 내용

2006년 10월 2일 오전 9시 51분 경, 찰스 로버츠(남, 32세)가 펜실베이니아 랭커스터 카운티에 있는 West Nickel Mines School에 들어가 인질극을 벌인 끝에 10명의 소녀를 쏴 5명이 사망하고, 찰스 로버츠 자신도 자살한 사건이다. 한 아이의 시신에서 24개의 총상이 발견되는 등 총기를 무차별적으로 난사하였으며, 범행에 사용한 도구들을 사건 6일 전에 구입하는 등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 찰스 로버츠는 네 장의 메모(유언장)를 남겼는데, 여기에는 9년 전, 태어난 지 20분 만에 죽은 그의 미숙아 딸에 대한 낙담이 표현되어 있었고, 이 딸의 죽음 때문에 ‘여전히 신에게 화가 나있다’고 쓰여 있었다.

2)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가해자 찰스 로버츠(Charles Carl Roberts IV)는 범행 당시 만 32세의 남성으로, 직업은 한 식품 회사의 우유 탱크 트럭 운전수였다. 그에게는 총 2남 1녀의 자녀가 있었고, 엘리스(Elise Victoria Roberts)라는 딸이 있었으나 1997년 11월에 미숙아로 출생 후 20분 만에 사망하였다. 지인들에 따르면 찰스 로버츠는 조용하고 성실하며 신앙심이 깊고, 가정적인 남자로 알려져 있었다. 범행에 있어, 9년 전 있었던 미숙아 딸의 사망에서 비롯된 분노가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존스 홉킨스(John Hopkins) 대학 정신과 의사인 Fred Berlin은 찰스 로버츠가 범행 이전부터 점차적으로 우울해졌으며, 이러한 외증에 오래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매우 몰입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 미국 마이클 맥더모트(Michael McDermott) 총기난사 사건: 특정한 자(전 직장)에 대한 분노를 무차별 살상으로 표현

1) 범행 내용

2000년 12월 25일, 마이클 맥더모트(남, 42세)는 탄약과 무기를 그의 전 직장

에지워터 테크놀로지(Edgewater Technology)에 숨겨두고 돌아왔다. 이후 바로 다음날 오전 11시 10분 경, 그는 전 직장으로 가서 약 5-10분에 걸쳐 총기를 37차례 난사하여 7명의 동료를 살해하였다. 그는 에지워터 테크놀로지가 그의 임금 중 5,500달러를 세금 명목으로 압류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하였다.

2)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가해자 마이클 맥더모트(남, 42세)는 미국 매사추세츠 출신의 백인으로, 직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으며 전과는 없었다. 그는 1992년 결혼했는데, 아내와는 1996년 5월 별거에 들어가 결국 1997년에 이혼했다. 한 원자력발전소에서 관리자로 일하던 시절 그는 정신병 증세를 보였고, 1987년에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그와 함께 일했던 그의 전 직장 동료는 “그는 조금 이상해 보였으며, 그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일반적으로 그의 동료와 이웃들은 그를 ‘무례하고, 변덕스럽고, 매우 이기적’이라고 평하였다. 또한 법정에서 참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마이클 맥더모트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은 채 내내 성경을 읽고 있었으며,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 미국 찰스 윌리엄스(Charles Williams) 학교 총기난사 사건: 특정한 자(따돌림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무차별 살상으로 표현

1) 범행 내용

2001년 3월 5일, 동급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찰스 윌리엄스(남, 15세)가 자신이 재학 중이던 캘리포니아 소재 산타나 고등학교(Santana High School)에서 학생들에게 6분 동안 총기를 무차별 난사하여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그는 화장실 밖으로 나와 총을 발포한 후, 다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몇 차례 반복하였고, 총격 도중 종종 미소를 짓기도 하였다.

사건 전 주말에 그가 총을 들고 학교에 가서 모두 부숴놓겠다고 말하자, 2명의 친구가 그를 조롱하며 용기가 있으면 해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친구

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에 찾아가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2)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가해자인 찰스 앤드류 윌리엄스는 범행 당시 만 15세로, 2남 중 둘째로 태어났으나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살게 되었으며, 어머니와 거의 만나지 못했다. 그의 친구들은 찰스 윌리엄스를 매우 친절하고, 항상 미소를 띠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묘사하였다. 2000년, California로 이사 와서 산타나 고등학교(Santana High School)에 다녔는데, 이 때 학교에서 괴롭힘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그는 학교 상담사를 찾아갔으나, 예약이 꽉 차 있어서 돌아가야 했다. 사건 발생 전 주말, 찰스 윌리엄스가 총을 들고 학교에 가서 모두 부숴놓겠다고 말하자, 2명의 친구가 그를 조롱하며 용기가 있으면 해보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Mark Barton 총기난사 사건: 특정한 자(투자회사)에 대한 분노를 무차별 살상으로 표현

1) 범행 내용

1999년 7월 27일 밤, 마크 오린 바튼(Mark Orrin Barton, 남, 44세)은 부인인 Leigh Ann이 자고 있을 때 그녀를 망치로 때려 살해하고, 다음날 밤에 자고 있는 아들과 딸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이후 29일 오후 3시경, 그는 All-Tech 투자그룹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5명을 살해하고, 이어 건너편의 Momentum 증권사로 가서 다시 총기를 난사하여 4명을 살해하는 등 총 9명을 추가로 살해한 후 주유소에서 자살하였다.

마크 바튼은 가족들의 시신에 남긴 메모에 자신이 죽어가고 있으며, 밤에 잠에서 깨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삶의 고통으로부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해했다고 적어 놓았다. 이외에도, 두 달 동안 회사에서 약 10만 불 정도를 잃은 것이 동기가 되어 회사 두 곳에서 총기난사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가해자인 마크 오린 바튼(Mark Orrin Barton)은 외아들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독일에서 보냈는데, 지능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정서적인 부분이 결핍되어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0대에 환각제를 남용하였고, 과잉투약으로 인해 수차례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 전과가 있었다.

첫 번째 부인인 Debra Spivey 사이에 두 명의 자식이 태어난 무렵, 편집증적 증상을 보이며 부인을 통제하는 등 결혼 생활에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993년 그의 첫 번째 부인과 장모가 망치에 맞아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에서 마크 바튼은 유력한 용의자였다. 1995년 Leigh Ann과 재혼 후 다시 그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면서,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그는 주식 투자가로 일하고 있었으며, 범행 장소인 Momentum 증권사와 All-Tech 투자그룹에서 근무하면서 첫 번째 부인의 보험금을 모두 탕진하고 개인 수입의 대부분을 투자하여 잃었다. 그의 직장 동료들은 쉽게 폭발하는 그의 성격 때문에 그를 “로켓”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 일본 도쿄 시부야 전철역 와타나베 도모히로 사건: 자신의 처지 비판

1) 범행 내용

2012년 5월 21일 저녁, 도쿄 메트로 시부야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와타나베 도모히로(32세, 남)가 처음 보는 한 남성을 세계 때린 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그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나란히 선 남성에게 “뭐야. 하지마.” 등의 말을 한 뒤, 갑자기 남성의 얼굴을 여러 번 주먹으로 때렸으며, 그 후 가방에서 칼(칼날 30cm 정도)을 꺼내 옆구리와 목 등을 찔렀다. 그는 “인생이 좀처럼 잘 풀리지 않아 늘 짜증난 상태였다. 쌓였던 스트레스가 (피해자 남성이) 부딪히자 단숨에 폭발했다.” 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몸이 부딪힌 기억은 없다.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칼로 찔렸다.” 라고 말하였다.

2)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와타나베 도모히로는 일정한 직업이 없던 32세 남성으로, 그가 세를 들어 살던 아파트 주인에 따르면 약 10년 전부터 혼자 살았으며, 1년 전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 밤 근무를 찾을까 생각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아파트 주인은 “도쿄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 것 같았고 옷차림도 단정했다. 얌전했고, 사람을 찌를 것 같은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한편, 약 6년 전 가해자의 이웃에 살았던 남성은 와타나베에 대해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몇 번 마주쳐도 인사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가 방에 있을 때에도 생활 소음이 전혀 안 들리고,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으며, 와타나베에 대해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나. 정신 장애형

- 일본 이바라키현 쓰치우라 연속살상 사건: 망상으로 인한 살상

1) 범행 내용

2008년 3월 19일과 23일에 카나가와 마사히로(남, 24세)가 칼로 사람들을 연달아 찔러, 총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다. 그는 2008년 1월과 2월에 걸쳐 흥기로 쓰인 식칼 등 칼 2정을 구입하고, 3월 19일 오전 한 주택 현관문 앞에서 72세 남성을 뒤에서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3월 22일, 그는 휴대전화로 이바라키현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어서 붙잡아봐” 라고 말하며 도발한 뒤, 머리를 자르는 등의 변장을 하였다. 이후 23일 오전 11시 경, 그는 동일본 여객철도(JR동일본) 아라카와오키역에서 칼로 통행인과 경찰관 8명을 연달아 찔렀다. 그는 피 묻은 식칼을 손에 쥔 채 역에서 약 200m 떨어진 파출소로 가서 “제가 범인입니다.” 라고 말한 뒤 달려온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아무나 상관없었다.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며, 사형 선고를 받아 죽기 위한 수단으로써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하였다. 사형 선고를 받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는 “부모의 잘못이거나 교육의 실패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란 것도 운명이다.” 라고 진술했다.

2)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카나가와 마사히로는 범행 당시 무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도, 취직도 하지 않고, 다만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만화책을 읽으며 지냈으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피하면서 식사도 혼자 했다고 한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나는 신이다.”, “내가 하는 것이 전부다.” 라고 적혀 있었으며, 그의 방에는 “死” 라는 글자와 함께 의미 불명의 기호 같은 것이 온 벽에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살할 용기가 없어서 살인을 저질렀다.” 며 “사형 선고를 받고 싶다. 살아가는 것이 싫어졌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유족이나 피해자들에게 딱히 사죄할 생각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미소를 짓는 등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그는 구치소에서도 매일 살해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단언하며, 지금 석방된다면 또 살인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 일본 센다이 아케이드 거리 트럭 폭주 사건: 환청으로 인한 살상

1) 범행 내용

2005년 4월 2일 아침, 보행자 전용으로 되어 있는 센다이시 아오바구의 상가인 ‘주오도오리’(아케이드 거리)에 오오토모 세이지(남, 38세)가 지난 달 하순에 빌린 4톤 트럭을 타고 침입하여 시속 40-50km의 속도로 폭주해 보행자 총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인 오오토모 세이지는 분신자살을 하려고 착용하고 있었던 옷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불에 타는 옷을 트럭에 방치한 후 근처에 있는 센다이역 앞 파출소로 가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죽고 싶어서 고향에 왔다.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죽을 수 없었다.”,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진술했다.

2)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가해자인 오오토모 세이지는 주소 부정인 38세의 남성으로, 범행 당시 무직

이었다. 그는 오랜 세월을 걸쳐 환청에 시달렸으며, 그러한 이유로 이혼과 전직을 거듭했다. 그는 센다이과 도쿄 우에노 등을 전전하며 옮겨 다니면서 노숙 생활을 하였다. 그는 “(사건) 전날에 자살하려고 했지만 죽을 수 없었다. 센다이 시내의 공원에서 자려고 했으나 잠이 안 와서, 범행 직전까지 시내를 트럭을 타고 돌아다녔다.” 라고 진술했다.

- 일본 히로시마 마츠다 자동차 공장 사건: 망상으로 인한 살상

1) 범행 내용

2010년 6월 22일 오전 7시 35분 경, 히로시마에 있는 마츠다 본사 공장에서 히키지 토시아키(남, 44세)가 승용차를 타고 마츠다 공장으로 진입해 종업원들을 차례로 치어, 총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2008년 6월 8일의 아키히바라 무차별 살상사건⁸⁾처럼 해주고자 생각했다. 마츠다의 종업원이라면 누구든지 상관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마츠다에서 복수의 종업원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후에 사실이 아닌 망상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오늘 마츠다 회사에 무언가 복수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정문에 들어서니 모든 게 어떻든 상관없었다. 기분이 안 좋아서, 죽일 생각으로 사람을 치었다.”, “공장 안에서 차를 세워서 식칼을 휘두를 생각이었다.” 라고도 진술했다.

2) 가해자 특성 및 심리상태

히키지 토시아키는 이전에 마츠다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던 사원이었다. 그는 어릴 때는 섬세하고 평범한 소년이었다고 한다. 그는 범행 전에 지인에게 “나는 패배자. (마케구미: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 및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지칭하는 단어.)” 라고 이야기하는 등

8) 2008년 6월 8일(일) 낮 12시 30분 경, 도쿄 JR 아키히바라역 인근 보행자 전용도로인 ‘보행자 천국’에 기토 도모히로(남, 25세)가 2톤 트럭을 몰고 달려들어 행인 5명을 친 후, 차에서 내려 반경 100m에 걸쳐 통행인 및 경찰관 12명에게 무차별적으로 단검을 휘둘러 살상한 사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아키하바라 사건이 있었던 2008년에 파산했으며, 그 이후로 생활이 매우 곤궁하여 30세가 되어서도 부모님 집에서 살았다.

그는 “마츠다 공장에서 동료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라고 말하면서, 마츠다 회사에 복수하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는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망상에 의한 착각으로 밝혀졌다. 회사에서 특별히 큰 문제점은 없었으며, 후에 당시의 회사 동료도 히키지 토시아키가 “차분하여 근무 태도도 문제 없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마츠다에서 근무했던 3·4월에 “개인 보관함 안의 물건을 도둑 맞았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4월 중순에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며 자택에서 경찰서에 전화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소동도 있었다. 경찰관에게 그는 “돈을 도둑맞았다.”, “도청기가 장치되고 있다.” 라고 호소했으나, 구체적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번은 “집 안의 물건들의 배치가 바뀌고 있다. 똑같은 괴롭힘을 여러 번 당하고 있다.” 며 경찰에 익명으로 신고한 적도 있었다. 이 무렵 주위 지인에게는 “잠이 안 온다.”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3. 국내 및 국외의 묻지마 범죄의 사례 비교 분석

국내의 묻지마 범죄자들은 주로 과도 등 예기를 사용하거나(영등포 살인미수 사건, 여의도 칼부림 사건, 망우동 살인미수 사건, 속초 터미널 살인미수 사건 등), 둔기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공격하는(종로 2가 여성 폭행 사건, 진주 할머니 살인 사건 등)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국내의 묻지마 범죄자들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주로 총기를 난사하여(제임스 휴버티, 찰스 로버츠, 마이클 맥터모트, 찰스 윌리엄스, 마크 바튼 사건 등)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미국 등 국외의 묻지마 범죄의 경우 이러한 흉기의 선택에 있어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의 규모가 대량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국내의 묻지마 범죄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제임스 휴버티 사건 총 19명 부상, 21명 사망; 찰스 로버츠 사건 총 5명 사망; 마이클 맥터모트 사건 총 7명 사망; 찰스

월리암스 사건 총 2명 사망, 13명 부상; 마크 바튼 사건 총 12명 사망 등).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차이를 넘어서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궁극적 원인과 범죄자의 배경 특성을 살펴보면 국내와 국외 묻지마 범죄자들은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판 및 사회나 현실에 대한 불만을 모르는 이에게 무차별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불만 및 분노형 범죄자들의 경우,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범행 수법과 배경 특성에서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평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자괴감을 느끼던 중 범죄를 저지른 영등포 골목길 사건이나, 직장에서 퇴사한 이후 빚이 늘어가고 자신과 타인, 사회에 대한 분노로 칼부림을 저지른 여의도 사건, 자신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학업문제 등으로 처지를 비판하던 가해자가 저지른 반포 초등학교 사건 등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실직과 부동산 거래 실패, 연이은 법정 싸움 등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여 충기난사를 저지른 제임스 휴버티나, 전 직장에 대한 분노를 무차별 살상으로 표출한 마이클 맥더모트, 자신의 투자금을 상당 부분 잃고 그 분노를 투자회사에 표현한 마크 바튼 등은 모두 범행의 근본적 원인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주로 정신 장애나 음주,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망상, 환각 등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정신 장애형 범죄자들의 경우에도, 국내와 국외를 막론하고 상당한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환청으로 인해 살인미수를 저지른 망우동 사건이나 망상으로 인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속초 터미널 사건, 본드 흡입 후 환각 상태에서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진주 사건의 경우, 환청으로 인해 트럭으로 폭주한 일본 센다이 아케이드 거리 사건이나 망상으로 인해 전 직장에서 살상을 저지른 마츠다 자동차 공장 사건과 본질적으로 그 범행의 원인에 있어 상당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묻지마 범죄와 해외의 유사 범죄들의 명칭이 다르거나 표면적 범죄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묻지마 범죄를 우리나라의 고유의 현상으로만 인식하고 그것에 함몰되어 난해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해외의 유사 범죄 사례 연구 및 대책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형사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 4장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

문지마 범죄의 특성

윤정숙 · 박지선 · 김민정

문지마 범죄의 특성

제1절 조사방법 및 절차

1. 조사 개요

본 연구는 문지마 범죄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2012년 대검찰청에 문지마 범죄로 보고된 57건의 수사재판기록들 중 제주 지방검찰청에 소재한 1건을 제외하고, 전국의 지방 검찰청과 지청에 소재한 56건의 사건들을 모두 기록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기록 조사에는 조사 방법에 대해 훈련받은 인턴연구원 및 위촉연구원 총 4명이 투입되었으며,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 지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중간 지점마다 연구 책임자와 위촉연구원의 주도로 코딩지의 감수가 이뤄졌으며, 코딩에 대한 이견 등이 있을 때는 서로 논의하여 일치되는 방향으로 조율하였다. 각 사례들은 범죄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피해자·참고인 증언, 공소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해자 특성에 따라 치료감호소 기록이나 병원 기록 등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범행관련요인, 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심리사회적 요인, 피해자 관련 요인들을 추출하여 문지마 범죄와 가해자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조사대상 선정 및 제외

조사된 자료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대검찰청이 제공한 사례들이 본 연구에서 정의한 묻지마 범죄의 구성요건(비면식관계의 불특정인, 폭력행사, 불분명한 동기)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다. 묻지마 범죄의 최소 구성요건으로 제시한 위 세 가지 특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정의에 따라 조사대상의 선정 및 제외가 이뤄졌다.

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조작적 정의

1) 비면식관계의 불특정인

묻지마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비면식 관계이다. 면식은 얼굴을 서로 아는 정도의 관계로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지만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면식을 두 사람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이 거의 없거나 최소한인 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얼굴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경우는 사례 분석에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이 있는 가해자의 행동이 기이하여 얼굴을 이미 알고 있던 사례나, 교회에 새 신자로 온 가해자가 교회 신도 중 한 명을 해한 경우는 서로의 얼굴은 알고 있지만, 대화나 접촉이 거의 없었다고 판단되어 묻지마 범죄에 포함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개인에 대한 범죄가 불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확대된 경우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즉, 가해자가 구체적 개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범행 과정 중에 가해자, 피해자 모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주변의 불특정인들까지 해한 사례는 묻지마 범죄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가해자가 상호관계가 거의 없는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를 가하는 환상이나 망상에 시달려 오다가 범행을 실현한 경우에는 폭력을 가한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환상이나 망상 속에서 접촉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 접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비면식 관계로 정의하여, 묻지마 범죄 사례 분석에 포함하였다.

2) 폭력 행사

폭력 행사는 직접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나 폭력 행사로 인해 기물 등이 파손된 경우, 혹은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협박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묻지마 범죄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타인에게 흥기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폭력 행사의 대상이 신체가 아닌 기물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비비탄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강남 일대의 기물을 집중적으로 파손한 경우는 폭력 행사로 인한 불특정 타인의 신체적 피해는 없으나 불특정인 소유의 무차별적 기물 손괴가 명백하므로 묻지마 범죄 사례 분석에 포함하였다.

3) 불분명한 동기

불분명한 동기는 범죄 동기가 뚜렷하지 않거나 이해하기가 힘들며 가해자의 왜곡된 의식 속에만 존재하는 내용으로 현실적으로 일반화되기 힘든 경우로 정의하였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 동기는 대개 사고 와해의 과정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가 쳐다봤다던지’ ‘어깨를 부딪쳐서든지’ 등 역시 현실적으로 어떠한 폭력 행사의 동기로 간주되기 힘들다. 자신의 처지 비관이나 사회에 대한 분노가 범죄 동기인 경우도 그러한 이유로 인해 왜 불특정인이 지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한 동기로 간주, 묻지마 범죄 사례 분석에 포함하였다.

나. 조사 사례 선정 및 제외

본 연구는 대검찰청이 제공한 56건(제주도 1건 제외)의 묻지마 범죄 수사재판 기록 중 위에 열거된 묻지마 범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7건의 사례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건은 성폭력 범죄로 범죄동기가 본인의 이득 추구(성적 만족)로 명확하여 제외되었고, 5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면식관계이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와 이미 상호작용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요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통계적 타당도를 위해 제외된 사건은 1건이다. 이는 한 명의 가해자가 두 건의 범죄를 저질러 수사재판기록이 각각 제공된 경우로, 한 가해자의 특성이 통계결과에 과대 반영되지 않도록 한 건의 사례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한 사건이 두 명의 가해자에 의해 일어난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 경우는 두 명 모두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각각의 수사재판기록이 제공되었기에 범죄자와 관련한 특성을 분석할 때는 두 명의 가해자를 모두 포함하였고, 범죄 사건에 관한 분석에서는 한 사건만 포함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주제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정보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이로 인해 한 사건이 범죄 특성에 관한 통계분석에 과대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적 분석에 포함된 범죄자 사례는 모두 48명이며 범죄건수는 총 47건이었다.

3.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조사 기록지는 크게 가해자 정보, 범죄 사건 정보, 피해자 정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중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죄력 관련 특성, 본 범행 관련 특성, 발달 및 인지·정서 등 심리학적 특성으로 세분화하였다. 한 가해자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에 피해자들의 나이, 성별, 피해 정도에 관한 분석은 한 가해자 당 5명까지만 포함하였다. 피해자 특성의 통계 분석에 대한 설명은 피해자 특성에 관한 조사결과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통계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우선 묻지마 범죄자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빈도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묻지마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과 사건 특성을 이용하여 범죄자를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다차원 척도법의 하나인 최소공간분석을 이용하여 세부 유형을 정립하였다. 세부 유형이 정립된 후 유형 간의 특성 비교 등이 사후적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하여 묻

지마 범죄자에 대한 전체적 특성과 세부 유형의 보다 상세한 특성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제2절 묻지마 범죄의 특성

1.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특성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연령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와 30대가 각각 33.3%와 31.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 다음은 20대 18.8%, 50대 10.4%, 10대 4.2%, 60대 2.1% 순이었다. 가해자들의 평균 나이는 37.98세($SD=10.901$)였으며, 가장 나이가 어린 가해자는 18세였고, 가장 나이가 많은 가해자는 68세였다(표 3-1 참조).

표 3-1 묻지마 범죄 가해자 연령

연령	인원(%)
10대	2(4.2)
20대	9(18.8)
30대	15(31.3)
40대	16(33.3)
50대	5(10.4)
60대	1(2.1)
계	48(100.0)

2) 성별

가해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48명 중 47명이 남자(97.9%)였으며, 여자 가해자는 1명으로 2.1%였다(표 3-2 참조).

표 3-2 문지마 범죄 가해자 성별

성별	인원(%)
남	47(97.9)
여	1(2.1)
계	48(100.0)

3) 가해자 주거 특성

다음은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주거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가해자의 주거지역을 살펴보면, 14명(29.2%)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9명(18.8%)이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은 경남 6명(12.5%), 인천 4명(8.3%), 경북 3명(6.3%), 강원 3명(6.3%) 등으로 나타났다.

표 3-3 문지마 범죄 가해자 주거 특성

		인원(%)
가해자 주거지역	서울	14(29.2)
	부산	2(4.2)
	인천	4(8.3)
	대구	1(2.1)
	광주	0(0.0)
	대전	0(0.0)
	울산	1(2.1)
	경기	9(18.8)
	경북	3(6.3)
	경남	6(12.5)
	전북	1(2.1)
	전남	1(2.1)

		인원(%)
	충북	1(2.1)
	충남	2(4.2)
	강원	3(6.3)
계		48(100.0)
고정된 주거여부	없음	10(20.8)
	있음	36(75.0)
	알수없음	2(4.2)
계		48(100.0)
거주형태	혼자거주	24(50.0)
	동거	23(47.9)
	알수없음	1(2.1)
계		48(100.0)

고정된 주거지가 있는 가해자는 36명(75.0%)이었으며, 고정된 주거지가 없는 가해자는 10명(20.8%)이었다. 가족 혹은 지인과 함께 사는 가해자는 23명(47.9%)이며, 동거인 없이 혼자 사는 가해자는 24명(50.0%)으로 보고되었다(표 3-3 참조).

4) 범행당시 직업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범행당시 직업 유무를 살펴보면, 직업이 없던 경우가 36명으로 전체의 75.0%를 차지하며 높은 빈도를 보였다. 직업이 있는 경우, 그 직업의 유형이 정규직 혹은 자영업이었던 가해자는 1명(2.1%)에 머물렀으며,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이었던 경우는 11명(22.9%)으로 보고되었다(표 3-4 참조).

표 3-4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범행당시 직업

직업유무	인원(%)
없음	36(75.0)
있음(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11(22.9)
있음(정규직 혹은 자영업)	1(2.1)
계	48(100.0)

5) 월평균 소득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소득이 전혀 없다고 대답한 가해자가 35명으로 72.9%의 빈도를 보여, 가해자의 직업 분석 결과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가해자는 각각 6명(12.5%)이었다(표 3-5 참조).

표 3-5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	인원(%)
없음	35(72.9)
100만원 미만	6(12.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12.5)
알수없음	1(2.1)
계	48(100.0)

6) 최종학력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최종학력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고 보고한 가해자는 2명(4.2%)이었으며, 초등학교를 졸업한 가해자는 9명(18.8%), 중학교를 졸업한 가해자는 13명(27.1%)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해자는 18명(37.5%)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가해자는 5명(10.4%)에 머물렀다(표 3-6 참조).

표 3-6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최종학력

교육수준	인원(%)
학교 다닌 적 없음	2(4.2)
초등학교 졸업	9(18.8)
중학교 졸업	13(27.1)

교육수준	인원(%)
고등학교 졸업	18(37.5)
대학교 재학 혹은 졸업	5(10.4)
알수없음	1(2.1)
계	48(100.0)

7) 혼인상태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혼인상태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해자가 미혼이었던 경우가 36명(75.0%)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혼인 생활 중이거나, 이혼 경력이 있는 가해자는 8명(16.7%)이었으며, 동거 혹은 사실혼 상태였던 가해자는 3명(6.3%)으로 보고되었다(표 3-7 참조).

표 3-7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혼인상태

혼인 상태	인원(%)
미혼	36(75.0)
기혼 혹은 이혼	8(16.7)
동거 혹은 사실혼	3(6.3)
미상	1(2.1)
계	48(100.0)

8) 병역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병역 특성을 살펴보면, 병역을 마친 가해자가 20명(41.7%)이었으며, 군대를 가지 않은 가해자가 19명(39.6%)으로 비슷한 빈도를 보였다. 군대를 가지 않은 이유는 학력미달, 정신병 진단, 생활고 등으로 조사되었다. 군 생활 중에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병의 발생으로 인해 의가사제대를 한 가해자는 4명(8.3%)으로 나타났으며, 기록조사 상 병역 특성을 알 수 없던 경우

가 4명(8.3%), 가해자의 성별이 여성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1명(2.1%)이었다(표 3-8 참조).

표 3-8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병역

병역	인원(%)
병역필	20(41.7)
미필	19(39.6)
의가사제대	4(8.3)
해당사항없음	1(2.1)
알수없음	4(8.3)
계	48(100.0)

나. 범죄력 관련 특성

1) 전과 경력⁹⁾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전과를 살펴보면, 전과가 없는 가해자가 12명으로 전체의 25.0%였으며, 재범자는 36명(75.0%)이었다. 재범자들 중에는 전과수가 1-5건인 가해자가 18명(37.5%)으로 가장 많았으며, 6-10건이 8명(16.7%), 11-15건이 5명(10.4%), 16건 이상이 5명(10.4%)으로 보고되어, 상습적 범죄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9 참조). 가해자들 중, 전과수가 가장 많은 경우는 27건이었으며, 평균 전과수는 6.0건(SD: 6.707)이었다.

9) 법원의 유죄판결 기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해자의 과거 범죄사건에 대한 각각의 판결기록문은 조사자료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병합된 사건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난 경우는 한 건의 전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된 문지마 범죄 가해자들의 전과는 실제 범행 건수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9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전과

전과수	인원(%)
없음	12(25.0)
1-5건	18(37.5)
6-10건	8(16.7)
11-15건	5(10.4)
16건 이상	5(10.4)
계	48(100.0)

2) 과거 범죄 종류

조사 대상자 중 이전에 범죄 경력이 있는 36명의 가해자들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 종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10>과 같다. 가해자가 1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는 복수응답으로 표기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36명의 재범자들 중 91.7%인 33명이 폭력 혹은 상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지마 범죄 가해자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률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였다. 음주운전/무면허/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18명(50%)이었으며, 사기·횡령 11명(30.6%), 절도 11명(30.6%), 재물손괴 9명(25.0%) 순이었다. 강도 전력이 있는 가해자는 4명(11.1%)이었으며, 마약/환각물질에 관한 법률 위반자 3명(8.3%), 성폭력·성매매 전과자 1명(2.8%)으로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표 3-10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전과범죄명

과거 범죄 종류(복수응답)	인원(%)	계
강도	4(11.1)	36(100.0)
폭력, 상해	33(91.7)	36(100.0)
성폭력, 성매매	1(2.8)	36(100.0)

과거 범죄 종류(복수응답)	인원(%)	계
사기, 횡령	11(30.6)	36(100.0)
절도	11(30.6)	36(100.0)
재물손괴	9(25.0)	36(100.0)
음주운전/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	18(50.0)	36(100.0)
마약/환각물질에 관한 법률 위반	3(8.3)	36(100.0)
기타(병역법 위반, 도박 등)	23(63.9)	36(100.0)

*백분율은 응답자 수 기준

3) 대인범죄 전력¹⁰⁾

다음의 <표 3-11>은 과거 범행 중에 대인범죄 전력이 있는 문지마 범죄 가해자를 살펴본 결과이다. 대인범죄 전력이 없는 가해자는 13명(27.1%)으로 나타났으며, 대인범죄 전력이 있는 가해자는 35명(72.9%)이었다. 대인범죄 전력이 없는 가해자들은 전과가 전혀 없었던 12명과 과거범죄의 내용이 대물범죄에 그친 가해자 1명이 포함된 결과이다.

표 3-11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대인범죄 전력

대인범죄 전력	인원(%)
없음	13(27.1)
있음	35(72.9)
계	48(100.0)

10) 대인범죄 전력은 가해자가 강도, 폭력, 상해, 성폭력 등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끼친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험을 모두 합하여 양분하여 코딩하였다.

4) 과거 묻지마 범죄 전력¹¹⁾

다음의 <표 3-12>는 가해자들이 본 범행 이전에 저지른 대인범죄가 묻지마 범죄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대상자는 대인범죄 전력이 있는 35명에 한하였다. 이 중에서 수사재판기록에 과거 범죄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 묻지마 범죄 전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던 경우는 35명 중 13명으로 37.1%였다. 과거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표출적 유형의 폭력을 행사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가해자는 7명(20.0%)이었으며, 한 건 이상의 묻지마 범죄 전력이 있다고 확실하게 판단되는 가해자는 15명으로 전체의 43.0%를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조사 대상이 된 사건을 제외하고 10건 이상의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4명으로 11.5%를 차지하였으며, 각각 10건, 11건, 12건, 18건의 묻지마 범죄 전력을 지니고 있었다. 과거 묻지마 범죄 수의 평균은 3.41건(SD: 4.88)이었다.

표 3-12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과거 묻지마 범죄 전력

과거 묻지마범죄 전력	인원(%)
없음	7(20.0)
1-2건	7(20.0)
3-5건	4(11.5)
6-9건	0(0.0)
10건 이상	4(11.5)
알수없음	13(37.1)
계	35(100.0)

11) 가해자의 과거 범죄에 대한 판결문 혹은 사건송치서 등이 수사재판기록에 포함되어 있어, 가해자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본 연구에서 정의한 묻지마 범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하였다. 본 범행에 대한 수사재판기록에 가해자의 과거 범죄에 대한 부수적인 정보가 제공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분석은 가해자의 묻지마 범죄 전력에 대한 최소추정치라고 볼 수 있다. 가해자의 과거 범죄에 대하여 부수적인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아, 묻지마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던 경우는 ‘알수없음’으로 코딩하였고, 여러 건의 대인범죄 중 일부 건에 대한 정보만 제공된 경우는 그 일부 범죄만을 분석하여 묻지마 범죄 여부를 판단하였다.

5) 과거 문지마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분내용

다음의 <표 3-13>은 과거 문지마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내용을 살펴본 결과이다. 과거 대인범죄 전력이 있는 가해자 35명 중에 수사·재판 기록상 그 범죄가 문지마 범죄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던 경우 7건과, 과거 대인범죄 전력이 있으나 해당 범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처분 내용을 알 수 없는 가해자 14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문지마 범죄를 저질러 법원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해자 14명 중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9명(64.3%)이었고, 구금형을 받은 가해자는 5명(35.7%)로 보고되었다. 구금형을 받은 문지마 범죄 전과자 5명의 전과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7건, 14건, 18건, 23건, 27건이었으며, 이 중에 문지마 범죄 건수는 최소 3건, 최대 18건이었다. 5명 모두 문지마범죄로 인해 구금형을 받기 이전에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험이 있었다.

다음은 문지마 범죄로 인해 구금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평균 전과수와 평균 문지마 범죄수를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구금형을 선고받은 문지마 범죄 전과자의 전과 평균은 19건으로, 벌금형만 선고받은 문지마 범죄 전과자들의 평균 전과수 6건과 비교하여 범죄력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p=.003$). 마찬가지로, 구금형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문지마 범죄를 저지른 건수는 평균 9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가해자의 평균 문지마 범죄 전과수 3건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33$).

표 3-13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과거 문지마 범죄에 대한 처분내용

처분내용		인원(%)		
빈도	벌금형	9(64.3)		
	구금형	5(35.7)		
	계	14(100.0)		
		평균(SD)	S.E	t
총 전과수	벌금형	6.00(5.172)	1.754	-3.734**
	구금형	18.60(7.503)	7.503	

처분내용		인원(%)		
묻지마범죄 전과수	벌금형	3.11(3,219)	1.073	-2.413*
	구금형	9.20(6,380)	2.853	

*: $p < .05$, **: $p < .01$

다. 본 범행관련 특성

1) 본 범죄명

다음의 <표 3-14>는 묻지마 범죄 가해자 48명의 본 범죄에 대한 범죄명을 살펴본 결과이다. 범죄명 분석은 두 종류 이상의 범죄가 경합되었거나 병합된 경우를 고려하여, 사건의 핵심이 되는 범죄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범죄명은 두 건 이상의 범죄가 경합 혹은 병합된 경우에 범죄의 성격이 본 연구에서 정의한 묻지마 범죄에 가장 적합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형태의 범죄명을 입력한 것이다. 범죄명의 결과를 보면, 살인 2명(4.2%), 살인미수 12명(25.0%), 살인예비·음모 2명(4.2%)으로 조사되어 살인범죄가 33.4%를 차지하였다. 상해를 저지른 가해자는 23명(47.9%)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폭행과 재물손괴 각각 3명(6.3%), 협박·공갈 2명(4.2%), 방화 1명(2.1%) 순이었다.

표 3-14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본 범죄명

범죄명		인원(%)
범죄명	살인	2(4.2)
	살인미수	12(25.0)
	살인예비, 음모	2(4.2)
	상해	23(47.9)
	폭행	3(6.3)
	방화	1(2.1)
	협박, 공갈	2(4.2)
	재물손괴	3(6.3)
계		48(100.0)

2) 범행 당시 음주/약물/본드 사용

범행 당시 가해자의 음주, 약물 혹은 본드 사용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범행당시 음주/약물/본드를 사용한 가해자가 27명(56.3%)를 차지하여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를 한 가해자는 27명 중 24명이었으며, 마약을 사용한 가해자가 2명, 본드흡입자가 1명 이었다(표 3-15 참조).

표 3-15 문지마 범행 당시 음주/약물/본드 사용 여부

음주/약물/본드 사용	인원(%)
없음	21(43.8)
있음	27(56.3)
계	48(100.0)

3) 검거경위

가해자의 검거경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자수를 한 경우는 4건으로 8.3%를 나타냈으며, 대다수인 44명(91.7%)은 경찰의 체포로 검거되었다(표 3-16 참조).

표 3-16 문지마 범죄 가해자 검거경위

검거경위	인원(%)
자수	4(8.3)
체포	44(91.7)
계	48(100.0)

4) 범행 후 가해자 행동

가해자가 범행 직후 한 행동을 살펴보면, 직접 자수한 가해자는 1명(2.1%)이며, 사건의 발생을 긴급전화로 알린 경우는 3명(6.3%)이었다. 범행 현장에 그냥 머물러 있던 가해자는 18명(37.5%)이었으며, 범행 후 도주한 가해자는 26명으로

54.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표 3-17 참조).

표 3-17 묻지마 범행 후 가해자 행동

범행후 가해자 행동	인원(%)
자수	1(2.1)
전화신고(119/112 등)	3(6.3)
그냥 현장에 머물	18(37.5)
도주	26(54.2)
계	48(100.0)

5) 혐의사실 인정 여부

다음의 <표 3-18>은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사실을 인정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본 것이다.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한 가해자는 23명(47.9%)이었으며, 일부만 인정한 가해자 역시 23명(47.9%)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한 가해자는 1명(2.1%)이었으며, ‘알수없음’으로 분류된 1명(2.1%)은 현행범으로 검거되었으나, 조현병 음성증상¹²⁾이 매우 심각하게 발현되어 수사과정 내내 수사관과의 대화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였다.

표 3-18 묻지마 범죄 가해자 혐의사실 인정 여부

혐의사실 인정 여부	인원(%)
전부인정	23(47.9)
일부인정	23(47.9)
전부부인	1(2.1)
알수없음	1(2.1)
계	48(100.0)

12) 조현병(정신분열증)은 증상의 성격에 따라 양성증상과 음성증상으로 분류된다. 양성증상은 망상이나 환각 등 존재하지 않아야 할 인자·정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음성증상은 정상적 정신 기능이 소실 혹은 결핍되는 것으로서 정서적 둔마, 무욕증, 무논리, 무반응 등의 증상이 특징적이다.

6) 범행동기

다음의 <표 3-19>는 수사재판기록 상에 나타난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심리적 범행동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범행동기는 검찰에서 제공한 모든 사례의 피의자 신문조사, 피해자·참고인 증언, 공소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친 심리적 기제에 초점을 두어 구분하였다. 그 결과 문지마 범죄의 심리적 동기는 사회에 대한 불만, 자기처지 비판,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 분풀이, 환각·망상, 재미·자기과시·이유없음 6가지로 구분되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범죄의 직접적 동기가 된 경우이다. ‘자기처지 비판’은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부재하며 자기처지에 대해 비판하여, ‘아무나 죽이고 나도 죽자.’ 혹은 ‘아무나 때리고 교도소에 가자.’ 등의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례이다.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은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한 이유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쳐다보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경우이며, 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었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가해자가 상황을 오해석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분풀이’는 가해자가 특정한 사람에게 혹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모르는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이다. ‘환각·망상’은 정신병적 증상이나 본드 흡입 등으로 인한 환각(환청, 환시, 환촉 등) 혹은 망상으로 인해 범행이 일어난 경우이다. 환각이나 망상의 내용은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 포함되는 많은 사례들은 가해자의 현실검증력이 다른 가해자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특징을 지닌다. 범행 동기 분석 시 단순히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를 범행의 동기라고 보지 않았으며, 정신병적 증상이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이성이 상실되고, 환각이나 환상, 망상 등에 의해 지배되어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이 항목에 포함시켰다. ‘재미·자기과시·이유없음’은 쾌락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남성성 혹은 우월성을 폭력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례들이 포함된다. 이유없음에 포함된 사례들은 음주 등으로 인해 자신의 범행동기에 대한 진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나도 모르겠다.”, 혹은 “그냥 때렸다.” 라고 진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범행동기에 대한 분석은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환각이

나 망상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18명(26.5%)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재미·자기과시·이유없음이 17명(25.0%), 분풀이·스트레스 해소가 16명(23.5%)으로 나타났다. 사회불만과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은 각각 6명(8.8%)이었으며, 처지비관은 5명(7.4%)이었다.

표 3-19 묻지마 범행 동기

범행동기(복수응답)	인원(%)
사회 불만	6(8.8)
처지 비관	5(7.4)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	6(8.8)
분풀이, 스트레스 해소	16(23.5)
환각, 망상	18(26.5)
재미, 자기과시, 이유없음	17(25.0)
계	68(100.0)

*백분율은 사례수 기준

7) 범행당시 기분

다음의 <표 3-20>은 범행당시 가해자의 기분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범행 당시 분노를 느낀 가해자가 35명(72.9%)으로 가장 많았다. 초조·불안을 느꼈던 가해자는 9명(18.8%)이며, 우울하였던 가해자는 6명(12.5%)이었다. 범행당시 기분이 양호하였던 가해자는 8명(16.7%)으로 보고되었다.

표 3-20 묻지마 범행 당시 기분

범행당시 기분(복수응답)	인원(%)	계
양호	8(16.7)	48(100.0)
우울	6(12.5)	48(100.0)
분노	35(72.9)	48(100.0)
초조, 불안	9(18.8)	48(100.0)

범행당시 기분(복수응답)	인원(%)	계
혐오	1(2.1)	48(100.0)
공포	2(4.2)	48(100.0)
알수없음	1(2.1)	48(100.0)

*백분율은 응답자수 기준

라. 발달 및 심리사회적 특성

1) 어린 시절 가족환경

다음의 <표 3-21>은 가해자의 어린 시절 가족 환경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이다. 먼저 가해자가 어린 시절, 부모의 존재를 살펴보면, 부모가 둘다 있었던 경우가 22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만 있었던 경우가 9명(18.8%), 부모가 없었던 경우가 8명(16.7%), 아버지만 있었던 경우가 2명(4.2%)을 차지하였다. 자료상 부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7명(14.6%)이었다.

부모의 이혼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경우가 25명(52.1%)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8명(16.7%)이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였던 가해자는 24명(50.0%)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양호하였던 가해자 13명(27.1%)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해자에게 형제가 있었던 경우, 형제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가해자는 18명(37.5%)으로, 형제와 관계가 좋았던 8명(16.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표 3-21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어린시절 가족환경

		인원(%)
부모의 존재	부모없음	8(16.7)
	아버지만 있음(양아버지 포함)	2(4.2)
	어머니만 있음(양어머니 포함)	9(18.8)
	부모 둘다 있음(양부모 포함)	22(45.8)
	알수없음	7(14.6)
계		48(100.0)

		인원(%)
부모의 이혼여부	이혼	8(16.7)
	비이혼	25(52.1)
	해당사항없음(고아 등)	3(6.3)
	알수없음	12(25.0)
계		48(100.0)
부모와의 관계	양호	13(27.1)
	비양호	24(50.0)
	해당사항없음	2(4.2)
	알수없음	9(18.8)
계		48(100.0)
형제와의 관계	양호	8(16.7)
	비양호	18(37.5)
	해당사항없음	6(12.5)
	알수없음	16(33.3)
계		48(100.0)

2)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 경험

다음의 <표 3-22>는 가해자의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경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이다. 과거 혹은 현재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해자는 28명으로 58.3%를 차지하여,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가해자 16명(33.3%)을 훨씬 웃돌았다. 정신과 치료경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과거 혹은 현재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가해자가 26명으로 54.2%를 차지하였으며, 치료 경험이 없는 가해자는 18명으로 37.5%였다.

표 3-22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경험

		인원(%)
정신질환진단경험	없음	16(33.3)
	있음	28(58.3)
	알수없음	4(8.3)
계		48(100.0)
정신과치료경험	없음	18(37.5)
	있음	26(54.2)
	알수없음	4(8.3)
계		48(100.0)

3) 정신과 진단명

다음의 <표 3-23>은 정신과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문지마 범죄 가해자 28명의 진단명을 모두 나열한 결과이다.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가해자는 11명(39.3%)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주요우울장애 4명(14.3%), 알콜중독 3명(10.7%), 양극성장애 2명(7.1%), 인격장애 2명(7.1%)순이었다. 그 외 망상장애, 기타정신증 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약물중독, 병명미상이 각각 1명(3.6%)이었다.

표 3-23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정신과 진단명

정신과 진단명	인원(%)
조현병	11(39.3)
망상장애	1(3.6)
기타정신증장애	1(3.6)
주요우울장애	4(14.3)

정신과 진단명	인원(%)
양극성장애	2(7.1)
불안장애	1(3.6)
적응장애	1(3.6)
회피성인격장애	1(3.6)
반사회적인격장애	1(3.6)
알콜중독	3(10.7)
약물중독	1(3.6)
미상	1(3.6)
계	28(100.0)

4) 정신과 진단명 대분류

다음의 <표 3-24>는 현실검증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가해자들의 진단명을 정신증과 비정신증으로 구분한 결과이다. 정신증에 속하는 정신질환은 조현병, 망상장애, 기타정신증 장애이며, 그 외의 질환은 비정신증에 포함하였다. 진단명이 미상인 사례는 정신질환은 있으나 진단명을 통해 현실검증력의 유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수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정신과 진단을 받지 않은 가해자는 16명(33.3%)이며, 인지적 왜곡이 심하고 현실검증력에 손상이 있는 정신증은 13명(27.1%)이었다. 비정신증은 14명(29.2%)이었다.

표 3-24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정신과 진단명 대분류

정신과 진단명 대분류	인원(%)
없음	16(33.3)
비정신증	14(29.2)
정신증	13(27.1)
알수없음	5(8.3)
계	48(100.0)

5) 하루일과

다음의 <표 3-25>은 가해자들의 하루일과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혼자서 밖을 나돌아 다니며 하루를 보내는 사례가 26명(54.2%), 술이나 마약에 탐닉하는 사례가 25명(52.1%)으로 가장 많았다. 하루 대부분 집안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14명(29.2%), 친구들과 나돌아 다니는 경우가 11명(22.9%), 게임 혹은 도박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8명(16.7%)이었다. 학교나 직장생활 등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가해자는 4명(8.3%)에 불과했다.

표 3-25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하루일과

하루일과(복수응답)	인원(%)	계
규칙적	4(8.3)	48(100.0)
친구들과 쏘다님	11(22.9)	48(100.0)
혼자서 쏘다님	26(54.2)	48(100.0)
집에서 머물(TV 시청, 잠)	14(29.2)	48(100.0)
게임 및 도박	8(16.7)	48(100.0)
술, 마약 탐닉	25(52.1)	48(100.0)
기타	1(2.1)	48(100.0)
알수없음	2(4.2)	48(100.0)

*백분율은 응답자수 기준

6) 인지 · 사고 문제

가해자의 인지 · 사고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망상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가 24명(50.0%)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와해된 사고를 보이는 가해자는 13명(27.1%)이었으며, 환상 11명(22.9%), 환각 10명(20.8%)으로 보고되었다. 인지 · 사고에 문제가 없는 가해자는 15명(31.3%)이었다(표 3-26 참조).

표 3-26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인지/사고 문제

인지/사고 문제(복수응답)	인원(%)	계
문제없음	15(31.3)	48(100.0)
망상	24(50.0)	48(100.0)
환상	11(22.9)	48(100.0)
환각	10(20.8)	48(100.0)
사고와해	13(27.1)	48(100.0)
사고빈곤	5(10.4)	48(100.0)
강박적사고	1(2.1)	48(100.0)
기타(낮은 자존감 등)	6(12.5)	48(100.0)

*백분율은 응답자수 기준

7) 자해/타인 위해 욕구

다음의 <표 3-27>은 범행 이전에 가해자가 자해를 하고자 하는 욕구와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이다. 자해를 한 경험이 있거나, 자해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던 가해자는 13명(27.1%)이었으며, 자해 욕구가 없는 가해자는 29명(60.4%)로 나타났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사고나 욕구를 가지고 있던 가해자는 30명(62.5%)으로, 그러한 욕구가 없는 가해자 15명(31.3%)의 두 배였다.

표 3-27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자해/타인 위해 욕구

		인원(%)
자해욕구	없음	29(60.4)
	있음	13(27.1)
	알수없음	6(12.5)
계		48(100.0)

		인원(%)
타인을 해하려는 욕구	없음	15(31.3)
	있음	30(62.5)
	알수없음	3(6.3)
계		48(100.0)

8) 감정적 문제

다음의 <표 3-28>는 가해자의 감정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이다. 충동성 조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해자는 40명(83.3%)로 가장 많았고, 분노감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가 35명(72.9%), 감정조절능력이 결핍된 가해자가 30명(62.5%)순이었다. 우울감, 좌절감, 죄책감 결여의 문제를 보이는 가해자가 각각 21명(43.8%)이었으며, 불안감을 느끼는 가해자와 타인의 감정인식능력이 결핍된 가해자가 각각 20명(41.7%), 희망없음/무기력감, 감정이입 및 공감능력의 부재를 가지고 있는 가해자가 18명(37.5%)으로 나타났다.

표 3-28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감정적 문제

감정적 문제(복수응답)	인원(%)	계
불안감	20(41.7)	48(100.0)
우울감	21(43.8)	48(100.0)
분노감	35(72.9)	48(100.0)
좌절감	21(43.8)	48(100.0)
감정조절능력 결핍	30(62.5)	48(100.0)
충동성	40(83.3)	48(100.0)
감정이입 및 공감능력 결핍	18(37.5)	48(100.0)
정서적 위축	9(18.8)	48(100.0)

감정적 문제(복수응답)	인원(%)	계
강렬한 정서변화	16(33.3)	48(100.0)
감정표현능력 결핍	8(16.7)	48(100.0)
타인의 감정인식능력 결핍	20(41.7)	48(100.0)
외로움/고립감	14(29.2)	48(100.0)
희망없음/무기력감	18(37.5)	48(100.0)
죄책감결여	21(43.8)	48(100.0)

*백분율은 응답자수 기준

9) 친구관계

가해자의 평소 친구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친구가 없는 가해자가 24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친구가 있는 가해자는 15명(31.3%)이었다. 제공된 자료를 통해서 친구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던 사례는 9명(18.8%)이었다(표 3-29 참조).

표 3-29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평소 친구관계

친구관계	인원(%)
친구없음	24(50.0)
친구있음	15(31.3)
알수없음	9(18.8)
계	48(100.0)

10) 대인관계 문제

다음의 <표 3-30>은 가해자의 대인관계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타인을 잘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성향의 가해자가 31명(64.6%)으로 가장 많았다. 타인에 대해 적대감을 품는 가해자는 24명(50.0%)로 그 다음 순이었다. 반사회적 공격적 성향의 가해자가 23명(47.9%),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 불안감을

느끼는 가해자는 16명(33.3%),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가 15명(31.3%)으로 나타났으며, 친밀감이 결핍되어 있는 가해자는 18명(37.5%)이었다.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가해자는 3명(6.3%)에 불과하였다.

표 3-30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대인관계 문제

대인관계 문제(복수응답)	인원(%)	계
문제없음	3(6.3)	48(100.0)
친밀감결핍	18(37.5)	48(100.0)
타인과의 상호작용 불안감	16(33.3)	48(100.0)
타인에 대한 불신(의심)	31(64.6)	48(100.0)
타인에 대한 적대감	24(50.0)	48(100.0)
사회에 대한 적대감(반감)	15(31.3)	48(100.0)
반사회적 공격적 스타일	23(47.9)	48(100.0)
기타	1(2.1)	48(100.0)

*백분율은 응답자수 기준

2. 문지마 범죄 사건 특성

1) 문지마 범죄 경합/병합 여부

다음의 <표 3-31>는 문지마 범죄 사건의 경합 혹은 병합 여부를 살펴본 결과이다. 경합 혹은 병합이 아닌 범죄인 경우는 47건의 범죄 중 34건으로 72.3%를 차지하였으며, 문지마 범죄 두 건 이상이 경합 혹은 병합된 사건은 8건(17.0%), 문지마 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 혹은 병합된 사건은 5건(10.6%)이었다.

표 3-31 묻지마 범죄 사건 경합/병합 여부

경/병합 여부	건(%)
경/병합 아님	34(72.3)
묻지마범죄 & 다른범죄 경/병합	5(10.6)
묻지마범죄 두건이상 경/병합	8(17.0)
계	47(100.0)

2) 사건 발생 계절/시간

다음의 <표 3-32>은 묻지마 범죄의 발생 계절과 시간에 대해 알아본 결과이다. 2012년도 검찰에 보고된 묻지마 범죄 사건은 여름에 발생한 경우가 19건(40.4%)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봄에 발생한 경우는 10건(21.3%)이었으며, 가을과 겨울이 각각 9건(각 19.1%)이었다.

사건 발생 시간을 살펴보면, 밤 시간대에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17건(36.2%)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오후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 발생한 경우는 각각 8건(17.0%)이었으며, 오전 시간대 발생한 경우 6건(12.8%), 아침 시간대 5건(10.6%), 새벽 시간대 3건(6.4%)으로 조사되었다.

표 3-32 묻지마 범죄 사건 발생 계절/시간

		건(%)
사건발생 계절	봄	10(21.3)
	여름	19(40.4)
	가을	9(19.1)
	겨울	9(19.1)
계		47(100.0)

		건(%)
사건발생 시간	새벽(4:00-06:59)	3(6.4)
	아침(07:00-08:59)	5(10.6)
	오전(09:00-11:59)	6(12.8)
	오후(12:00-17:59)	8(17.0)
	저녁(18:00-19:59)	8(17.0)
	밤(20:00-3:59)	17(36.2)
계		47(100.0)

3) 사건 발생 장소

문지마 범죄 발생 장소에 대해 살펴보면, 사건이 노상에서 발생한 경우가 23건(48.9%)으로 전체 47건의 사건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실내 혹은 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18건(38.3%)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역, 학교, 공원 등 야외의 공공장소가 4건(8.5%),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내가 2건(4.3%)이었다(표 3-33 참조).

표 3-33 문지마 범죄 발생 장소

발생 장소	건(%)
실내 및 주택단지내 (아파트 복도, 계단 등 포함)	18(38.3)
노상	23(48.9)
공공장소 (역, 학교, 공원 등)	4(8.5)
교통수단 (지하철, 버스 등)	2(4.3)
계	47(100.0)

4) 흉기 및 도구

다음의 <표 3-34>는 묻지마범죄에 사용된 흉기 및 도구에 대해 알아본 결과이다. 흉기 혹은 도구가 사용된 경우는 47건 중 40건이며 전체의 85.1%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7건(14.9%)은 특별한 흉기 없이 손, 발 등 신체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이다.

흉기 및 도구의 사전준비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30건(63.8%)이 범행 전 미리 흉기나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를 가지고 흉기 및 도구를 소지하였는지 혹은 늘 가지고 다니던 물건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구분하지 않았다.

흉기 및 도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칼 등 예기를 사용한 경우가 27건(47.4%)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망치, 몽둥이 등 둔기를 사용한 경우는 6건(10.5%)이며, 우산, 막대기 등 가늘고 긴 봉류를 사용한 경우는 5건(8.8%), 돌, 벽 등 자연물을 이용한 경우가 3건(5.3%)이었다. 기타 5건(8.8%)에 속하는 흉기는 비비탄 총, 장난감총, 소주잔, 소주병, 라이터였다. 특별한 흉기 없이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11건(19.3%)이었다. 한 사건에 여러 유형의 도구가 사용된 경우를 고려하여, 흉기 및 도구 유형에 대한 분석은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였다.

표 3-34 묻지마 범죄 흉기 및 도구

		건(%)
흉기/도구 사용여부	없음	7(14.9)
	있음	40(85.1)
계		47(100.0)
흉기/도구 사전준비 여부	없음	10(21.3)
	있음	30(63.8)
	알수없음	7(14.9)
계		47(100.0)

		건(%)
흉기/도구 유형 (복수응답)	신체 사용	11(19.3)
	칼 등 날카로운 것	27(47.4)
	둔기(망치, 몽둥이 등)	6(10.5)
	가늘고 긴 봉류(막대기, 우산)	5(8.8)
	돌, 벽 등 자연물	3(5.3)
	기타 (비비탄총, 소주병, 라이터 등)	5(8.8)
계		57(100.0)

3. 문지마 범죄 피해자 특성

1) 피해자 수

다음의 <표 3-35>은 문지마 범죄 한 건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경합 혹은 병합된 사건과 단독사건을 비교분석한 결과이다. 단독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명인 경우가 22건으로 64.7%를 차지하였으며, 2명이상 5명이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가 9건(26.5%)이었다. 6명이상 10명이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는 1건(2.9%)이며, 피해자가 0명인 경우는 2건(5.9%)이었다. 문지마 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병)합된 사례 5건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1명인 경우가 2건(40.0%)이며 피해자가 2명이상 5명이하인 경우는 3건(60.0%)이었다. 문지마 범죄가 다수건 경(병)합된 경우, 피해자의 수가 2명이상 5명이하인 사건은 5건(62.5%)이며, 6명이상 10명이하가 2건(25.0%), 11명 이상이 1건(12.5%)이었다.

표 3-35 묻지마 범죄 피해자 경(병)합 사건 비교분석

피해자수	단독사건	묻지마+다른범죄	인원(%)
			묻지마범죄 경(병)합
0명	2(5.9)	0(0.0)	0(0.0)
1명	22(64.7)	2(40.0)	0(0.0)
2-5명	9(26.5)	3(60.0)	5(62.5)
6-10명	1(2.9)	0(0.0)	2(25.0)
11명 이상	0(0.0)	0(0.0)	1(12.5)
계	34(100.0)	5(100.0)	8(100.0)

2) 피해자 성별

묻지마 범죄 사건 피해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가 49명(53.3%), 여자인 경우가 43명(46.7%)으로 보고되었다. 모든 피해자의 정보를 조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수인 사례는 5명의 피해자까지만 분석에 포함하였다(표 3-36 참조).

표 3-36 묻지마 범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성별	인원(%)
남	49(53.3)
여	43(46.7)
계	92(100.0)

3) 피해자 나이

다음의 <표 3-37>은 피해자의 나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피해자의 나이 역시 5명의 피해자까지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20대인 피해자는 19명(20.7%), 40대인

피해자는 18명(19.6%), 30대인 피해자와 50대인 피해자는 각각 15명(16.3%)으로 조사되었고, 10대인 피해자는 13명(14.1%)이었다.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연령이 30대와 40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던 점과 비교하면, 피해자의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11세였으며, 가장 나이가 많은 피해자는 85세였다.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39.09세(SD: 17.488)였다.

표 3-37 문지마 범죄 피해자 나이

피해자 나이	인원(%)
10대	13(14.1)
20대	19(20.7)
30대	15(16.3)
40대	18(19.6)
50대	15(16.3)
60대 이상	11(11.9)
알수없음	1(1.1)
계	92(100.0)

4) 피해자 상처 특성

다음의 <표 3-38>는 피해자의 상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이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례는 5명의 피해자까지만 조사하였다. 우선 피해자의 상처부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22명(23.9%)으로 가장 많았으며, 팔다리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 16명(17.4%), 얼굴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 15명(16.3%), 몸통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 12명(13.0%) 순이었다. 신체 피해 없이, 정신적 피해 혹은 재물 피해만 받은 피해자는 13명(14.1%)이었다.

피해자의 상처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1개 상해를 입은 경우가 34명(3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러 곳에 여러개 상해를 입은 경우는 29명(31.5%), 한 곳에

여러개 상해를 입은 경우는 16명(17.4%)이었다.

피해자의 신체피해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가 전치 2주이상 6주미만의 상처를 입은 경우가 38명(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치 6주 이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16명(17.4%)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신체 피해는 있으나 병원진단서가 기록에 첨부되지 않아 상해정도를 알 수 없는 피해자는 15명(16.3%)이었다. 전치 2주 미만의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경우는 8명(8.7%)이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2건으로 2.2%를 차지하였다.

표 3-38 묻지마 범죄 피해자 상처 특성

		인원(%)
상처부위	몸통	12(13.0)
	목	5(5.4)
	얼굴	15(16.3)
	머리	9(9.8)
	팔다리	16(17.4)
	여러부위	22(23.9)
	해당사항없음 (정신적 피해, 재물 피해)	13(14.1)
계		92(100.0)
상처유형	1개 상해	34(37.0)
	한곳에 여러개 상해	16(17.4)
	여러곳에 여러개 상해	29(31.5)
	해당사항없음 (정신적 피해, 재물 피해)	13(14.1)
계		92(100.0)

		인원(%)
신체피해정도	전치2주미만	8(8.7)
	전치2주이상 6주미만	38(41.3)
	전치6주이상	16(17.4)
	사망	2(2.2)
	신체피해는 있으나 알수없음	15(16.3)
	해당사항없음 (정신적 피해, 재물 피해)	13(14.1)
계		92(100.0)

4. 결과 요약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으로는 먼저, 평균 연령은 약 39세였고 30대와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해자의 성별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자였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 주거지역으로는 서울/경기 등의 수도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주거 및 거주 형태도 취약하여 고정된 주거가 없는 사람이 20% 정도로 5명 중 1명을 차지하였고, 가해자의 절반은 동거인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 직업 유무를 살펴보면 범행당시 직업이 없던 경우가 전체의 75%를 차지하였고, 직업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종사자들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소득이 전혀 없는 가해자가 7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득이 있는 경우도 모두 100만원 혹은 200만원 미만이었다.

묻지마 범죄자의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며 혼인상태로는 미혼인 가해자가 75%로 대부분이었다. 병역 관계는 병역 필자와 미필자의 비율이 비슷하였고 미필 사유로는 학력 미달, 정신병 진단, 생활고 등으로 조사되었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범죄력 관련 특성을 보면, 먼저 전체의 75%가 전과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전과수는 6건이었고, 최대 전과수는 27건이었다. 전과 경력이 있는 가해자들(36명) 중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종류를 살펴보면, 33명(92%)이 폭력, 상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율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였다. 이 밖에 음주운전/무면허/도로교통법위반이 전체 36명 중 18명(50%)으로 다음을 차지하였고, 사기/횡령, 절도, 재물손괴 순으로 나타났다. 묻지마 범죄 가해자 중 35명(73%)은 대인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35명 중 판결기록이 포함되지 않았던 13명(37.1%)을 제외하고 15명(43%)은 과거에 묻지마 범죄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본 범 이외에 10건 이상의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4명으로, 각각 10건, 11건, 12건, 18건의 묻지마 범죄 전력을 지니고 있었다. 기록조사상으로 파악이 가능한 과거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분 내용은 벌금형이 9명, 구금형이 5명으로 벌금형이 높다. 과거 묻지마 범죄로 구금형을 받은 가해자들은 모두 이전에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벌금형을 받은 가해자에 비해 범죄력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묻지마 범죄의 범행특성을 보면, 살인과 상해가 전체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범행당시 음주/약물/본드를 사용한 가해자는 전체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범행동기는 복수응답을 전제로 할 때, 환각이나 망상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26.5%로 가장 많았으며, 재미나 자기과시, 이유없음에 다음으로 25.0%, 분풀이 및 스트레스 해소가 23.5%, 사회 불만과 상대방의 의도 오해석은 각각 8.8%를 차지하였다. 범행당시 기분을 보면, 분노의 감정을 느낀 가해자가 전체 48명 중 35명(72.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초조·불안이 9명(18.8%), 우울감이 6명(12.5%)이었으며, 기분이 양호했다는 사람은 8명(16.7%)에 지나지 않았다.

묻지마 범죄자의 발달사적 특성을 보면 어린시절 부모의 존재는 자료상 부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14.6%), 부모가 둘 다 있었던 경우는 45.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어머니만 있었던 경우가 약 18.8%, 부모가 없었던 경우가 약 16.7%였고, 아버지만 있었던 경우도 약 4%를 차지하였다. 부모와의 관계는 자료상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18.8%), 부모와의 관계가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해자가 24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하였으

며, 형제가 있었던 사람의 경우도 그 관계가 양호하지 좋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해자가 약 37.5%로,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6.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경험을 조사하였을 때, 과거 혹은 현재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해자는 28명으로 58.3%를 차지하여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경험이 없는 가해자 16명(33.3%)을 훨씬 웃돌았으며, 과거 혹은 현재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가해자는 26명으로 54.2%를 차지하여, 치료 경험이 없는 가해자 37.5%보다 높았다. 정신과 진단을 받은 문지마 범죄 가해자 29명의 정신과 진단명을 보면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가해자가 11명(39.3%)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주요우울장애(14.3%), 알콜중독, 양극성장애, 인격장애 순이었다. 현실검증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가해자들의 진단명을 정신증과 비정신증으로 구분할 때, 정신증에 속하는 조현병, 망상장애, 기타 정신증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은 13명으로 27.1%에 해당하였고, 비정신증은 14명으로 29.2%에 해당하였다.

문지마 범죄 가해자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혼자서 밖을 나돌아 다니며 하루를 보내는 사례가 26명으로 전체 48명 중 54.2%, 술이나 마약에 탐닉하는 사례가 25명(52.1%)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하루 대부분 집안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14명(29.2%), 친구들과 나돌아 다니는 경우가 11명(22.9%), 게임 혹은 도박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8명(16.7%)이었고, 학교나 직장생활 등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가해자는 4명(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인지 및 사고 문제 역시 심각하여 망상과 와해된 사고, 환상, 환각 등 인지 및 사고영역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으며, 문제없음은 전체 중 15명(31.3%)에 불과하였다. 자해/타해 위해 욕구가 있었다고 보고한 사람은 30명(62.5%)으로 그러한 욕구가 없는 가해자 15명(31.3%)의 두 배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감정적 문제로는 충동성 조절에 문제가 있는 가해자는 40명(83.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분노감, 감정조절능력의 결핍 등 역시 30명 이상이 보고할 정도로 비율이 높았다. 이 밖에도 우울감, 좌절감, 죄책감 결여의 문제나 무기력감, 공감능력의 부재도 높은 비율로 보고되었다. 대인관계 문제에서는 친구가 없다고 파악되는 가해자가 50%정도로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가해자의 대인

관계 성향으로는 타인에 대한 불신(의심)을 품고 있는 가해자가 31명(64.6%), 타인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있는 가해자가 24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반사회적 공격적 스타일, 친밀감 결핍, 타인과의 상호작용 불안감, 사회에 대한 반감 등이 뒤를 이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해자는 3명(6.3%)에 불과하였다.

제3절 묻지마 범죄자의 세부 유형

1. 연구 방법

여기에서는 국내 묻지마 범죄자들의 수사재판기록 조사를 통해 파악된 묻지마 범죄자들의 범행 특성 및 사회인구학적 배경, 심리사회적 요인, 피해자 관련 특성 등을 바탕으로 최소 공간 분석(Smallest Space Analysis) 기법을 통해 묻지마 범죄자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궁극적으로 분류된 묻지마 범죄 유형별 범죄자들 간의 차이점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최소 공간 분석(이하 SSA; Lingoes, 1973)은 여러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가상의 통계적 공간에 지역적으로 투사하여 나타내는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Procedures; MDS) 가운데 하나이다. SSA는 여러 변인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특정 공간에서 거리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어떤 두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가 클수록 이들을 나타내는 두 점이 통계적 공간상에서 가깝게 나타난다(Canter & Heritage, 1990). 이와 같이 가상의 지리적 공간 속에서 서로 가까이 나타나는 점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들, 즉 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변인들을 가리키게 되며, 이러한 변인들이 함께 모여 지리적 공간에서 하나의 지역을 형성할 때, 이는 다른 일련의 변인들이 모여 형성하는 지역들과 구분되어 각각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나타난다(김지영·박지선·박현호, 2009; 박지선·서윤정, 2010).

이처럼 최소 공간 분석 기법은 유형 분류에 있어 그 결과를 가상의 공간 상에서 시각적으로 명료히 드러내주기 때문에, 범죄자의 범행 수법 및 특성 변인들

에 기초한 범죄자 유형 분류에 있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연구에 사용되어 왔다. 우선, 국내에서는 살인(고선영·이수정, 2011), 성범죄(김지영 외, 2009), 아동 대상 성범죄(김지선·박지선·최수형, 2009), 방화(김경옥·이수정, 2009), 강도(박지선·최낙범, 2010a), 절도(박지선·최낙범, 2010b) 등 다양한 범죄 종류에 걸쳐서, 주로 범행 수법을 바탕으로 범죄자들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최소 공간 분석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영국 리버풀 대학(University of Liverpool)의 범죄수사 심리학 센터(Centre for Investigative Psychology)를 중심으로, 영국(Alison & Stein, 2001; Canter, Hughes, & Kirby, 1998), 호주(Canter & Fritzon, 1998), 미국(Bateman & Salfati, 2007), 핀란드(Santtila, Junkkila, & Sandnabba, 2005) 등 다양한 나라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그 유형을 분류하는 데에 사용되어 왔다.

최소 공간 분석에서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가 가상의 통계적 공간 안에서 얼마나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는지에 관한 척도는 적합도 계수(혹은 소위 계수: Coefficient of Alienation)로 표시된다(Amar, 2005). 이 계수는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이고, 그 값이 0일 때 최상의 적합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적합도 계수가 작을수록, 지리적 표상이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할 때 SSA 기법을 사용한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적합도 계수의 수준은 0-0.2 사이이다(김지영·박지선·박현호, 2009; Alison & Stein, 2001; Canter, Bennell, Alison & Reddy, 2003; Canter & Heritage, 1990).

또한, 서로 같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 즉 상관이 높은 변인들이 함께 모여 가상의 지리적 공간에서 하나의 지역을 형성하고, 이와 동시에 다른 일련의 변인들이 함께 모여 형성하는 지역들과 구분되어 각각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나타날 때, 이러한 변인들의 분류 정도는 지역성 계수(Regionality coefficient)로 표시된다(Amar, 2005). 지역성 계수의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이고, 적합도 계수와는 반대로 그 값이 1일 때 여러 변인들이 각각의 유형으로 가장 명확하게 분류되었다고 볼 수 있다(Amar, 2005).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문지마 범죄자들의 제반 특성을 바탕으로 국내 문지마 범죄자들의 유형을 분류한 뒤, 문지마 범죄자들의 유형별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스라엘 소재 히브루 대학의 HUDAP(Hebrew University Data Analysis Packag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최소 공간 분석(SSA)을 실시하였다(고선영·이수정, 2011; 김지선 외, 2009; 김지영 외, 2009; 박지선·최낙범, 2010a).

묻지마 범죄자들의 범행 특성 및 사회인구학적 배경, 심리사회적 요인, 피해자 관련 특성 등 제반 변인들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SSA 분석에 포함될 변인들을 선별하였다. 첫째, 최소 공간 분석(SSA)은 기본적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에 기초한 분석이므로, 발생 빈도가 너무 낮거나(10% 이하) 너무 높은 변인들(60% 이상)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하나의 항목(예: 계절) 아래 여러 범주들(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등)로 묶인 변인들의 경우, 범주들의 관계가 상호배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역시 상관 관계에 기초한 최소 공간 분석(SSA)에 적절치 않다. 따라서, 여러 범주 가운데 그 빈도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하나의 범주(예: 여름)만을 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단, 하나의 항목(예: 인지/사고 문제) 아래 여러 범주들(예: 망상, 환상, 환각, 사고 와해 등)로 묶인 경우일지라도, 수사재판기록 조사 시 상호 배타적이 아닌 중복체크가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여러 범주들일지라도 모두 분석에 사용하였다(예: 망상, 환상, 환각, 사고와해 등). 이러한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 32개의 변인이 선별되어 최소 공간 분석(SSA)에 사용되었다(표 3-39 참조).

표 3-39 묻지마 범죄자 유형 SSA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 (N=48)

묻지마 범죄 특성	공간 도표상 변인	빈도	%
묻지마 범죄와 다른 범죄 경합	other	5	10.4
범행 장소 - 노상	street	24	50.0
범행 계절 - 여름	summer	19	39.6
범행 당시 음주 혹은 약물(본드) 사용	alcdrug	27	56.2
범행 동기 - 사회 불만	socdis	6	12.5
범행 동기 - 처지 비관	selfdis	5	10.4
범행 동기 - 오해석	misund	6	12.5

물지마 범죄 특성	공간 도표상 변인	빈도	%
범행 동기 - 분풀이	vent	16	33.3
범행 동기 - 주폭 혹은 상습 폭력	violen	18	37.5
범행 동기 - 약물 혹은 정신병	drugment	18	37.5
범행 동기 - 재미 혹은 이유 없음	noreas	16	33.3
범행 당시 기분 - 우울	depres	6	12.5
범행 당시 기분 - 초조 혹은 불안	anxiety	9	18.8
범행 후 가해자 행동 - 그냥 현장에 머물	stay	18	37.5
어린 시절 부모의 존재 - 부모 없음	noparet	8	16.7
부모 이혼	parentdiv	8	16.7
부모와의 관계 - 비양호	parrelat	24	50.0
형제와의 관계 - 비양호	sibrelat	18	37.5
범행 시 신체건강 상태 - 비양호	health	10	20.8
신체 병력 있음	boduhis	10	20.8
정신 병력 있음	menthis	28	58.3
정신과 치료 경험 있음	therap	26	54.2
하루 일과 - 혼자서 쓰다님	walkalo	26	54.2
하루 일과 - 집에서 머물 (TV 시청, 잠)	home	14	29.2
하루 일과 - 술, 마약 등 탐닉	indulg	25	52.1
인지/사고 문제 - 망상	delus	24	50.0
인지/사고 문제 - 환상	illus	11	22.9
인지/사고 문제 - 환각	hallu	10	20.8
인지/사고 문제 - 사고 왜해	disthink	13	27.1
자살 욕구 있음	suidic	13	27.1
대인 관계 기능 - 친밀감 결핍	nointim	18	37.5
대인 관계 기능 - 사회에 대한 적대감	sochost	15	31.2

2. 묻지마 범죄자 유형 분류

우선 최소 공간 분석(SSA) 기법을 통하여, 묻지마 범죄자 관련 여러 제반 변인들(〈표 3-39〉 참조) 간의 상관 관계를 가상의 3차원 지리적 공간 도표(space diagram)상에 거리로 나타내었다(〈그림 3-1〉 참조). 적합도 계수는 0.17309로 나타났다는데, 이를 통해 이 3차원의 지리적 표상이 여러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Alison & Stein, 2001; Canter & Heritage, 1990).



그림 3-1 묻지마 범죄자 특성 SSA 분석 결과

〈그림 3-1〉에 나타나 있는 각각의 점들은 묻지마 범죄자와 관련된 제반 변인들을 나타낸다. 이 지리적 공간에서 서로 가깝게 위치한 두 변인은 서로 멀리

위치한 다른 변인들에 비해 실제로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변인들끼리 모여 형성한 하나의 지역은, 다른 변인들이 모여 형성한 지역들과는 구별되는 하나의 문지마 범죄 유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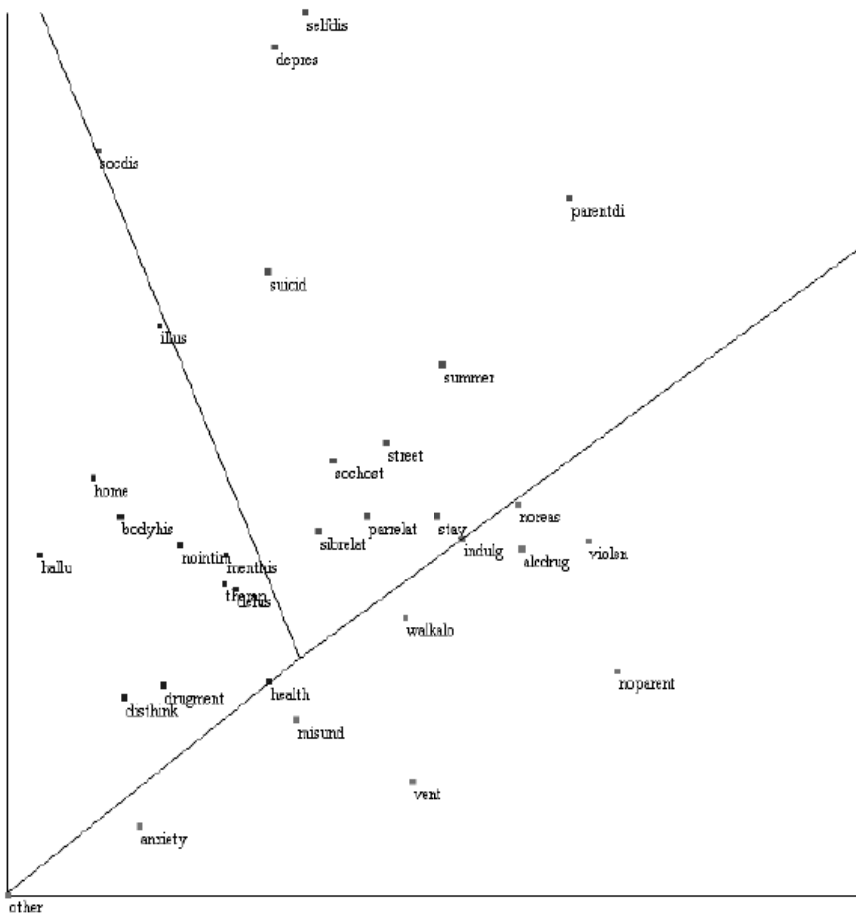


그림 3-2 문지마 범죄자 유형 분류

〈그림 3-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문지마 범죄자의 특성은 지리적 공간 상에서 크게 3가지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총 3가지의 문지마 범죄 유형(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으로 분류되었다. 분석 결과, 변인들의 분류 정

도를 나타내는 지역성 계수(Regionality coefficient)가 1.0으로 나타나, 여러 변인들이 각각의 유형으로 완벽하게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Amar, 2005).

표 3-40 묻지마 범죄 유형별 특성 (N=48)

유형	묻지마 범죄 특성	공간 도표상 변인	Facet number
현실 불만형	범행 동기 - 사회 불만	socdis	1
	범행 동기 - 처지 비관	selfdis	1
	범행 장소 - 노상	street	1
	범행 계절 - 여름	summer	1
	범행 당시 기분 - 우울	depres	1
	범행 후 가해자 행동 - 그냥 현장에 머물	stay	1
	부모 이혼	parentdiv	1
	부모와의 관계 - 비양호	parrelat	1
	형제와의 관계 - 비양호	sibrelat	1
	자살 욕구 있음	suidic	1
	대인 관계 기능 - 사회에 대한 적대감	sochost	1
정신 장애형	범행 동기 - 약물 혹은 정신병	drugment	2
	범행 시 신체건강 상태 - 비양호	health	2
	신체 병력 있음	boduhis	2
	정신 병력 있음	menthis	2
	정신과 치료 경험 있음	therap	2
	하루 일과 - 집에서 머물 (TV 시청, 잠)	home	2
	인지/사고 문제 - 망상	delus	2
	인지/사고 문제 - 환상	illus	2
	인지/사고 문제 - 환각	hallu	2
	인지/사고 문제 - 사고 왜해	disthink	2
	대인 관계 기능 - 친밀감 결핍	nointim	2
만성 분노형	범행 동기 - 오해석	misund	3
	범행 동기 - 분풀이	vent	3

유형	문지마 범죄 특성	공간 도표상 변인	Facet number
	범행 동기 - 주폭 혹은 상습 폭력	violen	3
	범행 동기 - 재미 혹은 이유 없음	noreas	3
	문지마 범죄와 다른 범죄 경합	other	3
	범행 당시 음주 혹은 약물(본드) 사용	alcdrug	3
	범행 당시 기분 - 초조 혹은 불안	anxiety	3
	어린 시절 부모의 존재 - 부모 없음	noparet	3
	하루 일과 - 혼자서 쏘다님	walkalo	3
	하루 일과 - 술, 마약 등 탐닉	indulg	3

가. 현실 불만형

현실 불만형으로 분류된 변인들은 〈그림 3-3〉의 공간 도표 상의 상단중앙에 위치해 있다. 이 유형의 범죄자들의 경우, 주로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여 문지마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이 유형과 관련된 범행 특성으로는(〈표 3-40〉 참조), 범행 당시 우울한 기분을 느끼며 평소에도 사회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주로 여름에 노상에서 문지마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현실 불만형’ 범죄자들의 경우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경우가 많고, 부모 및 형제와의 관계가 양호하지 못하며, 평소 자신을 해하려는 사고나 환상이 있는 등 자살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현실 불만형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57세 남성이며 무직인 가해자 A는 2012년 10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지나가던 피해자(여, 40세)의 몸통과 팔다리를 수회 찔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혀 경찰에 검거되었다. 가해자는 평소 자신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처분을 받는 등, 사회가 도와주지 않고 짓누른다는 생각에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어머니의 투병을 지켜보면서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던 중, 어머니가 4년간의 투병 생활을 한 끝에 2012년 세상을 떠

자,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어머니의 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범행 당시 가해자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해 몽롱한 상태에서, 아무나 찔러 자신의 불만을 표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의 배경 특성을 살펴보면, 홀어머니와 단 둘이 의지하며 살았으며 누나들은 있지만 돈독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일용직을 전전하였으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과 이혼하였다. 평소 집에서 특정한 활동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집 인근을 산책하는 등 혼자서 시간을 보낸다. 사기, 절도, 음주운전, 병역법 위반 등의 전과가 7회 있으며, 대인범죄 전력은 없다.

나. 정신 장애형

정신 장애형으로 분류된 변인은 〈그림 3-3〉의 공간 도표 상에서 좌측에 위치해 있다. 이 유형의 범죄자들의 경우, 주로 조현병 등 정신 장애가 있거나, 마약이나 본드 등의 환각 물질 흡입으로 인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표 3-40〉 참조). 이 유형의 범죄자들은 주로 신체 및 정신 병력이 있으며,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대인 관계 기능 수준으로 보면 친밀감이 결핍된 경우가 많고, 인지 및 지각, 사고 기능과 관련해서 망상이나 환상, 환각, 와해된 사고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범행 당시 신체 건강 상태도 양호하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하루 일과를 주로 TV를 시청하거나 자는 등 집에서 특정한 활동 없이 시간을 보낸다. 이와 같은 정신 장애형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3세 남성인 가해자 B는 목사들을 죽여야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던 중, 2012년 10월 과도를 구입하여 목사를 죽이기 위해 교회에 들어갔다. 마침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여, 54세)를 보고 목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몸통과 팔을 3회 찔러 전치 4주에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그는 조현병으로 정신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당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가해자 B는 어린 시절 소아기 자폐증으로 발달장애 3급으로 진단받았고, 뇌수막염과 아토피피부염 등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자주 입원하였다. 가해자는 어릴 적 자폐증세로 인해 또래로부터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 만성적인 우울, 불안감을 보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만의 공상 세계에 집착하였다. 사소한 사건이나 평가에도 예민하게 지각하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가해자는 공장을 다니

다가 그만둔 이후, 평소에는 계속 집에서 머물며 게임을 하거나 집 앞을 돌아다니며 혼자 시간을 보냈으며, 종종 그의 어머니와 교회나 헬스, 등산을 다니기도 했다. 가해자는 범행 몇 개월 전부터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아 망상이 구체화되고 심화된 모습을 보였다. 즉, 어머니와 교회 목사들이 교리 등을 통해 자신을 증으로 만들려고 한 다며, 목사들을 살해해야 한다고 망상이 구체화되었다. 범행 당일, 가해자가 환청에 반응하여 “죽여버려. 개XX, 주둥이 쳐 다물어.”라며 소리를 지르자, 가해자의 아버지가 뺨을 때리며 “너 교회 좀 가라.”라고 하였다. 그러자 가해자는 이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목사들을 죽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문지마 범죄를 저지르게 이르렀다.

다. 만성 분노형

만성 분노형으로 분류된 범죄자들은 〈그림 3-3〉의 공간 도표 상 하단에서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범죄자들은(〈표 3-40〉 참조) 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분풀이로 문지마 범죄를 저지르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재미로 문지마 범죄를 저지른다. 또는, 범죄자가 주폭 혹은 상습 폭력범인 경우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 유형의 범죄자들은 범행 당시 주취 상태이거나, 약물이나 본드 등 환각제를 사용한 상태인 경우가 많았다. 범행 당시에는 초조하거나 불안한 기분을 느끼며, 문지마 범죄와 함께 다른 범죄가 경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 유형의 범죄자들은 어린 시절 부모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고, 평소 하루 일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주로 정해진 일과 없이 혼자서 쓰다 니거나, 술이나 마약 등에 탐닉해 있다. 이와 같은 만성 분노형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44세 남성인 가해자 C는 2012년 8월, 공원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남, 71세)를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에 상처를 입혔다. 이 외에도 가해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자신을 쳐다봤다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2012년 상해, 폭력, 재물손괴 등 4건의 범행으로 기소되었다.

그의 배경 특성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고아원 등을 전전하였으며,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퇴를 하였고, 형제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는 노숙을 하며 구걸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주로 3.15 공원에서 노숙을 하였다. 식사는 포교당, 성당 등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나 장례식장에서 해결하였으며, 다른 노숙자들과 함

깨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냈다. 가해자 C는 강도, 폭력, 상해, 절도 등 17회의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타인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자신을 과시하거나 화풀이를 하기 위해 수시로 불특정 다수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대응하는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행동패턴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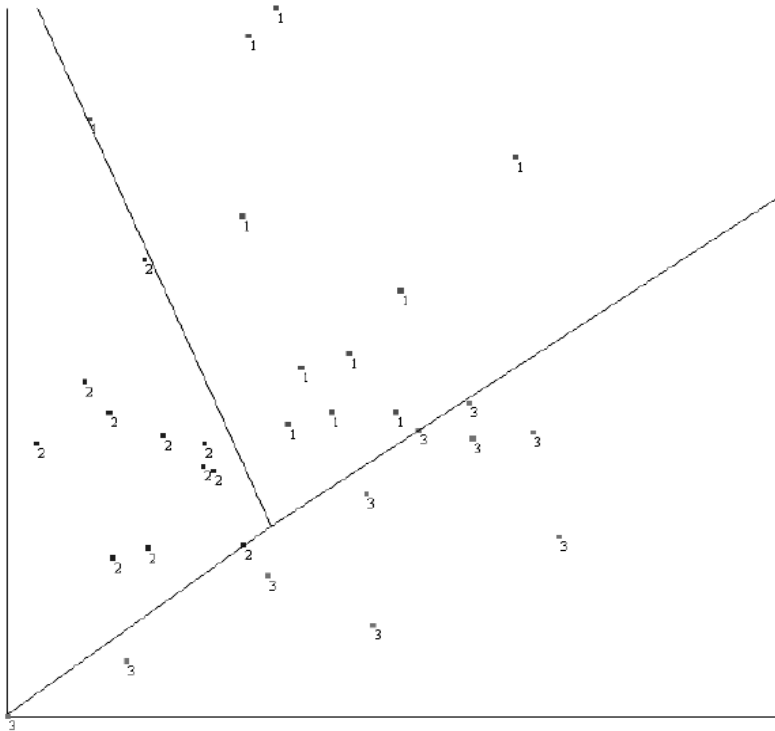


그림 3-3 문지마 범죄자 유형 분류

3.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차이점 분석

앞에서 문지마 범죄자의 특성이 총 3가지의 유형(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총 48명의 문지마 범죄자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의 <표 3-41>과 같다. 즉, 전체 48명 가운데 만성 분노형이 22명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 장애형이 18명으로 전체의 37.5%, 그리고 현실 불만형이 8명(16.7%)로 나타났다(<그

림 3-4〉 참조).

표 3-41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분포

유형	빈도(%)
현실 불만형	8(16.7)
정신 장애형	18(37.5)
만성 분노형	22(45.8)
전체	4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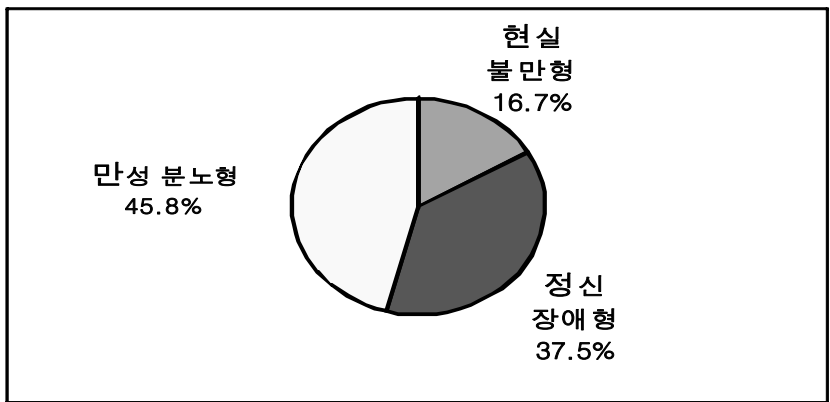


그림 3-4 문지마 범죄자 유형 분포 (N=48)

이후, 세 가지 유형(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간 범죄자들의 차이점을 범죄자 특성 및 범행 특성, 대인관계 특성 및 피해자 특성 등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가. 범죄자 특성

1) 학력

우선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최종학력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표 3-42 참조). 그 결과, 현실 불만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62.5%), 정신 장애형의 경우는 최종 학력의 분포가 여러 범주에 걸쳐 고르게 되어 있었고, 만성 분노형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인 범죄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40.9%). 즉, 다른 유형의 문지마 범죄자들에 비해 만성 분노형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2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최종학력

단위: 명(%)

구 분	범죄 유형			(df) χ^2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무학	0(0.0)	1(5.6)	1(4.5)	(df=10) 19.458*
초졸	0(0.0)	5(27.8)	4(18.2)	
중졸	3(37.5)	1(5.6)	9(40.9)	
고졸	5(62.5)	5(27.8)	8(36.4)	
대재/대졸	0(0.0)	5(27.8)	0(0.0)	
알 수 없음	0(0.0)	1(5.6)	0(0.0)	
전 체	8(100.0)	18(100.0)	22(100.0)	

* $p < .05$

2) 월수입

다음으로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평균 월수입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3-43 참조). 그 결과, 만성 분노형 범죄자들의 월수입이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신 장애형의 경우에는 만성 분노형 범죄자들의 평균에 십분의 일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월수입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3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월수입(만원)

구 분		전체	범죄행동유형			F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월수입	평균	25.23	18.75	4.72	45.29	3.542*

* $p < .05$

3) 정신과 진단명(대분류)

다음으로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정신과 진단명(대분류)에서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3-44 참조). 그 결과, 정신 장애형의 경우 대부분(70.6%)이 정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현실 불만형과 만성 분노형의 경우 정신증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은 아예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4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정신과 진단명(대분류)

구 분		범죄 유형			(df) χ^2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없음		4(50.0)	2(11.8)	11(57.9)	(df=4) 23.171***
비정신증		4(50.0)	3(17.6)	7(36.8)	
정신증		0(0.0)	12(70.6)	1(5.3)	
전 체		8(100.0)	17(100.0)	19(100.0)	

*** $p = .00$

4) 정신과 진단명(소분류)

이번에는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정신과 진단명(소분류)에서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3-45 참조). 그 결과, 정신 장애형의 경우 대부분(62.5%)이 조현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망상 장애, 양극성 장애, 약물 중독과 알콜 중독, 기타 등이 있었다. 반면 현실 불만형의 경우 우울증과 적응 장애, 회피성 인격 장애로 진단 받은 범죄자들이 소수 존재했고, 만성 분노형의 범죄자들은 우울증과 알콜 중독, 조현병, 불안 장애, 반사회적 인격 장애, 양극성 장애

등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진단명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3-45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정신과 진단명

단위: 명(%)

구 분	범죄 유형			(df) χ^2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정신분열증(조현병)	0(0.0)	10(62.5)	1(12.5)	(df=22) 34.602*
망상 장애	0(0.0)	1(6.2)	0(0.0)	
알콜 중독	0(0.0)	1(6.2)	2(25.0)	
약물 중독	0(0.0)	1(6.2)	0(0.0)	
우울증	2(50.0)	0(0.0)	2(25.0)	
불안 장애	0(0.0)	0(0.0)	1(12.5)	
적응 장애	1(25.0)	0(0.0)	0(0.0)	
회피성 인격장애	1(25.0)	0(0.0)	0(0.0)	
반사회적 인격장애	0(0.0)	0(0.0)	1(12.5)	
양극성 장애	0(0.0)	1(6.2)	1(12.5)	
기타 정신증 장애	0(0.0)	1(6.2)	0(0.0)	
미상	0(0.0)	1(6.2)	0(0.0)	
전 체	4(100.0)	16(100.0)	8(100.0)	

* $p < .05$

5) 전과 유무

다음으로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범죄자의 전과 유무를 살펴보았다(표 3-46 참조). 그 결과, 만성 분노형의 범죄자들은 거의 모두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90.9%). 반면, 정신 장애형의 경우 약 3분의 2정도(66.7%)가 전과가 있었고, 현실 불만형의 경우는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반(5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6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전과 유무

단위: 명(%)

구 분		범죄 유형			(df) χ^2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전과유무	없음	4(50.0)	6(33.3)	2(9.1)	(df=2) 6.303*
	있음	4(50.0)	12(66.7)	20(90.9)	
전 체		8(100.0)	18(100.0)	22(100.0)	

* $p < .05$

6) 대인 범죄 전력

다음의 <표 3-47>은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로 대인 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만성 분노형의 범죄자들은 거의 모두 대인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90.9%). 반면, 정신 장애형의 경우 약 3분의 2 정도(66.7%)가 대인 범죄 전력이 있었고, 현실 불만형의 경우는 대인 범죄 전력이 있는 범죄자가 소수(3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7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대인 범죄 전력

단위: 명(%)

구 분		범죄 유형			(df) χ^2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대인범죄 전력	없음	5(62.5)	6(33.3)	2(9.1)	(df=2) 9.044*
	있음	3(37.5)	12(66.7)	20(90.9)	
전 체		8(100.0)	18(100.0)	22(100.0)	

* $p < .05$

7) 폭력상해 전과 유무

이번에는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로 폭력/상해 전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3-48 참조). 그 결과, 만성 분노형의 범죄자들은 역시 거의 모두 폭력/상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86.4%). 반면, 정신 장애형의 경우 약 3분의 2정도(66.7%)가 폭력/상해 전과가 있었고, 현실 불만형의 경우는 소수(25.0%)의 범죄자들만이 폭력/상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8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 폭력상해 전과유무

단위: 명(%)

구 분		범죄 유형			$(df) \chi^2$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폭력상해	전과 없음	6(75.0)	6(33.3)	3(13.6)	$(df=2)$ 10.340**
	전과 있음	2(25.0)	12(66.7)	19(86.4)	
전 체		8(100.0)	18(100.0)	22(100.0)	

** $p < .01$

8) 음주운전/무면허/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유무

이번에는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3-49 참조). 그 결과, 만성 분노형이나 현실 불만형 범죄자들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경우가 약 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각각 54.5%, 50.0%). 반면, 정신 장애형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전과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소수(11.1%)의 범죄자들만이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다른 유형의 전과에서는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49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음주운전/무면허/도로교통법위반 전과유무

단위: 명(%)

구 분		범죄 유형			(df) χ^2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음주운전/무면허/도로교통법위반	전과 없음	4(50.0)	16(88.9)	10(45.5)	(df=2) 8.609*
	전과 있음	4(50.0)	2(11.1)	12(54.5)	
전 체		8(100.0)	18(100.0)	22(10.0)	

* $p < .05$

나. 범행 특성

1) 범죄명

문지마 범죄자의 유형별로 본 문지마 범죄 기소 당시 범죄명을 살펴보았다(표 3-50 참조). 하나의 사건에도 여러 범죄명이 존재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가장 중한 범죄명 하나만을 선택하여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실 불만형 범죄자들의 경우 살인 미수인 경우가 반수(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 외 살인예비나 음모, 상해 등의 죄명이 나타났다. 한편 정신 장애형의 경우 살인미수가 38.9%로 가장 많았고, 상해가 27.8%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외에도 살인, 폭행, 방화, 협박/공갈, 재물손괴 등 다양한 죄명이 소수 나타났다. 반면 만성 분노형의 경우, 대다수(72.7%)가 상해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그 외 폭행, 재물손괴, 협박/공갈 등이 소수 존재하였다.

표 3-50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범죄명

단위: 명(%)

구 분	범죄 유형			(df) χ^2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살인	0(0.0)	2(11.1)	0(0.0)	(df=14) 29.318**
살인미수	4(50.0)	7(38.9)	1(4.5)	
살인예비, 음모	2(25.0)	0(0.0)	0(0.0)	
상해	2(25.0)	5(27.8)	16(72.7)	

구 분	범죄 유형			(df) χ^2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폭행	0(0.0)	1(5.6)	2(9.1)	
방화	0(0.0)	1(5.6)	0(0.0)	
협박, 공갈	0(0.0)	1(5.6)	1(4.5)	
재물손괴	0(0.0)	1(5.6)	2(9.1)	
전 체	8(100.0)	18(100.0)	22(100.0)	

** $p < .01$

2) 검찰 구형

다음의 <표 3-51>는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로 검찰 구형의 정도와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우선 현실 불만형과 만성 분노형의 경우에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대다수(각각 71.4%, 7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 장애형의 경우에는 과반수(55.6%)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이 징역형과 치료감호 청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1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 검찰 구형

단위: 명(%)

구 분	범죄 유형			(df) χ^2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징역형	5(71.4)	1(11.1)	12(70.6)	(df=8) 17.272*
징역, 치료감호	1(14.3)	5(55.6)	1(5.9)	
징역, 전자발찌부착	1(14.3)	0(0.0)	0(0.0)	
징역, 치료감호, 전자발찌부착	0(0.0)	1(11.1)	1(5.9)	
알 수 없음	0(0.0)	2(22.2)	3(17.6)	
전 체	7(100.0)	9(100.0)	17(100.0)	

* $p < .05$

3) 범행 당시 신체 사용 여부

다음의 <표 3-52>는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로 범행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신체를 써서 공격했는지의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현실 불만형이나 정신 장애형의 범죄자들은 범행 당시 자신의 신체를 써서 공격했던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0%, 11.1%). 반면, 만성 분노형의 경우는 범행 당시 자신의 신체를 써서 공격한 범죄자 비율이 다른 유형의 문지마 범죄자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0.9%).

표 3-52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흉기 및 도구유형 - 신체사용

단위: 명(%)

구 분		범죄 유형			$(df) \chi^2$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신체사용	없음	8(100.0)	16(88.9)	13(59.1)	$(df=2)$ 7.830*
	있음	0(0.0)	2(11.1)	9(40.9)	
전 체		8(100.0)	18(100.0)	22(100.0)	

* $p < .05$

4) 범행 당시 예기(칼 등 날카로운 것) 사용 여부

다음의 <표 3-53>는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로 범행 당시 흉기로 칼 등 날카로운 것(예기)을 사용했는지의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현실 불만형이나 정신 장애형의 범죄자들은 범행 당시 예기를 사용했던 경우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75%, 72.2%). 반면, 만성 분노형의 경우는 범행 당시 칼 등 날카로운 것(예기)을 사용한 범죄자 비율이 다른 유형의 문지마 범죄자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6.4%).

표 3-53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 흉기 및 도구유형-칼 등 날카로운 것

단위: 명(%)

구 분		범죄 유형			(df) χ^2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칼 등 날카로운 것	없음	2(25.0)	5(27.8)	14(63.6)	(df=2) 6.544*
	있음	6(75.0)	13(72.2)	8(36.4)	
전 체		8(100.0)	18(100.0)	22(100.0)	

* $p < .05$

5)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관계

다음으로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표 3-54 참조). 그 결과, 정신 장애형이나 만성 분노형의 범죄자들은 범행 당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94.6%, 95.1%). 또한, 현실 불만형 역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대다수(78.6%)를 차지하지만, 이외에도 업무상 아는 관계의 사람을 공격하거나(14.3%) 평소 아는 관계의 사람(친구나 이웃 등)을 공격하는 등(7.1%) 다른 유형의 묻지마 범죄자들과는 달리, 아는 사람을 공격하면서 모르는 사람까지 해를 미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표 3-54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단위: 명(%)

구 분	범죄 유형			(df) χ^2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포함)	0(0.0)	1(2.7)	0(0.0)	(df=8) 17.988*
평소 아는 관계(친구, 이웃)	1(7.1)	1(2.7)	0(0.0)	
업무상 아는 관계	2(14.3)	0(0.0)	0(0.0)	
모르는 사람	11(78.6)	35(94.6)	39(95.1)	
기타(경찰관)	0(0.0)	0(0.0)	2(4.9)	
전 체	14(100.0)	37(100.0)	41(100.0%)	

* $p < .05$

다. 대인 관계 및 사고 특성

1) 평소 친구 관계

우선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로 평소 친구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3-55 참조). 그 결과, 정신 장애형 범죄자들의 경우 미상인 경우(38.9%)를 제외하고는 모두 친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현실 불만형 및 만성 분노형의 경우, 친구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모두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5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 평소 친구 관계

단위: 명(%)

구 분	범죄 유형			(df) χ^2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친구 없음	3(37.5)	11(61.1)	10(45.5)	(df=4) 16.213**
친구 있음	4(50.0)	0(0.0)	11(50.0)	
알 수 없음	1(12.5)	7(38.9)	1(4.5)	
전 체	8(100.0)	18(100.0)	22(100.0)	

** $p < .01$

2) 스트레스 대처 방식

다음의 <표 3-56>은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로 평소 대표적인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우선 현실 불만형의 경우에는 게임 및 도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50.0%), 두 번째가 음주 및 약물 복용(37.5%)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없다는 대답이 12.5%로, 세 번째로 많았다. 한편, 정신 장애형의 경우에는 반(50.0%)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이 음주 및 약물 복용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대답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없다는 응답이 22.2%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만성 분노형의 경우에는 절대 다수(90.9%, 미상을 제외하면 100%)의 범죄자가 음주 및 약물 복용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6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스트레스 대처 방식

단위: 명(%)

구 분	범죄 유형			(df) χ^2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없음	1(12.5)	4(22.2)	0(0.0)	(df=8) 32.676***
건전한 여가활동(독서, 등산 등)	0(0.0)	1(5.6)	0(0.0)	
게임 및 도박	4(50.0)	0(0.0)	0(0.0)	
음주 및 약물 복용	3(37.5)	9(50.0)	20(90.9)	
알 수 없음	0(0.0)	4(22.2)	2(9.1)	
전 체	8(100.0)	18(100.0)	22(100.0)	

*** $p = .00$

3) 타인을 해하려는 사고나 환상

다음의 <표 3-57>은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로 평소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사고나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의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정신 장애형의 범죄자들은 절대 다수가 타인을 해하려는 사고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8.9%, 미상을 제외하면 100%). 또한, 현실 불만형의 경우에도 상당수(62.5%)의 범죄자들이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사고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0.9%). 반면, 만성 분노형의 경우에는 타인을 해하려는 사고나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4.5%).

표 3-57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타인을 해하려는 사고 욕구

단위: 명(%)

구 분	범죄 유형			(df) χ^2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없음	3(37.5)	0(0.0)	12(54.5)	(df=4) 14.475**
있음	5(62.5)	16(88.9)	9(40.9)	
알 수 없음	0(0.0)	2(11.1)	1(4.5)	
전 체	8(100.0)	18(100.0)	22(100.0)	

** $p < .01$

라. 피해자 특성

1) 피해자 나이

우선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에 있어서의 유형별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실 불만형의 경우 피해자 연령대가 10대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42.9%), 두 번째가 30대(28.6%), 그 다음으로 40대와 50대(각각 14.3%)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 장애형의 경우, 40대가 24.3%, 50대가 21.6%, 30대가 18.9%를 차지하는 등 피해자의 연령대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었다. 이 외에도 70대가 10.8%, 10대와 20대, 6대가 각각 8.1%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만성 분노형의 경우, 20대가 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17.5%, 50대가 12.5%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8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피해자 나이

단위: 명(%)

구 분	범죄 유형			(d) χ^2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10대	6(42.9)	3(8.1)	4(10.0)	(d=12) 29.761**
20대	0(0.0)	3(8.1)	16(40.0)	
30대	4(28.6)	7(18.9)	4(10.0)	
40대	2(14.3)	9(24.3)	7(17.5)	
50대	2(14.3)	8(21.6)	5(12.5)	
60대	0(0.0)	3(8.1)	2(5.0)	
70대	0(0.0)	4(10.8)	2(5.0)	
전 체	14(100.0)	37(100.0)	40(100.0)	

** $p < .01$

이번에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에 있어서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신 장애형의 경우 피해자 나이 평균이 약 45.6세로 가장 많았고, 만성 분노형의 경우 약 37.1세, 현실 불만형은 약 27.4세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59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 피해자 나이 평균

구 분	전체	범죄행동유형			F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피해자 나이 평균	39.09	27.36	45.62	37.15	6.740**

** $p < .01$

2) 피해자 상처 유형

다음의 <표 3-60>은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현실 불만형의 범죄자들은 피해자 신체 여러 부위에 여러 번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1개 부위에 상처를 입힌 경우가 각각 약 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50.0%, 42.9%). 반면, 정신 장애형의 경우에는 1개 부위에 상처를 입힌 경우가 3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성 분노형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유형의 분포가 비교적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0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 피해자 상처 유형

구 분	범죄 유형			(df=6) χ^2 17.096**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1개 상해	6(42.9)	14(37.8)	14(34.1)	
한 곳에 여러 개 상해	1(7.1)	5(13.5)	10(24.4)	
여러 곳에 여러 개 상해	7(50.0)	7(18.9)	15(36.6)	
해당 사항 없음	0(0.0)	11(29.7)	2(4.9)	
전 체	14(100.0)	37(100.0)	41(100.0)	

** $p < .01$

3) 피해자 상처 부위

다음의 <표 3-61>는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의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현실 불만형의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여러 번 상처를 입히거나, 아니면 몸통에 상처를 입힌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35.7%). 반면, 정신 장애형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부위가 비교적 다양하고 균등하게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성 분노형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여러 번 상처를 입힌 경우가 가장 많았고(29.3%), 그 다음으로는 얼굴과 팔다리, 머리가 가장 많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19.5%, 19.5%, 17.4%).

표 3-61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피해자 상처 부위

단위: 명(%)

구 분	범죄 유형			(d) χ^2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몸통	5(35.7)	5(13.5)	2(4.9)	(d=12) 28.562**
목	0(0.0)	3(8.1)	2(4.9)	
얼굴	1(7.1)	6(16.2)	8(19.5)	
머리	0(0.0)	2(5.4)	7(17.4)	
팔다리	3(21.4)	5(13.5)	8(19.5)	
여러 부위	5(35.7)	5(13.5)	12(29.3)	
해당 사항 없음	0(0.0)	11(29.7)	2(4.9)	
전 체	14(100.0)	37(100.0)	41(100.0)	

** $p < .01$

4) 피해자 상해 진료

마지막으로, 문지마 범죄자 유형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실 불만형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57.1%). 반면 정신 장애형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2주 이

상·6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2.4%). 한편 만성 분노형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2주 이상·6주 미만의 상해를 입은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8.5%).

표 3-62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 피해자 상해 진료

단위: 명(%)

구 분	범죄 유형			(df) χ^2
	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전치 2주미만	0(0.0)	4(10.8)	4(9.8)	(df=10) 39.903***
전치 2주 이상 - 6주미만	2(14.3)	12(32.4)	24(58.5)	
전치 6주 이상	8(57.1)	5(13.5)	3(7.3)	
신체 피해 있으나 알 수 없음	4(28.6)	3(8.1)	8(19.5)	
해당 사항 없음(정신, 재물 피해)	0(0.0)	11(29.7)	2(4.9)	
사망	0(0.0)	2(5.4)	0(0.0)	
전 체	14(100.0)	37(100.0)	41(100.0)	

*** $p = .00$

4. 결과 요약

여기에서는 국내 묻지마 범죄자들의 수사재판기록 조사를 통해 묻지마 범죄자들의 범행 특성 및 사회인구학적 배경, 심리사회적 요인, 피해자 관련 특성 등을 분석하고, 최소 공간 분석(Smallest Space Analysis) 기법을 통해 묻지마 범죄자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궁극적으로 분류된 묻지마 범죄 유형별 범죄자들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스라엘 히브루 대학의 HUDAP(Hebrew University Data Analysis Packag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최소 공간 분석(SS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은 지리적 공간 상에서 크게 3가지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총 3가지의 묻지마 범죄 유형(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

노형)으로 분류되었다.

우선 현실 불만형의 범죄자들의 경우, 주로 사회에 불만이 있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범행 당시 우울한 기분을 느끼며 평소에도 사회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주로 여름에 노상에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경우가 많고, 부모 및 형제와의 관계가 양호하지 못하며, 평소 자신을 해하려는 사고나 환상이 있는 등 자살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두 번째로 정신 장애형의 범죄자들의 경우, 주로 조현병 등 정신 장애가 있거나 마약이나 본드 등의 환각 물질 흡입으로 인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주로 신체 및 정신 병력이 있으며,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대인 관계 기능 수준으로 보면 친밀감이 결핍된 경우가 많고, 인지 및 지각, 사고 기능과 관련해서 망상이나 환상, 환각, 와해된 사고를 보이기도 한다. 범행 당시 신체 건강 상태도 양호하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하루 일과를 주로 TV를 시청하거나 자는 등 집에서 특정한 활동 없이 시간을 보낸다.

세 번째로 만성 분노형의 범죄자들은 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분풀이로,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재미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다. 범죄자가 주폭 혹은 상습 폭력범인 경우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들은 범행 당시 주취 상태이거나, 약물이나 본드 등 환각제를 사용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범행 당시에는 초조하거나 불안한 기분을 느끼며, 종종 묻지마 범죄와 함께 다른 범죄가 경합하여 나타난다. 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고, 평소 하루 일과를 보면 주로 정해진 일과 없이 혼자서 쏘다니거나, 술이나 마약 등에 탐닉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총 48명의 묻지마 범죄자를 분류한 결과, 전체 48명 가운데 만성 분노형이 22명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정신 장애형이 18명으로 전체의 37.5%, 그리고 현실 불만형이 8명(16.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유형(현실 불만형, 정신 장애형, 만성 분노형) 간 범죄자들의 차이점을 범죄자 특성 및 범행 특성, 대인관계 특성 및 피해자 특성 등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다른 유형의 묻지마 범죄자들에 비해 만성 분노형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수입 평균에 있어서는 만성 분노형 범죄자들이 다른 유형의 범죄자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신 장애형의 경우에는 만성 분노형 범죄자들의 평균에 십분의 일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월수입 평균이 낮았다.

한편 정신 장애형의 경우 대부분(70.6%)이 정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현실 불만형과 만성 분노형의 경우 정신증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은 아예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 장애형의 경우 대부분(62.5%)이 정신분열증(조현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성 분노형의 범죄자들은 거의 모두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90.9%), 정신 장애형의 경우 약 3분의 2정도(66.7%)가 전과가 있었고, 현실 불만형의 경우는 반(50%)을 차지하였다. 더불어, 만성 분노형의 범죄자들은 거의 모두(90.9%) 대인 범죄 전력이 있는 반면, 정신 장애형의 경우 약 3분의 2정도(66.7%)가, 현실 불만형의 경우는 비교적 소수인 37.5%만이 대인 범죄 전력이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만성 분노형의 범죄자들은 거의 모두 폭력/상해 전과가 있는 반면(86.4%), 정신 장애형의 경우 3분의 2 정도(66.7%), 현실 불만형의 경우는 소수(25.0%)의 범죄자들만이 폭력/상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만성 분노형이나 현실 불만형 범죄자들의 경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경우가 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각각 54.5%, 50.0%). 반면, 정신 장애형의 경우 소수(11.1%)의 범죄자들만이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다른 유형의 전과에서는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범행 특성에 있어서 묻지마 범죄 유형별 범죄자들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우선 기소 당시 범죄명을 살펴본 결과, 현실 불만형 범죄자들의 경우 살인 미수인 경우가 50%였으며, 정신 장애형의 경우 살인미수가 38.9%로 가장 많았고, 상해가 27.8%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반면 만성 분노형의 경우 대다수(72.7%)가 상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검찰 구형의 정도와 비율을 살펴본 결과, 현실 불만형과 만성 분노형의 경우에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대다

수(각각 71.4%, 70.6%)를 차지한 반면, 정신 장애형의 경우에는 약 과반수(55.6%)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이 징역형과 치료감호 청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실 불만형이나 정신 장애형의 범죄자들은 범행 당시 자신의 신체를 써서 공격했던 경우가 거의 없는 반면(각각 0%, 11.1%), 만성 분노형의 경우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40.9%). 오히려, 현실 불만형이나 정신 장애형의 범죄자들은 범행 당시 칼 등 날카로운 것(예기)을 사용했던 경우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고(각각 75%, 72.2%), 만성 분노형의 경우는 36.4%에 그쳤다.

다음으로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신 장애형이나 만성 분노형의 범죄자들은 범행 당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각각 94.6%, 95.1%), 현실 불만형 역시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대다수(78.6%)를 차지하였다.

이번에는 대인 관계 및 사고 특성 관련 유형별 범죄자들 간의 차이점을 살펴 보았다. 우선 정신 장애형 범죄자들의 경우 미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친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현실 불만형의 경우에는 게임 및 도박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정신 장애형의 경우에는 음주 및 약물 복용이 가장 많았다. 반면, 만성 분노형의 경우에는 절대 다수의 범죄자가 음주 및 약물 복용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 장애형의 범죄자들은 절대 다수가 타인을 해하려는 사고나 환상을 가지고 있었고, 현실 불만형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사고나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만성 분노형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특성에 있어서의 유형별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정신 장애형의 경우 피해자 나이 평균이 약 45.6세로 가장 많았고, 만성 분노형의 경우 약 37.1세, 현실 불만형은 약 27.4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실 불만형은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여러 번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1개 부위에 상처를 입힌 경우가 각각 반 정도인 반면(각각 50.0%, 42.9%), 정신 장애형의 경우에는 1개 부위에 상처를 입힌 경우가 가장 많았고, 만성 분노형의 경우에는 상처를 입은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묻지마 범죄자 유형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현실 불만형의 경우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57.1%), 정신 장애형과 만성 분노형의 경우 전치 2주 이상-6주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4장

문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윤정숙 · 안성훈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1절 결과 논의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묻지마 범죄자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동질적 집단이기보다는 고유한 본인의 특성과 환경 및 특유의 사고과정을 거쳐 범죄적 성향을 발달시킨 이질적 집단으로 간주된다. 묻지마 범죄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범죄자의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동기가 있더라도 범죄자 이외의 제3자가 이성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성(idiosyncrasy)을 어떻게 이해하고 유형화할 것인가이다. 또한 이러한 개별성으로 인해 묻지마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 반년간 범죄심리학 분야에서 이뤄진 연구를 보면 묻지마 범죄뿐만 아니라 범죄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성범죄 등의 분야에서도 성범죄자라는 이질적 집단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유형화하는 작업이 발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예: MTC:R3, MTC:CM3, Knight & Prenky, 1994). 따라서 묻지마 범죄자의 개별성을 인식하더라도 이를 유형화하는 작업은 동 범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형사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묻지마 범죄자는 그 이질성으로 인해 어떠한 하나의 축을 가지고 설명하기보

다는 다양한 축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신장애, 폭력성, 사회적 정서 기능. 우선 문지마 범죄자 집단 내에 정신 장애와 비정신장애 유형이 공존하고, 정신 장애의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정신장애(mental disorder)는 문지마 범죄를 이해하는 하나의 축으로 간주된다. 둘째로 문지마 범죄자는 범죄력이나 폭력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만성적 분노형 범죄자는 전과 경력이 가장 많고 주취 폭력이나 상습 폭력을 가장 많이 보이는 반면 현실 불만형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측면이 덜하다. 따라서, 폭력성(violence)은 문지마 범죄자의 세부 유형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축은 사회적 정서기능의 위축이다. 현실 불만형(처지 비판형) 범죄자는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적 정서 기능이 매우 감퇴되어 고립된 생활을 하고 대인관계를 추구하지 않으며, 자존감이나 자기효능감 등 자아 기능이 퇴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회적 정서 기능(socio-emotionality) 또한 문지마 범죄를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축은 본 연구의 최종적 결과물인 문지마 범죄자의 3가지 세부 유형을 설명하는 방식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문지마 범죄자를 범행 동기 및 범죄에 기여한 주요 특성에 따라 ① 현실 불만형(처지 비판, 경제적 파탄, 소외 등으로 인한 사회 불만 및 자포자기), ② 정신 장애형(정신분열증, 망상증, 환각, 환청 등), ③ 만성 분노형(폭력성향의 발현, 분노, 주취폭력, 상습폭력 등) 등 세 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누었다. 현실 불만형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축 중 정신장애나 폭력성의 축에서는 가장 하위 레벨에 속하지만 대인관계의 극단적 기피나 왜곡 혹은 고립된 생활 등을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정서 기능은 가장 심하게 손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신 장애형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정신증과 비정신증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망상이나 사고와해의 정도가 심각한 정신증 유형의 경우 정신 장애의 축에서도 상위 레벨에 속하고 사회적 정서기능의 손상도 상위 레벨에 속하며, 폭력성의 측면에서도 중간이상의 레벨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정신증 유형의 경우는 정신 장애 축의 상위 레벨에 있지만, 사회적 정서기능이나 폭력성의 면에서는 그다지 높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성 분노형은 특별히 정신 장애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정신 장

에 축의 하위 레벨에 위치하지만, 상습적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폭력성의 면에서 상위 레벨에 위치해 있고, 반사회적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인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사회적 정서 기능 역시 상당히 손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문지마 범죄자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세 개의 축으로 문지마 범죄자 집단을 유형화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본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는 전체 연구의 최종 결과물인 문지마 범죄자의 세가지 세부 유형을 근거로 각 유형별 특성에 적용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대책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제2절 현실 불만형(처지 비관형) 문지마 범죄자 대책

앞서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 일부는 현실에 불만이 있거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이 범죄 동기로 추정된다. 이들은 평소 소심한 성향을 지니며,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고 우울한 기분을 느끼며 사회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현실 불만형(처지 비관형) 범죄자는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평소 스트레스를 게임과 도박 등으로 풀고 대인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가정 환경에 있어 아동기 때 신체적 학대, 경제적 파산, 부모의 이혼이나 파경 등을 경험한 이가 많고 역기능적인 가족 관계에 의해 타인과 안정적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의도 문지마 범죄자의 경우도 대인관계 성향을 보면 자신이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서운함을 느끼면 급격하게 그들을 평가 절하시키고 증오 혹은 분노의 감정을 품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평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투덜거리며 사회적 지지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협소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통한 만족이나 보상의 기회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선순환적인 인간 교류로 인해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어떠한 잘못에 대해 타인을 습관적으로 탓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대인관계 유형으로 인해 오히려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형

성된다고 할 수 있겠다.

현실 불만형(처지 비관형) 문지마 범죄자를 위한 대책으로 많은 것들이 나열될 수 있으나, 역기능적인 가족관계를 경험한 이들의 안정적 자립과 사회적 스킴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극단적 회피나 불만 성향의 대인관계 기능을 안정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장내의 상담센터나,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소위 대인관계의 극단적 회피형인 ‘은둔형 외톨이’나, 극단적 불만형 사람들을 발굴하고 치료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대인관계의 극단적 회피형인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그 현상의 심각성과 대책의 필요성이 과거부터 무수히 제기되어 왔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한 관계로 우리나라보다 이를 먼저 겪은 일본의 대책¹³⁾에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문지마 범죄의 원인 요인 중 하나로 히키코모리를 지목하고 이를 ‘여러 가지 요인의 결과로 사회적 참가를 회피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에 걸쳐 가정에 은둔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¹⁴⁾ 히키코모리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점은 당사자가 상담을 받고 진단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 같은 점에 착안하여 지자체 단위로 신변에 대한 서비스, out-reach형 방문지원, 가족이 상담과 진단을 받기를 권할 수 있는 상담 제공 등 2013년부터 ‘히키코모리 대책 추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행정구역과 특정도시에 히키코모리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심이 되는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제1차 상담 창구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히키코모리 지원단을 양성하여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정신보건복지센터나 보건소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통하여 히키코모리 상담을 실시하게 하고 있으며, 코디네이터의 지원 아래 자원봉사자에 의한 가정 방문이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강습회, 그룹 활동 등을 실시하여 방문 원조, 보호자 교육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임시보호소 등에서는 집단적인 생활지도, 심리요법 등을 실시하는 히키코모리 아

13) 히키코모리에 대한 일본의 대책은 이수정 (2013), “문지마 범죄자 심층면접을 통한 실증적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13 정책연구용역, 경기대학교 · 대검찰청, 82-86쪽 참고

14) 위의 보고서, 82쪽

동숙박 등의 지도사업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 현재 히키코모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① 의료기관(정신과, 내과, 소아과 등): 당사자의 심리상태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의학적(정신 및 신체) 관점에서 상담을 제공한다.
- ② 보건기관(보건소, 정신보건복지센터, 기초구역의 담당 부문): 방문지원을 제공하고 등교 거부자나 히키코모리에 대한 지역 내에서의 지원을 하고 있다. 정신보건복지센터는 정신보건복지법에 기초하여 각 행정구역에 설치한 기관으로 정신장애자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형태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심리치료나 집단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 ③ 복지기관(아동상담소, 복지사무소, 발달장애자지원센터): 아동에 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하다. 아동학대 등의 가족기능상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복지사무소와의 연대도 중요하다.
- ④ 교육기관(교육센터, 교육상담소, 학교): 학교상담자나 학교사회복지사, 학교보건과의 상담을 하면서,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행한다. 등교 거부상태에 있는 어린이들은 그 재학학교에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 과정의 중간적인 역할로 종래 ‘적응지도교실’이라고 불리는 교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 ⑤ 특정비영리조직(NPO)
- ⑥ 취업기관: 대표적인 기관은 공공직업안정소이지만, 지역청년지원센터, 학생직업통합지원센터 등의 기관이 있다.

일본에서는 가능한 모든 히키코모리를 빠뜨리지 않고 지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전문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네트워크 기능의 큰 틀을 협의하고 기관 간의 조정을 논의하여 네트워크 관리를 담당하는 협의회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각 기관의 실무자가 모여서 실제로 대응이 어려운 사례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사례 관리 회의를 필수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은 당사자에 대한 개인치료, 집단

치료¹⁵⁾, 데이케어(주간시간 동안의 관리), 교육기관에 의한 지원, 취업지원, 약물 치료¹⁶⁾, 방문지원,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부정적인 사회현상으로 직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간의 연계와 구체적인 사례 분석에 근거한 해결책 등을 강구하여 적극적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도 문지마 범죄자 중 상당수가 은둔형 외톨이의 내재적 심리와 유사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판, 대인관계의 극단적 회피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한 사회내의 정신보건 시설 및 취업지원 시설, 복지기관, 교육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구축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실불만형 범죄자는 다른 유형의 범죄자에 비해 범죄 전과 경력이 적어 사회 재활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적 서비스 및 교육을 통한 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문지마 범죄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 15) 당사자는 원래 대인관계 기술에 문제를 포함하고 있거나, 집단생활이 부족하거나 또래와의 경험에 있어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장기간에 걸친 히키코모리 상태에 의해 가족 이외의 대인과의 교류가 어려워진 경우도 있으므로 이차적으로 대인관계 기술이 낮아진다. 당사자는 또래집단과의 교류에 특히 저항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집단을 활용하여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 당사자는 히키코모리를 벗어난 이후에 사소한 일을 계기로 다시 히키코모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히키코모리로의 퇴행을 방지하기 위해 주위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16) 히키코모리 현상 그 자체가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히키코모리 현상의 배경에 존재하는 정신장애의 정확한 진단에 기초하여, 약물치료가 필요한 중증인지 여부, 그리고 약물치료의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약물치료의 개시를 정할 수 있다. 당사자나 가족은 의사로부터 약물치료를 추천받는 경우 그 목표와 복용에 대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하여 납득될 때까지 설명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약물치료법은 일부 정신장애의 경우에 한하여 행해진다.

제3절 만성 분노형 묻지마 범죄자 대책

본 연구의 수사재판기록 분석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묻지마 범죄자들 중 상당수는 폭력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고 형사시설에서의 수형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즉 묻지마 범죄 가해자의 범죄력 관련 특성을 요약해보면 전체의 75%가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으며, 그 중 92%는 폭력 범죄가 있었고, 73%는 대인범죄 전력이 있었다. 또한 범죄력이 있는 묻지마 범죄자 중 상당수는 과거에도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폭력적인 성향이 개선되지 않은 채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습적 분노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만성 분노형으로 지칭하였는데, 이러한 만성 분노형 묻지마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5.8%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과 경력도 가장 많이 보고되는 등 폭력성의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추정되었다. 만성 분노형 범죄자는 대개 상습적 주취폭력이나 폭력범죄 전력과 관련이 있고,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폭력 상해 전과 경력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내 고위험범죄자의 위험성 관리와 형사시설에서의 고위험군 수용자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1. 만성분노형 묻지마 범죄자 관리체계 정비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경력자에 대한 사회내 관리제도는 법무부의 보호관찰제도, 전자발찌 제도,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 여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 경찰의 우범자 관리제도 등이 있다. 현재 이 제도들은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만 여성부와 경찰이 서로 공유하며 협력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범죄경력자에 대한 사회내 관리제도 중 많은 대상자를 차지하는 제도는 보호관찰제도이지만, 이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그리고 가석방 등 형의 유예를 조건

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형기를 다 복역한 만기출소자중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사회내 관리제도는 전자장치부착제도 뿐이다. 그러나 전자장치부착제도는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한정¹⁷⁾되어 있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고 또한 국민들의 체감치안과도 관련이 큰 상습절도, 폭력, 상해, 강도, 방화, 마약 등의 죄종으로 형을 복역한 후 만기출소한 범죄경력자에 대한 사회내 관리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경찰에서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 마약, 상습절도, 조직폭력 등 8개 죄종 범죄경력자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자들을 우범자¹⁸⁾로 선정하여 재범방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우범자 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문지마 범죄 등의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평소 경찰의 범죄경력자 관리 소홀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면서 재범위험이 있는 우범자 관리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¹⁹⁾

실제로 그동안 경찰청이 실시하고 있는 범죄경력자에 대한 우범자 관리제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그 배경에는 우범자 관리제도의 명확한 법적근거 부재, 그리고 이로 인한 우범자 정보수집 등에 있어서의 제약 등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²⁰⁾ 구체적으로 경찰청은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토대로 우범자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 제1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제2조 3호 치안정보의 수

17) 2012년 12월 18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강도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시행은 2014년 6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18) 범죄경력자인 우범자라 함은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재범, 누범, 상습범, 전문 범죄자 등 다양한 형태로 불리고 있다. 현행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범죄단체의 조직원 또는 불시 조직화가 우려되는 조직성 폭력배 중 범죄사실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 그리고 “살인,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에 있는 자 중 그 성별,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를 우범자로 정의하고 있다.

19) 우리나라의 범죄경력자에 대한 사회내 관리제도는 법무부의 보호관찰(protective supervision)제도, 전자발찌 제도,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 여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 경찰의 우범자 관리제도 등이 있다.

20) 김상균 (2012), “무동기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제7권 제2호, p. 212

집·작성)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나 경찰의 정보 수집은 개인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따라서 정보 수집을 경찰의 직무로서 규정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하는 등의 입법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 부재는 우범자 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담당자들이 우범자 정보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으로 인해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고자 직접 대면을 지양하고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하는 등 간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우범자 정보 수집은 범죄에 방화동이지만, 통신수사 및 각종 사실조회는 범죄 수사 시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주거여부 확인 등 소극적인 정보수집에 머무르고 있을 뿐 재범위험성 판단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우범자는 전자발찌 부착대상자나 보호관찰 대상자들과 달리 준수사항이 없어 우범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고 우범자가 소재 불명시 재범 위험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통신수사 등 강제수사가 불가능해 소재파악에 어려움이 크다. 또한 소재를 발견하여도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방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범자관리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독일의 경우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경찰법에는 ‘경찰은 범죄행위의 예방적인 척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앞으로 범죄행위를 범하리라는 실제적인 근거가 있는 인물”에 대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에는 전과자뿐만 아니라 우범자의 개념이 모두 포함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 및 관련 정보 수집은 전적으로 경찰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²¹⁾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범위는 ‘범죄의 예방·진압’이라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이를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적 대처와 위험방지의 준비를 의무화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일반적인 범

21) 강신길 (2011), “한국 경찰의 우범자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우범자 관리제도 선진화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7쪽 참조

죄예방활동과 더불어 장래에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준비도 경찰의 직무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현행 우범자 관리제도와 제도개선후의 기대효과를 비교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1 현행 문지마 범죄 관련 우범자관리체계와 개선된 체계의 비교

구분	현행 관리체계	새로운 관리체계
우범자 관리·운영	▫ 기관별 독립적 운영 ▫ 기관별 우범자 별도 관리 ▫ 정보공유기능 극히 미흡 ▫ 정책공조기능 부재 ▫ 법적근거 미흡	▫ 관계기관의 기능적 연계 강화 ▫ 우범자 통합관리 ▫ 정보공유기능 강화 ▫ 기관간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 정책공조기능 강화 ▫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우범자관리의 단계	▫ 각 형사사법단계 및 사회복귀후 관리의 구분 및 단절	▫ 각 형사사법단계 및 사회복귀후 관리단계를 연계·통합
재범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및 절차 미흡 ▫ 관련 자원 및 인력 부족	▫ 표준화된 위험성평가도구 개발·사용 ▫ 각 형사사법단계에 우범자관리 전담팀 운영 ▫ 자원 및 인력의 확충
지역사회내 우범자 관리	▫ 경찰 : 우범자 관리 ▫ 보호관찰소 : 전자감독과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 다기관 협력체계에 의해 경찰·보호관찰소·교도소·치료감호소 등의 우범자에 대한 공동 관리
우범자관리의 효율성	▫ 감시적 기능 중심의 관리	▫ 감시적 기능과 원호적 기능의 병행을 통한 관리
우범자 관리의 법적 근거	▫ 우범자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 미흡	▫ 우범자 관리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사회내 보안처분(전자감독)과 시설수용 보안처분(보호수용) 제도 정비 및 도입 ▫ 전자감독과 보호수용의 유기적 연계

2. 고위험군 수형자 관리체계 정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성 분노형 범죄자들은 다른 유형의 문지마 범죄자들보다 전과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교도소 출소 후에도 그 폭력 성향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이들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만

성 분노형 범죄자들에게는 현재 교도소에서의 수감생활이 개선갱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폭력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특별처우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위험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위험성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특별처우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가. 위험성 평가도구의 사용

범죄자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표준화된 측정도구는 범죄관련 인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재범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나아가 범죄자에 대한 역동적인 보호요인의 탐색을 통하여 각 교정단계에서 적절한 처우계획의 수립과 처우실행을 담보하게 할 수 있다. 즉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위험관리의 성공 여부는 종합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달려 있다. 또한 수용자와 교도관, 보호관찰관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범죄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는 고위험범죄자 관리를 위해 매우 유용한 수단이며, 선진 각국에서는 범죄자 유형별로 위험성평가도구를 개발 및 사용하고 있다. 교도소, 보호관찰소, 경찰 등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위험성 평가도구가 필요하며, 타당성이 확보된 평가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정공무원과 보호관찰관, 조사연구전문가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도구는 폭력범죄자와 성범죄자 등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평가도구를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소년범죄자, 상습범죄자 등 범죄자 유형별로 특화된 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위험성 평가도구에 의한 평가결과는 양형단계, 시설내 처우단계, 가석방심사단계, 사회내 처우단계 등 처우의 전 과정에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나. 위험평가에 따른 개별적 수형자 관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형자들의 위험성을 평가하였다면,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형자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있어서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범죄자를 관리할 것인가가 우선 문제가 된다. 영국에서는 범죄자 관리를 책임지는 범죄자 관리자(offender manager)가 지정되어 있다.²²⁾ 범죄자 관리자는 범죄자 개인을 중심으로 범죄자를 관리하며 범죄자의 교육의 정도, 취업가능성, 마약 등 사용여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범죄자에 대한 개별적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범죄자 관리자는 가석방 등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에 참여한다. 범죄자 관리자의 업무는 범죄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때로부터 출소 후 사회에서 범죄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 정착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즉 범죄자 관리자는 범죄예방 및 재범률 감소를 위한 모든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범죄자에 대한 처우계획 작성, 재범위험성 평가, 개입수단의 결정, 범죄자의 개선정도의 심사, 사정변경에 따른 처우계획의 수정 등에 관한 책임을 진다. 범죄자 관리자는 출소 후에도 범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보호관찰관이 맡고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장기간 구금중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빈번한 대면 접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교정공무원중 범죄자 관리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자(offender supervisor)를 두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시켜 보자면,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이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시설 내 처우단계와 사회 내 처우단계에서 각각 범죄자 관리를 위한 전담팀을 따로 설치하여 수형자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들이 사회로 출소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에서의 축적된 정보를 사회 내 범죄자관리팀에 제공하여 공유함으로써 출소 후에 있어서도 단절없는 연속된 처우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위험관리계획은 위험성 평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되고, 필요한 경우 평가정보는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위험관리계획은 현재와 장래의 위험과 관련되어야 하고 교도소, 보호관찰소, 경찰 등 각 유관기관들로부터 정보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영국 등의 선진

22) 정진수의 (2009),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4쪽

외국에서는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마약중독자 치료프로그램, 알코올중독자 치료프로그램, 범죄행동 치료프로그램 등 다양한 위험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이를 보다 개별화·특성화하여 만성적 문지마 범죄자 등과 같은 고위험군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처우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취업지원, 주거지원, 가족관계지원, 건강지원 등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²³⁾

제4절 정신장애형 문지마 범죄자 대책

문지마 범죄의 상당수는 과거 또는 현재에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마약이나 알콜 등의 중독에 의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지마 범죄 가해자 중 과거 혹은 현재에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해자는 전체 중 58.3%를 차지하고 있고, 정신과 진단명으로는 조현병이 39.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주요우울장애, 알콜중독, 양극성 장애, 인격장애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정신장애형 문지마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동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실제로 범법정신장애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고,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현실적 위험성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심리 상태에서 충격적인 범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 및 보호 관리는 형사정책분야에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그 범죄가 대부분 명확한 이유 없이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와

23) 정진수의 (2009), 앞의 책, 180-182쪽 참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범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점에 보다 큰 문제점이 있다.²⁴⁾

현재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과 책임능력의 평가에 따라 형사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되거나 치료감호절차 또는 정신보건제도상의 강제입원이나 강제치료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제도로 치료감호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범법정신장애자를 치료·보호 관리하여 그들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돕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987년 치료감호소가 설립된 이래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와 교육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또한 그들의 사회복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행 치료감호제도는 몇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 및 관리가 저해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묻지마 범죄자의 경우 치료감호소나 교도소를 퇴소하더라도 대부분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손상이 심해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하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로 복귀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는 형사정책상으로도 사회복지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치료감호소나 교도소 출소자의 경우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경우 등 무의탁자인 경우도 많아서 이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 하에서는 매우 비관적이다. 실제로 정신 장애를 가진 범죄자의 가족들 역시 출소 후에도 보호시설에의 장기입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묻지마 범죄자의 출소 후 사회 복귀에 있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4) 치료감호소 가중료자의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은 형법사건 재범률이 4.6%인 것에 비해 치료감호법 사건 재범률은 15.1%에 이르고 있다. (보호관찰통계연보, 2009)

1. 적절한 치료보호시설의 확보

범죄자들의 정신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처우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과 시설 확충 또한 필요하다. 치료감호소나 교도소의 정신보건센터 모두 구금 치료를 필요로 하는 범법 정신장애자의 수에 비해 기관의 수나, 인적, 물적 자원이 열악하다. 치료감호소는 실질적으로 구금치료를 필요로 하는 범법 정신장애자를 취급하는 유일한 기관인데,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한 과밀수용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²⁵⁾ 이로 인해 정신장애자의 장애유형이나 임상적 심각성, 범죄적 위험성에 의한 차별적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교도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캐나다의 필립피널 사법정신병원(PPI)의 경우를 보면, 범법정신장애자인 피치료처분대상자에 대한 선택적 수용과 수준 높은 치료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캐나다 주정부의 물적·인적지원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PPI에는 연간 약 500명이 입원하는데 직원은 670명으로, 직원의 수가 오히려 더 많다. 그리고 몬트리올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 4천만 달러가 넘으며 연구개발, 학술 활동, 시설 내 서비스에 쓰이는 부수적인 돈이 150만 달러에 육박한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건사회복지법 위원회(LSSSS), 간호사 위원회(CII), 다학문 분야 위원회(CM), 위기관리 위원회, 이용자 집행위원회 등의 여러 담당 위원회가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PPI는 수용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재범위험성과 치료필요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엄중한 계호와 집중적이고 고도의 치료가 필요한 범법정신장애자만을 수용하고, 그 외의 피치료처분대상자의 경우는 대학병원을 포함한 한 단계 아래 수준의 인근 지역사회내의 정신의료시설의 사법병동에 수용하여 치료와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PPI에서의 치료에 의해 정신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도 위탁연계를 통해 이들 시설에의 위탁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이 시설에서

25) 윤정숙·탁희성 (2013), “정신질환자 관리실태와 범죄예방대책”, 2013년 대검찰청 수탁용역과제,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42쪽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인 경우에는 PPI로 다시 옮겨져 치료 후 다시 원시설로 보내지는 식의 연계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캐나다의 사법정신의료 시스템은 우리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5개의 국립 정신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이상의 정신병원이 있으므로 이들 시설과 연계하는 등 정신보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외래진료시스템의 확충 및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도입

현행법상 치료감호소 출소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10년간 무료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고 1차에 한하여 10년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년간 무료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그러나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자는 전체 보호관찰대상자의 1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²⁶⁾

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치료감호소 출소 후 외래진료 횟수의 차이가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⁷⁾ 따라서 출소 후 정기적인 외래진료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한 가중료자의 경우, 본인 스스로가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처방된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가중료자의 경우 처방약 복용에 대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처방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지속적인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현실은 정기적인 외래진료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요구한다.

또한 현제도에는 없지만 지역사회에서 치료, 교육 및 관리를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굳이 치료감호시설에 구금을 하지 않아도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미국가에서 시행

26) 2011년 치료감호소 통계자료에 의함. 이와 같이 외래진료를 받는 자가 적은 이유는 치료감호소가 전국을 통틀어 공주에 한군데 밖에 없는데다 시설의 지리적 요건이 좋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한다.

27) 손외철 (2011), “치료감호 가중료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참조

되고 있는 지역사회치료명령제도(CTO: Community Treatment Order)나, 외래치료명령제도(OPC: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강제외래치료명령제도(CAT: Compulsory Ambulatory Treatment) 등의 사회적 강제제도(Civil Commitment)를 생각해 볼 수 있다.²⁸⁾

구체적인 사례로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살펴보면, 외래치료명령(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은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로 정신과치료에 순응하지 않아 질병이 악화되어 강제입원이 되거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을 법률적인 강제를 통해 초기에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환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²⁹⁾ 외래치료명령을 받는 환자는 법에 의하여 해당 정신의료기관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투약과 재활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는 정신보건기관이 사법기관에 통보하여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최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³⁰⁾ 현재 우리나라의 범법정신장애자의 퇴소 후 치료 실패는 퇴소한 정신장애자가 경제적 여력과 치료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민간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정신장애자들은 가족의 관심도가 낮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치료의지가 결여된 경우가 많고, 또한 장기간 치료감호소나 교도소에서 복역한 자를 곧바로 민간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것도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내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외래치료명령제도와 같은 제도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³¹⁾

28) 이러한 사회적 강제제도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제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치료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성경숙(2008),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320-321쪽 참조

29) 성경숙·김성돈, “우리나라 치료감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제20권 제2호(2008), 347쪽, 손외철, 앞의 논문, 148쪽.

30) 성경숙·김성돈, 앞의 논문, 347쪽.

31)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제도가 있다. 즉,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동법 제25조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26조 응급입원에 의한 강제입원제도가 있다. 그러나 제24조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가족이나 환자 본인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입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제25조의 시도지사에게 의한 강제입원은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염려하여 거의 행해지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제26조의 응급입원은 72시간의 응급치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정신의료를 필요로 하는 범법정신장

3. 퇴소자의 사후관리체계의 마련

피치료감호자의 경우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결정을 받고 퇴소하더라도 이들 대부분은 정신장애의 잔류증상이 있고, 또한 보호자의 보호 없이 자립적 생활이 곤란한 자이다. 따라서 사회로 복귀한 이들에 대한 사후 치료와 관리보호에 관한 문제는 형사정책상으로도 사회복지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현재 치료감호소 퇴소자의 사회복귀에 있어서 정책적인 고려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치료감호 가종료자는 의무적으로 3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료감호소 내에서의 성공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출소 후 사회 내에서의 보호관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회합을 통하여 대상자의 사후치료 및 증상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치료감호 가종료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은 정신장애의 잔류증상을 가지고 있어 사회 내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될 경우 곧바로 재범과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³²⁾ 즉 퇴원 후 보호관찰기간 동안 경고 등 제재조치를 받지 않고 보호관찰관과 성실하게 접촉한 보호관찰의 순응도가 높은 대상자의 재범률이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퇴원 후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와 자주 접촉하면서 수시로 정신장애의 발병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³³⁾하는 것이 가종료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큰 역

애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원범연·조성용, 앞의 책, 190-191쪽 참조). 또한 민간정신병원의 경우 자상타해의 위험성이 높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보안과 계호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민간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길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시할 수단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32) 연구에 의하면, 퇴원 후 보호관찰을 어떻게 진행하는가가 가종료자의 재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손외철, 앞의 논문 참조

33) 정신장애자들을 사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치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을 잘 알고 이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내 병원이나 치료시설을 연계해 주는 서비스나 지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³⁴⁾

한편 각 지역별로 국가가 관리하는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연계를 통하여 대상자의 사후치료 및 증상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에 11개의 광역 정신보건센터와 189개의 기초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³⁵⁾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사례관리, 주간재활(Day care), 교육·훈련 및 타 기관연계 등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재활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자살예방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 수행을 주요 업무로 진행하고 있다.

2013년 7월 치료감호법의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소와 지역정신보건센터의 공조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³⁶⁾되어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어 기관간의 공조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공조체계구축을 통해 고위험군의 대상자를 조기발견하고 적절히 개입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대

역사회보호시설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들 수 있다.

- 34) 영국에서도 이미 보호관찰순응과 프로그램 참여 (compliance and participation)와 재범률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보호관찰명령에 잘 따르는 단기적 순응(short-term compliance)뿐만 아니라,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장기적 순응(long-term compliance)이 성공적인 보호관찰의 핵심요인임을 강조하면서 장·단기 순응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론적·실무적 수준의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앞의 논문, 139쪽)
- 35) 기초 정신보건센터는 실질적인 환자의 접견과 상담 등을 진행하는 시, 도, 군 단위의 지역주민 접촉 기관이며 광역 정신보건센터는 기초 정신보건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지역전체 홍보나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초 정신보건센터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정신보건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환자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역할의 내용으로는 사회 적응 훈련 등의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혹은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여 처방된 약물의 정기적 복용 등을 점검하고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36) 제36조의4(보호관찰소와 정신보건센터의 공조) ① 보호관찰소의 장과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및 재범방지, 사회복귀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등록, 상담, 진료, 사회복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 정신보건 관련 정보를 정신보건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의 공동 면담 등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및 재범방지,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상자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공조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노력에도 힘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둘째, 치료감호소 연계 중간처우시설에 대한 투자지원과 시설확충이 필요하다.³⁷⁾ 치료감호소 퇴소자의 경우 보호자가 인수를 꺼리는 등의 무의탁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지금의 현실 하에서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³⁸⁾

현재 퇴소자의 사후관리는 치료감호소의 사회정신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출소 후 가족의 인수가 곤란한 자들을 시설이나 병원에 연계하는 식으로 출소 후 사후관리 업무를 진행해 왔다. 보호자에게로의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는 출소자의 경우 사단법인 담안선교회나 사단법인 세계교회화·갱생보호협회 소속의 금성의 집,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및 심미지부 등 4곳의 사회복지시설로 보내지고 있다.³⁹⁾ 이러한 중간처우시설들은 숙소제공, 취업지도, 복약관리 등으로 출소자의 재발을 돕고 매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전담 사회복지사가 외래진료 및 사후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들은 출소 환자의 축적이나 장기거주, 이로 인한 관리의 부족, 무단퇴소 등의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중간처우시설들은 사회 내에서 실제로 환

37) 영국의 리드보고서(Reed Report)¹⁾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치료에 있어서 환자들은 가능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원칙을 발표한 후 형사사법기관, 병원, 사회복지 등 관련기관들이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문치료팀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Reed Report의 주요 내용은 (Derek Chiswick (1992), "Reed Report on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BMJ, vol. 305, pp. 1448-1449.) 참조 또한 이러한 현상은 미국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와서 병원 위치의 고립화를 극복하고 수용치료의 탈시설화 바람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정신치료를 위해 보호관찰(probation and parole), 중간처우의 집(halfway house), 외래진료소(outpatient clinics)를 중심으로 치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앞의 논문, 142쪽)

38) 치료감호소 입원시 대다수의 수용자가 만성정신질환의 상태이거나 만성정신질환의 급성악화 상태에서 증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도 음성증상이나 사회적 고립, 기능저하 등의 문제가 남아 있게 되고 가족은 환자의 이러한 상태를 허용하지 못하고 데리고 있기 보다는 장기입원을 요구한다고 한다. (성경숙·김성돈 (2008), 위의 논문, 340쪽)

39) 안성훈 (2011),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52쪽.

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보호관찰소와의 업무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치료감호소나 교도소와의 업무연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주된 이유는 일단 치료감호소나 교도소를 출소하면 이들의 관리가 앞의 기관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⁴⁰⁾

치료감호소나 교도소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범죄자의 성공적인 치료와 처우를 통해 출소 후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소 후 사후관리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신 장애를 가진 묻지마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시설 내에서의 관리와 치료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후관리에도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 기술한 중간처우시설의 확대와 이들 시설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⁴¹⁾

제5절 관련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통합적인 범죄자 관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묻지마 범죄는 크게 현실 불만형, 만성 분노형, 정신 장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유형 모두 그 해결책으로서 관련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들을 관리 및 교화하는 단계에서 경찰, 치료감호소, 교도소, 검찰 등의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는 등 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0) 손외철 (2011), 앞의 논문 143쪽.

41) 안성훈 (2011), 앞의 책 154쪽.

1. 관련기관의 협력체제 구축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범자 관리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역할만으로는 실질적인 고위험범죄자들에 대한 재범방지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법무부와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재범위험자 선정 및 관리 등에 대한 다기관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은 경찰과 법무부의 협력체제 구축에 앞서 먼저 법무부 내부기관(교정,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의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한 선결과제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교도소 및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 양 기관이 상호 긴밀히 연계하여 범죄자가 사회로 출소하는 단계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⁴²⁾ 우선 치료감호소 및 교도소 내에서는 범죄자의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의 급수를 지정하고, 그 정도가 심각할수록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용자의 폭력성향 등의 범인성을 정확히 측정·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 장애와 관련하여서도 적정하고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임상적 수준을 진단하고 정신과의사 등의 진찰·치료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⁴³⁾ 또한 출소 이후에는 보호관찰소가 개별 범죄자에 대한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교도소 및 치료감호소가 출소자의 정보를 이관해 주어야 할 것이다.⁴⁴⁾ 지역사회내 범죄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는 범죄자의 기본적인 정보, 범죄 내용, 형사절차 각 단계에서의 대응 등은 물론이고, 형사시설 입출소 시의 위험성 평가 결과와 정신 장애 등의 유무, 시설내 관리를 통한 범인성 및 정신 장애의 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우범자의 사회복귀 지원 및 위

42) 정진수의 (2009), 앞의 책, 165쪽 참조

43) 미국의 경우에는 재범을 억제하기 위하여 범죄자를 감독·관리하는 업무를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보호관찰관 또는 지정된 감독관이 주기적으로 우범자들과 면담하고 가정, 학교, 직장 등을 방문하여 재범방지에 힘쓰고 있다.

44) 정진수 (2011),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기관간 연계방안 - 통합적 범죄자관리체계의 관점에서”, 우범자 관리제도 선진화방안 정책토론회 “우범자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18쪽.

협성 관리에 유용하므로 관리 주체인 보호관찰소와 경찰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형사사법기관의 정보공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그 운용 방법에 대한 협의는 우범자 관리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적 운영의 기초가 됨으로 관계기관간의 이에 대한 검토가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⁴⁵⁾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연계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⁴⁶⁾에서는 범죄자, 특히 재범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대책으로서 다기관 공공보호안(MAPPA: 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성범죄자, 폭력범죄자 등의 처우를 행하기 위한 법적 협정이다.

영국에서는 성범죄자의 재범,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문제가 되어 1999년에 성범죄자 등록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2000년 형사사법 및 재판소업무법에 의해 MAPPA가 창설되게 되었다. MAPPA의 취지는 성범죄자, 폭력범죄자, 기타 지역에 따라 위험한 범죄자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들의 재범을 감소시켜 일반시민을 중대한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APPA는 조직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소정의 책무를 수행하여 공공을 보호하는데 적절한 연계·협력을 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법률에 의해 관계기관은 연계·협력의 의무가 있다. 그 중심은, 경찰, 교도소와 보호관찰 서비스로 이 3자가 책임기관(RA: Responsible Authority)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3자는 각각의 담당지역에서 MAPPA를 창설하여 대상자의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를 하는 임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MAPPA의 담당구역이 42개 구역으로 나뉘져 있어, 각각 구역별로 MAPPA가 설치되어 있다. 책임기관 외에 협력이 의무 지어 있는 기관으로는 지방사회복지국(Local Authority Social Care Service), 공립의

45) 예를 들어 형사사법기관 및 의료·사회 복지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기관의 관여 하에서 우범자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자의 문제·위험정도·내용에 따라 필요한 연계기관의 범 위설정과 연계의 정도를 협의해야 할 것이며 또한 대상자의 석방 후의 상황에 따른 필요한 지도, 개입과 지원을 계획하기 위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46) 영국은 지역에 따라 사법제도가 다르므로 여기에서는 주로 잉글랜드·웨일즈를 말한다.

로센터(Primary Care Trusts, other NHS Trusts, and Strategic Health Authorities), 취업센터(Jobcentre Plus), 소년범죄팀(Youth Offending Teams), 등록가주(家主)(Registered Social landlords), 지방주택국(Local Housing Authorities), 지방교육국(Local Education Authorities), 전자감시업자(Electronic Monitoring providers) 등이 있는데, MAPPA의 연계·협력은 다음 단계에 따라 이루어진다.⁴⁷⁾

- ① MAPPA와 관련되는 범죄자(MAPPA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자)를 특정함. 이를 위해서 관계기관은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자 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음.
- ② 충분하고 포괄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위험성평가에는 관계기관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MAPPA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평가가 가능.
- ③ 적정하고 충실한 위험관리 플랜을 책정하여 실행하고 이후 이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함.
- ④ 공공의 보호가 적절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자원을 발굴함.

MAPPA에 의한 사건의 관리 및 위험성 관리 레벨은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레벨1은 통상 단일기관에 의한 관리이고 레벨2 및 3에서는 다기관 공공보호회의가 개최된다. 레벨1이 가장 낮은 관리레벨이고 레벨 3에서 가장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관리 레벨은 위험의 고저와 상관관계가 있으나, 항상 위험의 고저만으로 관리 레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성이 높아도 레벨2, 3에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비용편익적 관점을 고려하여 공공의 보호가 가능한 위험성 관리 플랜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낮은 레벨이 선택된다. 따라서 레벨2, 3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레벨을 높임에 따라 그 사건의 관리나 위험성 관리에 있어서 대상자에게 무엇을 부가하고 무엇이 강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다.

레벨1에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범죄자의 감독이나 사건처리에 책임을 지는 기관

47) 野下智之他 「無差別殺傷事犯に関する研究」 『研究部報告50』 法務総合研究所(2013), 160-161쪽.

이 위험성 관리를 행한다. 이것은 다른 기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MAPP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의 관리를 말한다. 정보의 공유는 필수적이고 필요하다면 관계기관회의도 개최된다. MAPPA의 대상이 되는 범죄자는 법률에 의해 3가지 유형, 즉 ① 카테고리1: 등록된 성범죄자, ② 폭력범죄자, ③ 기타 위험한 범죄자로 나뉘는데, 카테고리3에 해당하는 범죄자는 레벨1에서 관리되지 않고 카테고리1과 2에 해당하는 범죄자만이 대상이 된다.⁴⁸⁾ 따라서 경찰, 보호관찰 혹은 소년범죄 관련 기관이 주된 담당기관으로서 관여한다. 현재 레벨1에 의해 관리되는 자의 비율은 92%로 가장 높다.⁴⁹⁾ 레벨 1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4개월마다 사건관리(케이스 관리)의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검토에는 위험성평가, 위험관리에 영향을 줄 만한 모든 정보를 선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험성관리계획을 검토하게 된다. 경찰은 데이터베이스(ViSOR: Violent Sex Offender Register)에 그러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호관찰의 OASys(Offender Assessment System)⁵⁰⁾에 의한 사례평가 결과도 ViSOR에 등록된다.

레벨2에 의한 사건관리는, 범죄자가 OASys 혹은 ASSET⁵¹⁾에 따라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 존재하는 해당 위험성의 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개입에 다른 기관의 관여와 연계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과거에 레벨3의 대상이 되었으나 위험성의 중대성이 감소한 자, 혹은 다기관 위험성관리가 필요한 자로 레벨2의 위험성관리계획을 책정할 만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레벨2에서는 위험성관리계획이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적용되기 위해 8~12주간마다 검토가 이루어진다. 레벨2의 MAPP회의에서는 각 사건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지 소회의에서 처리할지 결정하지만, 소회의에 의해 처리될 경우에도 6개월마다 레벨2의 MAPP회의(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관여하는 각 기관에의 정보제공 요청, 관여기관에서 집행해야 할 조치의 진행상황정보의 제시, 피해자 정보의 제시, 위험성관리계획의 검토가

48)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하는 “가. MAPPA 제도의 대상자” 참조

49) 2012년 3월 시점에 의한 野下智之他, 위의 보고서, 162쪽.

50) 성인용의 위험성평가 툴의 하나로, 자세한 것은 후술하는 “나. 위험성평가” 참조

51) 10~17세의 소년범죄에 대해 활용되는 위험성평가도구의 하나이다.

필요한 경우의 수정 등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성의 변화 정도에 따라 레벨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레벨2의 대상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 정신장애·약물남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폭력범죄자, 약물남용의 가정폭력범죄자, 주거가 불안정한 자, 범죄에 의해 중대한 해악을 타자에 끼칠 위험이 있는 자 등이 포함된다.⁵²⁾

레벨 3에 의한 사건관리는 4~6주마다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책임기관과 협력기관의 고위직원이 참가하는 중요한 회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즉 위험성관리를 위해 형사사법·사회·의료·복지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자원을 단기간에 대규모로 투입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나 혹은 그 사건의 관리가 언론 등에 의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그 기준은 OASys(성인) 혹은 ASSET(소년)의 평가에 의해 범죄자가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높거나」,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그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계획이, 사건이 복잡하거나 통상 이용되지 않는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위층에서의 긴밀한 협력·연계가 필요한 경우, 혹은 위험은 「높음」, 「매우 높음」이 아니지만 언론 등이 관심을 가지고 사건의 관리에 관해 국민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레벨3의 대상에는 예를 들어 사건이 복잡한 경우, 긴박한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성범죄자로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경우, 범죄적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면식이 있는 아동·성인에 대해 살해·유괴·위협협박을 하는 경우, 정서불안·약물남용의 경우, 언론 등에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대상자는 MAPPA 대상자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⁵³⁾

MAPPA의 관리레벨은 범죄자가 사회 내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나 감독 하에 있는 경우 즉시 결정되며, 또한 수형자의 경우에는 석방예정일 6개월 전이나 최초의 가석방심리를 위한 가석방보고서가 준비된 때, 또는 그 후의 재심사시에 결정된다.⁵⁴⁾

52) 野下智之他, 위의 보고서, 163쪽.

53) 위의 보고서, 164쪽.

54) MAPPA의 관할구역(42개의 구역으로 구성된다)별로 전략적 관리위원회(SMB:Strategic Management Board)가 설치되어 있는데 최소 4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위의 보고서, 164쪽 참조.

MAPPA에서는 효과적인 위험성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제로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위해위험의 발생가능성이나 위해의 정도를 낮춤으로써 실제적인 위해를 낮추는 것이 위험성 관리의 목표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MAPPA에 의해 관계기관은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처우·행동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러한 위험성 관리에 따라 범죄발생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⁵⁵⁾ 실제로 영국의 법무부는 MAPPA의 운용개시 전(1998년~2000년)과 개시 후(2001년~2004년)에 MAPPA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자·대상이 되는 범죄자를 추적하여 재범률에 대해 조사를 행하였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대상자의 재범률은 MAPPA 운용개시 전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⁵⁶⁾

이상에서 살펴본 영국의 MAPPA제도는 관련기관간의 정보공유와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역사회내의 고위험군 대상자를 효과적 관리하고 처우하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나 위험군별 위험관리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대상자들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함은 앞서 지적한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취해지기 위해서는 영국의 경우와 같이 관련기관간의 정보공유와 협조체제의 구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기관을 통한 협력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위험군의 대상자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기관을 파악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⁵⁷⁾

55) 이러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의 공유는 MAPPA에서 가장 중심적인 가치이다.

56) Patterns of reconviction among offenders eligible for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MAPPA), Mark Peck, Ministry of Justice Research series 6/11 June 2011

57) MAPPA 이외에도 영국의 NOMS의 OMM(Offender Management Model)이나 미국 교정연구소(NIC)의 TPCI(Transition from Prison to Community Initiative) 모델 캐나다의 PPSDM(Probation and Parole Service Delivery Model)모델 등의 범죄자 통합적 관리모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선진외국의 모델을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진수 외(2009), 앞의 책, 164-165쪽 참조

2. 통합적 범죄자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범죄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발생 사건에 대한 조속한 대응과 장기적 범죄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대규모의 범죄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발달하여 적극 활용되고 있다.⁵⁸⁾ 아래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다기관 협력체제인 MAPPA의 대상자 등록과 그 위험성평가에 대한 영국의 사례를 통해 그 시사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가. MAPPA 제도의 대상자

MAPPA의 대상이 되는 범죄자는 법률에 의해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⁵⁹⁾

① 카테고리 1 : 등록된 성범죄자

2003년 성범죄법에 의해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는 성범죄자이다. 동법에 의해 등록이 필요한 성범죄에 의해 유죄가 된 자 및 실행한 자(범죄의 실행이 인정되었으나, 심신상실·심신미약에 의해 무죄, 감형을 받은 자), 경찰로부터 「경고⁶⁰⁾」를 받은 자는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범죄자의 특징에 대해서는 경찰이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이 카테고리 1의 범죄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ViSOR: Violent Sex Offender Register)에 입력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범죄자에 대해서 보호관찰을 행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와 소년범죄 관련기관도 정보를 ViSOR에 입력한다. 마찬가지로, 관련의료센터도 카테고리 1에 해당하는 자가 퇴원할 때에는 경찰과 그 정보를 공유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찰은 대상자가 유죄가 된 때에는

58) 박지선 (2013), “문지마 범죄에 대한 외국사례 및 대처방안 연구”, 대검찰청, 182쪽.

59) 野下智之他, 위의 보고서, 161-162쪽 참조.

60)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이 범죄행위를 증거에 근거하여 인지하고 피의자가 범죄를 자인하고 있는 경우에 피의자의 동의하에 경찰관이 경고를 주고 형사소추는 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MAPPA조정관(MAPPA Co-ordinator)이 그러한 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혹은 수형할 때에는 교도소가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책무를 가진다.

② 카테고리 2 : 폭력범죄자 등

12개월 이상의 구금형에 처해진 폭력범죄자, 카테고리 1 이외의 성범죄자로 12개월 이상의 구금형에 처해진 자, 병원에 입원명령 혹은 후견명령을 받은 범죄자 및 아동에 대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가 카테고리 2에 해당한다. 이들 카테고리 2의 범죄자는 법률에 근거하여 보호관찰소 혹은 소년범죄 관련기관의 감독 하에 관리된다. 따라서 이 카테고리 상의 범죄자가 형을 받은 시점에서 전부 MAPPA의 대상자로서 파악되고, ViSOR 상의 등록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지되며 대상자가 구금된 시점에서 교도소가 관계기관에 포함됨과 동시에 MAPPA 조정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은 각지의 보호관찰소가 지게 된다.

③ 카테고리 3 : 기타 위험한 범죄자

이 카테고리의 해당자는 재판에 의해 형을 선고받아 사법판단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기관에 의해 범죄자가 공공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으며 그 위험의 정도가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연계에 의한 처우·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카테고리 3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카테고리 3에 해당하는 범죄자로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i) 대상자가 공공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지 않고, 경찰의 「경고」를 받은 경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ii) 대상자가 공공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 위험성 관리를 위해 레벨 2 혹은 3의 관련기관간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요건이 된다. (i)의 「중대한 위해가능성이 있는 범죄」의 요건판단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함뿐만 아니라 동기·목적 등을 비롯한 범행과 관련된 정황도 고려된다. 카테고리 3에 해당하는 범죄자의 특징은 대상자를 최초로 취급한 기관에서 상기의 요건 해당성을 판단한 뒤에 행해진다.⁶¹⁾

나. 위험성평가

관리레벨을 정할 때, 또는 MAPPA 대상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에 위험성평가가 필요한데, 이러한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주로 성인에 대해서는 OASys가, 소년에 대해서는 ASSET가 사용되고 있다. 기타 평가도구로는 RM-2000⁶²⁾, SARA⁶³⁾ 등이 사용되고 있다.

OASys는 보호관찰소와 교도소에 의해 개발된 위험성평가도구이다. OASys는 보호관찰소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판결전조사보고서(PreSentence Report)에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보호관찰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OASys는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이나 범죄자가 초래할 위해의 위험, 약물남용과 같은 대처해야할 문제요인을 분명히 하여 형의 처우계획에 있어서도 OASys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있다.⁶⁴⁾

OASys는 대처해야 할 문제요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⁶⁵⁾

범죄정보	과거 범죄력이 검토된다. 조사연구에 의하면 범죄력이 장래의 범죄 위험을 가장 높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범죄분석	가장 최근의 범죄에 대해 상세분석을 행한다. 중대한 위해 위험을 지목하는 것에 유익하다.
주거	주거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는 경우의 질은 어떤지, 주거환경은 범죄위험을 높이는지가 검토된다.
교육, 훈련 및 고용	조사연구에 의하면, 좋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범죄가 적고, 무지하거나 직장경험이 없거나, 취업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범죄자에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계의 관리와 수입	조사 연구에 의하면 파산과 같은 경제적 문제는 재범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어 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의 만족도·안정성과 범죄행동과의 관련을 검토한다. 더불어 가정 내의 폭력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61) 실무상으로는 카테고리 1, 2의 범죄자로서 과거에 등록되어 차우되었던 자로 기간만료 시에도 계속해서 위해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많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野下智之他, 위의 보고서, 162쪽.

62) RM-2000(Risk Matrix 2000)은, 영국에서 개발된 남자 성범죄자용의 위험성평가도구로서 성범죄의 예측척도, 성범죄자에 따른 성적이 아닌 폭력범죄의 예측척도, 양자를 혼합한 예측척도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63) SARA(Spousal Assault Risk Assessments)는 형사사법관계자가 배우자, 아이 등에 대한 가정 내 폭력사건의 우려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도구이다.

64) 野下智之他, 위의 보고서, 164쪽 참조.

생활방식과 친구	연구에 의하면 범죄자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 교우상대와 재범가능성에는 분명한 관련성이 있다.
약물남용	범죄자의 약물남용 정도와 타입, 생활에 가하는 영향을 분명히 한다.
알코올 남용	알코올 남용이 과거 혹은 가장 최근의 범죄에 가한 영향을 분명히 한다.
감정	감정 문제가 범죄자의 기능에 간섭하는지, 위해 위험으로 이어지는 지를 검토한다. 불안장애, 우울과 같은 정신장애는 일정 범위의 사람에게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
사고와 행동	연구에 의하면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를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고려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써 사건을 보거나 타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다.
태도	범죄와 범죄를 감독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검토한다. 범죄에 용인적인 태도는 재범가능성을 높이나 문제해결적인 태도는 재범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이들 위험요인은, 정적요인(전과·연령 등 처우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것)과 동적요인(약물, 알코올, 인간관계 등 처우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뉜다.

OASys에 따른 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평가(성범죄, 폭력범죄, 기초적 기능, 약물, 알코올, 정신장애, 위험하고 심각한 성격장애(DSPD : Dangerous and Severe Personality Disorder) 등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나 일반 폭력범죄자에게 시행하는 폭력범죄 위험성 평가 등이 있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이들 대상자들을 임상적 수준 및 범죄적 위험성으로 평가하여 분류 처우하고,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화된 기법을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65) 野下智之他, 위의 보고서, 165쪽.

제6절 결론

형사정책은 사회정책의 최후 수단이다.

지난 세기 형사정책분야에서 가장 큰 정신적 유산을 남겼던 독일의 형법학자 프란츠 폰 리스트가 남긴 이 문구는 복지적 사회정책이 최선의 형사정책이라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문지마 범죄 가해자는 사회경제적인 취약계층이 대부분으로 안정적인 직장이나, 교육 및 가정 환경, 사회적 지지 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문지마 범죄자 5명중 1명은 고정된 주거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가해자의 절반은 동거인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 75%가 미혼인 사람들이었다. 범행 당시 직업이 없던 사람들이 전체의 75%를 차지하였고 직업이 있는 경우도 대부분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종사자들로 경제적 수준도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지마 범죄자의 특징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특징에 근거하여 검토할 수 있는 대책(발생을 낮추기 위한 시책)은 형사정책상, 사회복지정책상의 시책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리스트가 말한 최선의 사회정책은 최선의 형사정책이라는 표어는 100여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지마 범죄의 가해자는 취업, 학력, 가정상황, 친구관계 등의 면에서 혜택 받지 못하며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자가 많고 일반 수형자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다중적인 범죄 위험을 가지고 있어,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문지마 범죄의 가해자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성 등의 요인에 의해 가석방되는 자는 많지는 않다. 그 결과, 많은 자가 만기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되는데 출소 후 아무런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범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형사시설 및 사회 내에서 관리·보호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책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먼저, 영국의 MAPPA제도와 같은 지역사회내의 고위험군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처우하기 위한 관련기관간의 정보공

유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위험성 평가와 위험군별 위험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관련기관을 파악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대상자의 문제점에 따른 관리 및 처우를 충실히 함과 동시에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지도나 교과지도 등의 지도·교육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상자의 니즈(needs)를 정확히 파악하여 출소 후의 의료·복지 등 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출소 후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면서 적절한 지원을 행하기 위해서는 형사시설 등과 보호관찰소나 기타 관계기관과의 사이에서 정보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당해 대상자의 상황에 관한 정보의 인수인계를 충분히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형사절차단계에서 대상자의 위험성평가를 행하여 그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형사시설, 보호관찰소, 기타 의료·복지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적절한 사회 내 처우와 지원 방법을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치료지원이 절실하다. 문지마 범죄의 가해자들은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수 보이며, 이들에 의한 편향된 사고·인지 등이 문지마 범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문지마 범죄관련 연구에 의하면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중, 범죄시에 정신과병원에 입·통원 등을 하고 치료 등을 받고 있었던 자는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오히려 전혀 치료를 받지 않거나 과거에 치료 경험이 있어도 입·통원을 중지해버린 자가 대부분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문지마 범죄에 이른 자와 이르지 않은 자를 불문하고 정신장애 등을 가진 자가 적절한 치료와 처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신장애 등에 관한 지식 등이 없어, 본인 혹은 주위의 사람이 치료·처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편견·차별을 두려워하여 조기에 치료·처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 등에 관한 적절한 지식·정보를 사회로 확대시켜, 이들 장애를 가진 자가 조기에 치료와 처우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방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우리 사회가 묻지마 범죄를 통해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신질환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사회내 홍보 및 교육 대책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며, 의료복지적 차원의 무료치료지원제도가 정착·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각 지역에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역할 확대와 국가의 예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선입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이 있으면 큰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선입견으로 인해 치료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치료를 회피하거나 질환 여부를 숨기게 돼, 더 큰 개인적, 사회적 불행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신적 이상과 질환을 일반적인 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우울증임을 주변에 알리지 못해서 생기는 또 다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이나 묻지마 범죄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낳게 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럽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복지의 수준이 낮은 편이다. 비록 과거와 비교해 본다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지만, 지금도 개인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감은 막중하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는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결과들을 보면서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실패하였을 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실패자’들은 설 곳이 없고, 가진 희망도 없게 된다. 결국 그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돌리게 되는데, 유형의 실체가 없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격 대신에 이를 일반인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물론 묻지마 범죄는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개인의 정신적·성격적 결함이 일차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경제적 불안 요인이 배경에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전통적인 사회통합기관들의 역할이 후퇴하고, 핵가족과 만연한 개인주의로 공동체는 사막화돼 가고 있다. 또 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경쟁위주의 사회구조에 따라 소외되는 자들도 증가

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쌓인 낙오자들의 불만과 좌절감이 사소한 계기를 통해 극단적인 분노와 증오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묻지마 범죄의 증가는 사회가 병들고 있다, 또는 병들어 있다는 경고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묻지마 범죄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사회적 병리와 형사 및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관련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그 치료와 보호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강신결 (2011). 한국 경찰의 우범자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 우범자 관리제도 선진화방안 정책토론회 자료집.
- 고선영 (2012). 이상동기범죄자의 성향 및 특성 프로파일링: 불특정 대상·무차별 상해사건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11(4): 3-28.
- 고선영, 이수정 (2011). 국내 살인범죄의 현장행동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4): 41-60.
- 김경옥, 이수정 (2009). 범죄현장 행동에 근거한 방화범죄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131-146.
- 김상균 (2012). 무동기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제7권 제2호.
- 김성문 (2007). 강력범죄 우범자 관리를 위한 프로파일링 기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선, 박지선, 최수형 (2009).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유형 분류와 프로파일링.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김지영, 박지선, 박현호 (2009). 연쇄 성폭력 범죄자 프로파일링과 프로파일링제도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진혁 (2012). 묻지마 범죄의 유형 및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8(3): 18.
- 대검찰청 (2013). 묻지마 범죄 분석.
- 박지선 (2013). 묻지마 범죄에 대한 외국사례 및 대처방안 연구, 대검찰청
- 박지선, 서윤정 (2010). 윤간에서의 범죄 현장 행동 분석: 단독 범행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9(3), 67-88.
- 박지선, 최낙범 (2010a). 범죄 행동을 통한 대인 강도 범죄자의 유형별 분류에

-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 207-235.
- 박지선, 최낙범 (2010b). 침입절도 범행 대상 선정시 상황적 요인의 중요성. 한국경찰연구, 9(4), 137-156.
- 박형민 (2012). 무차별 범죄의 개념과 특징: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한국공안행정학회 발표자료.
- 법무종합연구소 (2013). 문지마범죄에 관한 연구. 일본법무종합연구소 내부자료.
- 성경숙 (2008).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성경숙, 김성돈 (2008). 우리나라 치료감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제20권 제2호.
- 손외철 (2011). 치료감호 가중료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성훈 (2010).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원범연, 조성용 (2003). 범법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정숙, 김민지 (2013). 문지마 범죄에 대한 심리적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9(1).
- 윤정숙, 탁희성 (2013). 정신질환자 관리실태와 범죄예방대책, 2013년 대검찰청수탁용역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염건령 (2006). 무동기범죄의 정의와 원인. 수사연구, 2006, 4월호.
- 이수정 (2013). 문지마 범죄자 심층면접을 통한 실증적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2013 정책연구용역, 경기대학교·대검찰청.
- 이윤희 (2006). 증오범죄의 정치사회학. 매일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00506447>에서 검색.
- 정연대, 이윤희 (2013). 문지마 범죄담론의 사회적 구성과 영향: 문지마 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접근. 한국경찰연구, 12(1), 213-246.
- 정진수 (2011).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기관간 연계방안 - 통합적 범죄자관리체계의 관점에서, 우범자 관리제도 선진화방안 정책토론회 “우범

- 자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정진수외 (2009).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규범 (2006). 연쇄범죄와 프로파일링 방법론 연구. 경찰학 연구, 6(3): 66-103.
- 石川正興編『精神障害者による危害行為の対策』社安研(2008).
- 加藤久雄「触去精神障害者対策の現状と問題点」『現代刑事法』No.41, 2002.
- 野下智之他「無差別殺傷事犯に関する研究」『法務総合研究所 研究報告50』法務総合研究所(2013).
- 「無差別殺傷事犯に関する研究」『法務総合研究所 研究報告50』法務総合研究所(2013).
- Alison, L. J. & Stein, K. L. (2001). Vicious circles: Accounts of stranger sexual assault reflect abusive variants of conventional interactions.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12, 515-538.
- Amar, R. (2005). HUDAP manual.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 Bateman, A. L. & Salfati, C. G. (2007). An examination of behavioral consistency: Using individual behaviors or groups of behaviors in serial homicide.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5, 527-544.
- Best, J., (1999). Random Violence: How We Talk about New Crimes and New Victim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anter, D. V., Bennell, C., Alison, L. J., & Reddy, S. (2003). Differentiating sex offences: A behaviorally based thematic classification of stranger rape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1, 157-174.
- Canter, D. & Fritzon, K. (1998). Differentiating Arsonists: A model of firesetting actions and characteristics.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3, 73-96.
- Canter, D. V. & Heritage, R. (1990). A multivariate model of sexual offence behavior: Developments in 'offender profiling'.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1, 185-212.
- Canter, D. V., Hughes, D., & Kirby, S. (1998). Paedophilia: pathology, criminality, or both? The development of a multivariate model of

- offence behavior in child sexual abuse. *The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9, 532-555.
- Chiswick, D. (1992). Reed Report on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BMJ*, 305.
- Felson, M. & Boba, R., (2010). Nine fallacies about crime. In *Crime and everyday life*(4th eds), pp. 1-24, CA: Sage Publication, Inc.
- Lingoes, J. C. (1973). *The Guttman-Lingoes Non-Metric Program Series*. Ann Arbor, MI: Mathesis Press.
- Nolan, J., Akiyama, Y., Berhanu, S., (2012). The Hate Crime Statistics Act of 1990: Developing a Method for Measuring the Occurrence of Hate Violenc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1).
- Peck, M. (2011). Patterns of reconviction among offenders eligible for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MAPPA). Ministry of Justice Research series.
- Santtila, P., Junkkila, J. & Sandnabba, N. K. (2005). Behavioural Linking of Stranger Rapes.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2, 87-103.

Violent offending with unspecified motivation toward strangers

Jeongsook Yoon* · Jisun Park** · Sunghoon Ahn*** · Minjung Kim****

Recently, violent offending with unspecified motives toward strangers, so called 'do-not-ask-crime,' has been rising in Korea and it has received consistent attention from the Media due to public's fear of being likelihood to be randomly victimized by its offender. Clear conceptualization of such crime was not established yet, nor the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who commit it and the necessary social policies in criminal justice system as prevention strateg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nceptually define 'do-not-ask-crime' and examine main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who commit such crimes. We analyzed the reports of criminal investigation for the do-not-ask-crime cases that occurred in 2012 in Korea. We found that do-not-ask-crime offenders were low in socioeconomic status and 75% of them were recidivists, most of which had a history of being convicted of violent offending toward people including strangers. We also attempted to divide them into subtypes based on major criminal motivations through SSA analysis and found that they were categorized by 1)persistent anger type, 2)social complaint type, and 3)mental disorder type. Implications for criminal justice system were also discussed.

* Ph.D,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Ph.D,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Ph.D,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M.A,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부록〉 묻지마 범죄 수사재판기록 조사지

Coder _____

A. 가해자 인구학적 정보

1. 사건번호: _____
2. 주민번호: _____
3. 이름: _____
4. 성별 ①남 _____ ②여 _____
5. 주거지역(해당지역에 체크)
 - ①서울 ②경기 ③인천 ④부산 ⑤대구 ⑥광주 ⑦대전
 - ⑧울산 ⑨전북 ⑩전남 ⑪경북 ⑫경남 ⑬충북 ⑭충남
 - ⑮강원 ⑯제주 ⑰기타 _____
6. 나이: _____ 세
7. 직업 ①무직 _____ ②있음(구체적으로) _____
 - ③알수없음 _____
8. 최종학력
 - ①학교다니지 않았음 _____ ②초졸 _____ ③중졸 _____
 - ④고졸 _____ ⑤대재 혹은 대졸 _____ ⑥대학원재학 이상 _____
9. 종교
 - ①없음 _____ ②있음(구체적으로) _____ ③알수없음 _____
10. 범행당시 직업 유무
 - ①없음 _____ ②있음(일용직 및 비정규직) _____ ③있음(정규직)
 - ④알수없음 _____
11. 월수입
 - ①없음 _____ ②있음(구체적으로: 약 월 _____ 만원)
12. 결혼상태
 - ① 미혼 _____ ②기혼 _____ ③동거(사실혼 포함) ④알수없음 _____

B. 범행수법 및 상황

1. 범행장소 (복수응답 가능)

①실내 _____ ②실외 _____ (구체적으로) _____

2. 범행수법

2-1) 흉기사용여부 ①없음 _____ ②있음 _____

2-2) 흉기나 범행 도구의 사전 준비여부

①없음 _____ ②있음 _____ ③알수없음(해당사항없음) _____

2-3) 흉기 및 도구 유형 (복수응답 가능)

①흉기 및 도구 없음 ②칼 등 날카로운 것 ③둔기(망치, 몽둥이)

④끈, 줄 ⑤돌, 벽 등 자연물 ⑥총기 및 기타 무기류

⑦독극물, 약물 ⑧자동차 등 운송수단 ⑨기타

2-4) (구체적으로) _____

3. 범행일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3-1) 계절 ①봄(3-5월) _____ ②여름(6 -8월) _____

③가을(9-11월) _____ ④겨울(12-2월) _____

3-2) 범행시간: _____ 시 (24시간 기준)

4. 범죄명: _____ (기소당시)

5. 전과경력

①없음 _____ ②있음 _____ (_____ 화·본건 제외)

5-1) 전과 있는 경우, 전과 범죄명 (복수 응답 가능)

①살인 ②강도 ③폭력, 상해 ④성폭력/성매매

⑤방화 ⑥사기/횡령 ⑦절도 ⑧재물손괴

⑨음주운전/무면허/도로교통법 위반 ⑩약물(환각물질)소지/복용

⑪기타

5-2) 전과 있는 경우, 대인범죄 전력 여부

①없음 _____ ②있음 _____

5-3) 과거 동종범죄(문지마 범죄 추정)

①전과수: _____ ②알수없음(해당사항없음) _____

5-4) 과거 동종범죄 처분내용

- ①기소유예 _____ ②기소중지 _____ ③집행유예 _____
 ④보호관찰 _____ ⑤벌금 _____ ⑥구금형 _____ ⑦기타 _____

6. 범행당시 가해자 음주여부

- ①없음 _____ ②있음 _____ ③알수없음 _____

7. 범행당시 가해자 약물(환각물질)사용여부

- ①없음 _____ ②있음 _____ ③알수없음 _____

8. 범행동기: _____

9. 기타 특이사항: _____

10. 검거경위

- ①자수 _____ ②현행범 체포 _____
 ③신고에 의한 체포 _____ ④그 외의 체포 _____ ⑤알수없음 _____

10-1) 범행 후 가해자의 행동

- ①자수 _____ ②전화신고(119/112 등) _____
 ③누군가에게 도움 요청 _____ ④그냥 현장에 머무름 _____
 ⑤도주 _____ ⑥기타 _____

11. 혐의사실 인정여부

- ①전부인정 _____ ②일부인정 _____ ③전부부인 _____ ④알수없음 _____

12. 검찰 구형: _____

C. 발달사적 정보

1. 어린시절(학창시절포함) 부모의 존재

- ①부모 없음 _____ ②아버지만 있음(양아버지 포함) _____
 ③어머니만 있음(양어머니 포함) _____
 ④부모 둘다 있음(양부모 포함) _____ ⑤알수없음 _____

2. 부모의 이혼 여부

- ①이혼 _____ ②비이혼 _____ ③알수없음(해당사항없음) _____

3. 부모와의 관계

- ①양호 _____ ②비양호 _____ ③알수없음(해당사항없음) _____
 (구체적으로 서술: _____)

4. 형제와의 관계

- ①양호 _____ ②비양호 _____ ③알수없음(해당사항없음) _____
 (구체적으로 서술: _____)

5. 학창시절

- ①양호 _____ ②비양호 _____ ③알수없음(해당사항없음) _____
 (구체적으로 서술: _____)

6. 학창시절시 따돌림 경험

- ①없음 _____ ②있음 _____ ③알수없음(해당사항없음) _____
 (구체적으로 서술: _____)

7. 직장경력

- ①없음 _____ ②있음 _____ (선택: 정규직, 비정규직)

8. 직장생활

- ①양호 _____ ②비양호 _____ ③알수없음 _____
 (구체적으로 서술: _____)

9. 직장 사직 이유: _____

10. 병역

- ①병역필(공익, 6개월 이상 복무) _____
 ②미필(면제, 6개월 미만 복무) _____ ③알수없음(해당사항없음) _____

D. 건강 상태, 병력 및 평소 일과생활**1. 범행 당시 신체 건강 상태**

①양호 _____ ②비양호 _____ ③알수없음 _____

(양호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질병이나 증상: _____)

2. 신체발달 상태

2-1)키 ① _____ cm ②알수없음 _____

2-2)몸무게 ① _____ kg ②알수없음 _____

3. 범행 당시 기분:

①양호 ②둔마(정서 메마름) ③우울 ④분노 ⑤초조·불안

⑥혐오 ⑦공포 ⑧기타 ⑨알수없음

(구체적으로 서술: _____)

4. 과거 신체적 질병으로 병원 입원한 경력:

①없음 _____ ②있음 _____ ③알수없음 _____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 _____)

5. 과거 혹은 현재 정신과적 질환 유무:

①없음 _____ ②있음 _____ ③알수없음 _____

6. 과거 혹은 현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경험 유무:

①없음 _____ ②있음 _____ ③알수없음 _____

7. 정신과적 진단명

진단이유_____

8. 평소 수면 상태:

①양호 _____ ②비양호 _____ ③알수없음 _____

(구체적으로 서술: _____)

9. 평소 하루 일과(복수 응답 가능)

①직장, 학교 등 규칙적인 생활

②정해진 일과없이 친구들과 쏘다님 ③정해진 일과없이 혼자서 쏘다님

④집에서 특정 활동없이 시간을 보냄(TV시청, 잠)

⑤컴퓨터 게임 및 도박 ⑥술, 마약 탐닉 ⑦기타 ⑧알수없음

(구체적으로)_____

E. 인지 및 지각, 사고 기능

(심리평가나 정신과적 검사가 동반된 경우 그 결과에 준하여 기록)

1. 지능지수: _____

1-1) 지능수준: 상(130이상) _____ 중 _____ 하(79이하) _____

2. 지적 장애

①없음 _____ ②있음 _____

3. 인지적/사고적 문제 (복수응답)

①문제 없음 _____ ②망상 _____

③환상 _____ ④환각(환청, 환촉, 환시 등) _____

⑤사고 와해 _____ ⑥사고 빈곤 _____

⑦강박적 사고 _____ ⑧기타 _____

4. 평소 주된 부정적 인식이나 망상, 환상, 환청, 강박의 내용 (if any)

: _____

: _____

: _____

5. 자살 욕구(사고): 자신을 해하려는 사고나 환상

①없음(알수없음) _____ ②있음 _____

6.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사고나 환상

①없음(알수없음) _____ ②있음 _____

7. 인지영역에서의 특이사항:

F. 감정 및 대인관계 기능

(심리평가나 정신과적 검사가 동반된 경우 그 결과에 준하여 기록)

1. 감정적 문제(복수응답):

- ①문제 없음 _____ ②불안감 _____ ③우울감 _____
 ④분노감 _____ ⑤좌절감 _____ ⑥감정조절능력 결핍 _____
 ⑦충동성 _____ ⑧감정이입 및 공감능력 저하 _____
 ⑨정서적 위축 _____ ⑩강렬한 정서 변화 _____
 ⑪감정표현능력 결핍 _____
 ⑫타인의 감정인식 능력(타인의 감정에 대한 반응능력) 결핍 _____
 ⑬외로움/고립감 _____ ⑭희망 없음/무기력감 _____
 ⑮죄책감결여 _____

2. 감정영역에서의 특이 사항:

3. 범행 당시 거주 형태

- ①혼자 거주 _____ ②동거 _____ ③알수없음 _____

3-1) 고정된 주거여부

- ①없음 _____ ②있음 _____ ③알수없음 _____

4. 평소 친구관계(연락 주고 받는 사람)

- ①친구 없음 _____ ②친구 있음 _____(몇 명 정도?)
 ③알수없음 _____

5. 평소 이성 관계

- ①이성친구 없음 _____ ②지속적이고 안정적 이성 관계(충실한 혼인생활 포함) ③일회성, 문란한 이성관계 ④알수없음 _____

6. 대인관계 기능 수준

- ①문제 없음 _____ ②친밀감 결핍 _____
- ③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감 _____
- ④타인에 대한 불신(의심) _____
- ⑤사회에 대한 적대감(반감) _____
- ⑥타인에 대한 적대감 _____
- ⑦반사회적, 공격적 스타일 _____
- ⑧기타 _____

7. 스트레스 대처 방식

- ①없음 ②건전한 여가활동(독서, 등산 등) ③게임 및 도박
- ④음주 및 약물 복용 ⑤기타 ⑥알수없음

8. 사회적 지지망 존재 여부

- ①없음 ②가족 또는 친지 ③친구 ④기관 및 기타 ⑤알수없음

9. 기타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특이 사항:

V. 피해자 정보

1. 피해자수: _____명

• 피해자 1

1. 이름: _____

2. 성별: ①남 _____ ②여 _____

3. 나이: _____ 세

4. 피의자와의 관계:

①직계가족(부모형제, 조부, 조모 포함) _____ ②친인척 _____

③평소 아는 관계(친구, 이웃 등) _____ ④업무상 아는 관계 _____

⑤애인 _____ ⑥모르는 사람 _____ ⑦기타(미상포함) _____

5. 피해자 상처부위

①몸통 ②목 ③얼굴 ④머리 ⑤팔다리 ⑥해당사항없음

5-1) 피해자 상처 유형

①1개 상해 ②한 곳에 여러개 상해 ③여러 곳에 여러개 상해

④해당사항없음

6. 피해자 상해 진료기간

①전치 _____ 주 ②신체피해는 있으나 알수없음

③해당사항없음(정신적 피해, 재물피해 only) ④사망

7. 정신과 치료 희망 여부

①비희망 _____ ②희망 _____ ③치료중 _____ ④알수없음 _____

• 피해자 2

1. 이름: _____

2. 성별: ①남 _____ ②여 _____

3. 나이: _____ 세

4. 피의자와의 관계:

- ①직계가족(부모형제, 조부, 조모 포함) _____ ②친인척 _____
 ③평소 아는 관계(친구, 이웃 등) _____ ④업무상 아는 관계 _____
 ⑤애인 _____ ⑥모르는 사람 _____ ⑦기타(미상포함) _____

5. 피해자 상처부위

- ①몸통 ②목 ③얼굴 ④머리 ⑤팔다리 ⑥해당사항없음

5-1) 피해자 상처 유형

- ①1개 상해 ②한 곳에 여러개 상해 ③여러 곳에 여러개 상해
 ④해당사항없음

6. 피해자 상해 진료기간

- ①전치 _____ 주 ②신체피해는 있으나 알수없음
 ③해당사항없음(정신적 피해, 재물피해 only) ④사망

7. 정신과 치료 희망 여부

- ①비희망 _____ ②희망 _____ ③치료중 _____ ④알수없음 _____

• 피해자 3

1. 이름: _____

2. 성별: ①남 _____ ②여 _____

3. 나이: _____ 세

4. 피의자와의 관계:

- ①직계가족(부모형제, 조부, 조모 포함) _____ ②친인척 _____
 ③평소 아는 관계(친구, 이웃 등) _____ ④업무상 아는 관계 _____
 ⑤애인 _____ ⑥모르는 사람 _____ ⑦기타(미상포함) _____

5. 피해자 상처부위

- ①몸통 ②목 ③얼굴 ④머리 ⑤팔다리 ⑥해당사항없음

5-1) 피해자 상처 유형

- ①1개 상해 ②한 곳에 여러개 상해 ③여러 곳에 여러개 상해
④해당사항없음

6. 피해자 상해 진료기간

- ①전치_____ 주 ②신체피해는 있으나 알수없음
③해당사항없음(정신적 피해, 재물피해 only) ④사망

7. 정신과 치료 희망 여부

- ①비희망 _____ ②희망 _____ ③치료중 _____ ④알수없음 _____

• 피해자 4

1. 이름: _____

2. 성별: ①남 _____ ②여 _____

3. 나이: _____ 세

4. 피의자와의 관계:

- ①직계가족(부모형제, 조부, 조모 포함) _____ ②친인척 _____
③평소 아는 관계(친구, 이웃 등) _____ ④업무상 아는 관계 _____
⑤애인 _____ ⑥모르는 사람 _____ ⑦기타(미상포함) _____

5. 피해자 상처부위

- ①몸통 ②목 ③얼굴 ④머리 ⑤팔다리 ⑥해당사항없음

5-1) 피해자 상처 유형

- ①1개 상해 ②한 곳에 여러개 상해 ③여러 곳에 여러개 상해
④해당사항없음

6. 피해자 상해 진료기간

- ①전치_____ 주 ②신체피해는 있으나 알수없음
③해당사항없음(정신적 피해, 재물피해 only) ④사망

7. 정신과 치료 희망 여부

- ①비희망 _____ ②희망 _____ ③치료중 _____ ④알수없음 _____

• 피해자 5

1. 이름: _____

2. 성별: ①남 _____ ②여 _____

3. 나이: _____ 세

4. 피의자와의 관계:

①직계가족(부모형제, 조부, 조모 포함) _____ ②친인척 _____

③평소 아는 관계(친구, 이웃 등) _____ ④업무상 아는 관계 _____

⑤애인 _____ ⑥모르는 사람 _____ ⑦기타(미상포함) _____

5. 피해자 상처부위

①몸통 ②목 ③얼굴 ④머리 ⑤팔다리 ⑥해당사항없음

5-1) 피해자 상처 유형

①1개 상해 ②한 곳에 여러개 상해 ③여러 곳에 여러개 상해

④해당사항없음

6. 피해자 상해 진료기간

①전치_____ 주 ②신체피해는 있으나 알수없음

③해당사항없음(정신적 피해, 재물피해 only) ④사망

7. 정신과 치료 희망 여부

①비희망 _____ ②희망 _____ ③치료중 _____ ④알수없음 _____

연구총서 13-AB-03

물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방안 연구

발 행 / 2014년 2월

발행인 / 박상옥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02)575-5282/5283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인 쇄 /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인쇄사업장

(02)6401-8891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정가 7,000원

ISBN 978-89-7366-094-0 93330